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Ⅱ

2017. 09.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분야별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기획 및 편집위원	김원모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 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여영준 (총무담당관)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 박규찬 (정치의회팀장) 심정희 (법제사법팀장) 유웅조 (외교안보팀장) 이상팔 (안전행정팀장) 정지은 (재정경제팀장)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 김봉주 (산업자원팀장) 유인규 (국토해양팀장) 유의정 (교육문화팀장)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최준영 (환경노동팀장 직무대리)
편집실무	김유정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 김안나 (정치의회팀 행정실무원) 방우리 (정치의회팀 입법조사원)

발 간 사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국정 운영의 잘못을 밝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명문화한 국회의 헌법적 권능이며, 국회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점차 전문화·비대화되면서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회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새롭게 도입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31건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대상 기관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로 1~2건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점 등 기존 보고서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건수를 확대하고, 보고서 발간 시기도 앞당기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저희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약 29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하였으며,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는 국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국회가 채택한 시정요구서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평가보고서의 발간 기획·원고작성·편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일부 정부 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춰 정부 부처,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지 및 목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	국회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처 폐지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행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만, 본문 내용에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또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당시의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에 따른 정부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각 주제 하단에 소관부처의 담당 팀 및 주제를 작성한 조사관의 연락처를 기술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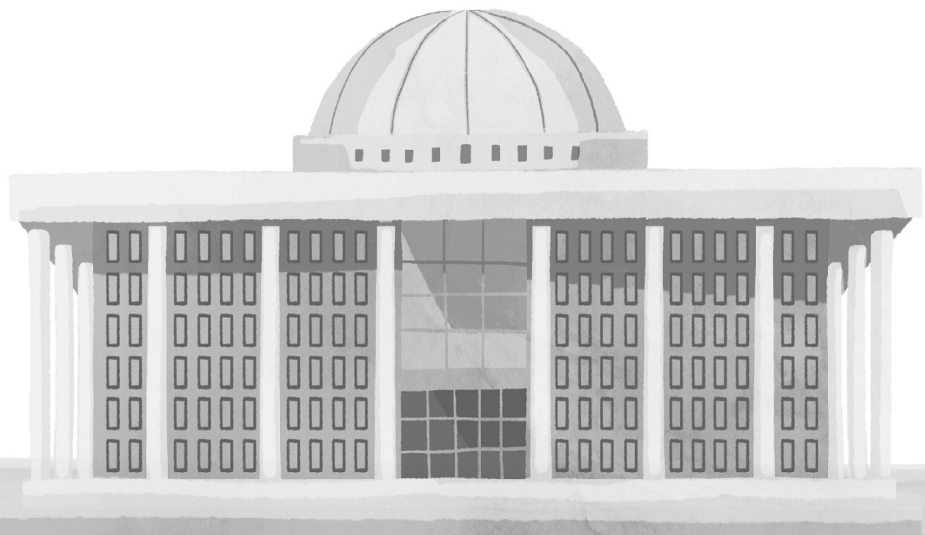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각 권별 상임위원회 구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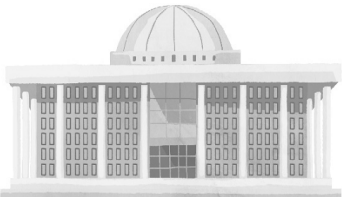
구분	상임위원회
평가보고서 I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평가보고서 II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평가보고서 III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목 차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목 차 Contents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	3
국유재산 관리강화 필요	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8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	11
연기금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	14
U턴 기업 지원 강화	16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19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 검토	21

▶▶ 국세청

조세소송에 대한 송무 능력 강화	24
공익법인의 탈세에 관한 대책 마련	27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개선	2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32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 방식 개선	35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38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방안 마련	41
체납액 위탁 징수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44
EITC의 내실화 방안 마련	47
모범납세자 제도의 보완 필요	49
상속세·증여세 탈세 방지	52

▶▶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56
----------------------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투명성 제고	59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비	62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재검토 필요	64

» 통계청

일부 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개선	67
지니계수 통계 개선	70
고용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 통계 개선	72
정부 행정자료와 민간 자료 등 활용	75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제도개선	78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실효성 제고	81

»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84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86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	89

»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 FTA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92
---------------------------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보강	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100
소비자분쟁의 신속처리	103
소비자단체소송의 적극적 참여 필요	105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보호	108
공정위 사건기록의 법원 제출 범위의 명확화	110
친족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113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강화	116
복합쇼핑몰·아울렛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118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 확보	120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124
산업은행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개선	126
가계부채 통계 일관성 확보	129
공매도 규제 실효성 강화	132
금융기관 핀테크 경쟁력 강화 방안	134
IC 단말기 교체사업 활성화	137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제도개선	139
서민 재무설계 서비스 연계 검토	141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43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146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방안	149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지급기준 개선방안	152
실손보험 독자상품 판매방안	156
산업은행 임원 임면과정 개선방안 마련	159
수출입은행 여신편중 해소방안 마련	162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검토	165

» 금융감독원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모집	168
------------------------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관련 개선	171
대부업체 최고금리 이상 대출 관련 개선	174
카드론 증가에 따른 부실 관련 조치	177
P2P 대출 관련 부당광고 개선	181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법령해석 개선	184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187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개선	190
해외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	193
군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 개선	19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의무화 실행 미흡	201
교육·고용 연계성 강화 관련 산업부의 관여 점검	204
창의적 R&D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점검	207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문제 해결	209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 수립	211
경인 관제 센터 운영 여부 재검토	213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송변전 시설 투자 확대	215
월성 1호기의 폐로 요구	217
폐기물 에너지 비중 축소	219
석탄·우드펠릿 혼소(전소)발전 제한	221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224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적극 운영	226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228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보완 및 지원 강화	235
사료용 쌀 공급 확대	238
해외농업개발사업 문제점 조사 및 개선	240

고령농 소득보장	243
저소득 빈곤층 양곡 지원 확대	245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제고 필요	2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250
한-칠레 FTA 재협상 시 과수분야 피해	253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사업 관련	255
승마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필요	258

» 해양수산부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 관련	262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관련	265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268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271
독도 입도지원센터	274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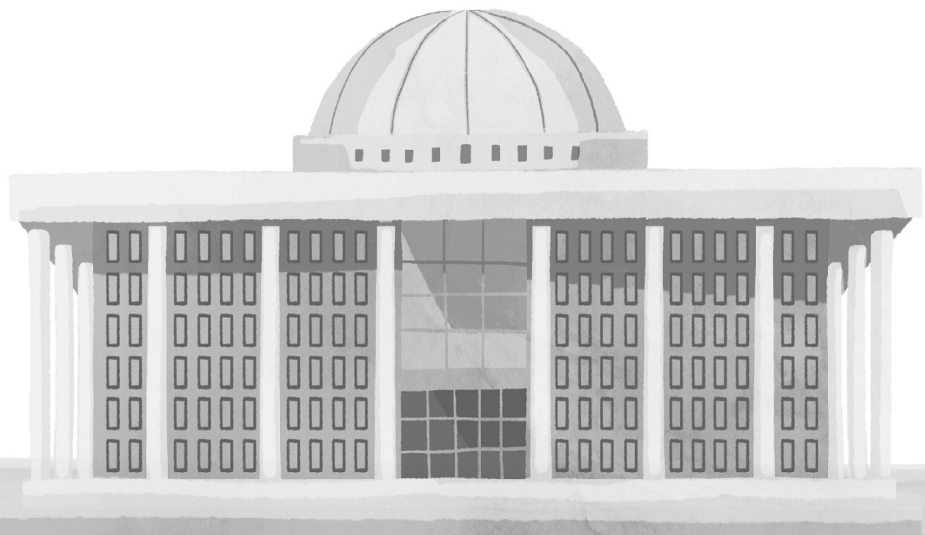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	27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방안 마련	282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284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288
저품질 외국철근 등 건설자재품질 관리 강화	291
「물관리기본법」 제정	293
4대강 준설골재 관리	295
법정계획간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297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방지	30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302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등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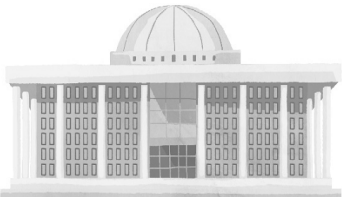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 미착공된 영구·국민임대주택 해소방안	308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불법전대 방지	311
▶▶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지원금 제도 개선	315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기업 투자 유치 제고	319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의 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	322
▶▶ 경기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25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재검토	328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기획재정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기획재정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현 정부 임기 내에 대통령 공약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토록 할 것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지역공약사업은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시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예타를 신청한 35개 지역공약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

1) 예타 선정비율(선정/신청, %) : (일반사업) 45.5, (지역공약사업) 97.0



- 예타를 완료한 23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예타 통과²⁾
-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 2016년에도 예타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 상향³⁾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가 제시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충실히 이행되었음
 -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예타 수행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25~30%로 상향조정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지역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예타의 수행 및 결과가 사업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수행 단계별로 지역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시공까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계별로 원활한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201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국회의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에 대해 2015년 상반기 중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30%로 상향조정하기로 보고한 바 있으나, 2016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동 사안을 이행하였음
 -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 폭이 적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0% 이

2) 예타 통과비율(통과/조사, %) : (일반사업) 58.9 (지역공약사업) 91.3

3) ('06) 15~25% → ('09) 15~30% → ('12) 20~30% → ('16) 25~30%



상⁴⁾, 30~40%⁵⁾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3. 개선방안

- 현행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치가 편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환경, 안전 등 다양한 가치가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지역 사업의 경우 사업 단위별 평가에서 거시 경제 효과, 접근성 등 포함하는 네트워크 차원의 평가로 확대 될 필요가 있음
- 가중치 상향조정 외에 예타 대상사업을 현행 5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72)」 등⁶⁾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이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출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유지시키거나 예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도영	02) 788-4574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	044) 215-5410

4) 박찬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3103)

5)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4489)

6)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320), 김태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472)



■ 국유재산 관리강화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활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강화에 대해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2017 국유재산 종합계획」(’16.8.24)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효율적 관리) 종합실태조사 추진, 무단점유 해소, 사용허가·대부제도 개선 등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을 제고
 - (재산권 보호) 민간이 기부채납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지침 제정 추진,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마련 등을 통해 국유재산 재산권 관리를 강화
 - (개발 활성화) 위탁기관 추가(LH), 개발 확대(위탁개발 13건, 기금개발 6건 진행 중)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유재산 관리 기조를 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전환⁷⁾

7) 기간 국유지는 총 14건 개발 완료 (위탁개발 13건, 기금개발 1건)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로 구분하여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⁸⁾
 -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종합실태조사를 향후 3년에 걸쳐 실시하여 국유재산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적법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형평성 제고 계획
- 그러나 민간이 기부채납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지침 제정과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 등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민간이 기부채납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재산 무상 귀속 시 총괄청 사전 협의 제도화 등 국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⁹⁾, 관련 지침은 마련 중에 있음
 - 군사시설을 이전할 경우 주로 사용되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관련 지침 마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기초를 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전환하였으나, 신탁개발, 민간개발의 경우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각 부처가 관리중인 행정재산의 경우 실태파악이 미흡하며, 상시적인 국유재산 실태 파악을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¹⁰⁾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됨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유재산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 무단점유비율 16.0%에서 12.7%로 축소 -」, 2016년 12월 20일자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4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 활성화 -」, 2016년 8월 24일자.

10)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인 2015년 8월부터 ‘e-나라재산’을 운영하고 있음



- 2015년에는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 노력으로 목표 물량의 94.2% 수준에 대해 점유자 확인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정상화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도시지역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였음
- 정부가 제시한 국유재산 관리 기조는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강조하기보다는 국유재산의 유지·보존과 조화를 이루도록 양자의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유지·보존 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활용 뿐 아니라 국유지 특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¹⁾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도영	02) 788-4574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044) 215-5150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11) 동 법률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사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처리함
 -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48개 기관이 법률 검토를 거쳐 이사회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
 - 사법부 확정 판결로 성과연봉제가 무효가 되는 기관은 미이행기관으로 간주하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성과연봉제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노사간 대화 등을 통한 자율적 추진을 지속 지원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 기획재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법성 재검토 여부**
 -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처리함(대안 이행)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하여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함(대안 이행)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대안 이행)
-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 노력 여부**
 -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기로 한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함(이행)
 -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기획재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하여 종전 보수체제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성과연봉제에 대한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선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5.19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¹²⁾ 위반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2017.6.16.)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2016년도 경영평가지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며, 평가 제외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하였음

3. 개선방안

- 방안 경영 근절이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연공급”¹³⁾은 생산성·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임금수

12)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 연공급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전통적인 임금체계임



준이 결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체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재환	02) 788-4575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	044) 215-5531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선진국 공공기관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는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기관별 기능 분석 및 운영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2015년: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 / 2016년: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



- 2017년에도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기획재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불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기획재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2015.5월에는 3대 분야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하는 바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에는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 통합,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음
 - 2016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별도 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적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여 한국전력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고 낙동강 생물자원관·호남권 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2017년에도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에서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한 불필요한 공공기관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정권교체 등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 마련



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바¹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기능조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봄

3. 개선방안

-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된 방향은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것이나,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더라도 경쟁이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고 가외성(redundancy)의 관점에서 기능 중복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그러므로 기능조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능점검을 통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성과 저하나 비효율 발생이 판명될 경우에 한해 조정이 필요함
- 공공기관은 기관별·분야별로 성격이 다르고, 외견상 중복되어 보이는 기관 간 업무들도 실질적으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다양하므로 기관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점검기준과 조정방법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기능 점검 및 조정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기관의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재환	02) 788-4575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	044) 215-5513

14) 기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는 2015.5.27.일에 이루어졌으며,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는 2016.6.14일에 이루어졌음



■ 연기금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연기금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투자플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을 여타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¹⁵⁾
 -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회사의 실적을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기획재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여부
 -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간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회사의 실적을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행 중)

15) 2016.11.~2017.2. 서울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서울대 채준 교수)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기획재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지 후보업체의 인수 혹은 분할에 따른 자회사의 실적을 평가요소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2016.5월 금융위원회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운용사 분사와 다른 자산운용사의 인수를 전격 허용함에 따라, 인수 후 자회사 편입, 분사 등으로 다양한 전문운용자회사 출현이 가능해졌음
 - 현행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서는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이전 자료를 합산처리하고 있으나, 자회사 처리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실정임
- 자회사를 연결한 재무제표를 이용한 운용사 선정기준이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결회계처리가 이용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¹⁶⁾, 자회사는 회계상 실질적 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열 자산운용사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한 운용사 선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운용사가 선정에 유리한 지표를 얻기 위하여 모회사, 자회사간 이익 조정을 실행하는 등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3. 개선방안

- 지난 2013년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 평가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가 가능해졌으나, 동시에 연기금투자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선정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16) 동일한 경제실체 가정하에 모든 자산, 부채를 합치는 연결재무제표가 이용자에게 경제적 실체의 성과에 대한 신뢰성과 적합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이를 고려하여 투자촉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전문인을 추천할 때, 추천된 전문인의 인적사항, 전공, 주요경력, 공적내용,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간략히 명시하고, 추천사유를 작성하도록 하여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급속한 환경변화로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이 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되도록 선정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지난 2001년 연기금투자촉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5번의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이 있었는데, 주간운용사 선정 시마다 매번 선정기준이 개정된 바 있음
 - 주간운용사 선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선정기준 변경이 급속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책대상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재환	02) 788-4575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	044) 215-5355

■ U턴 기업 지원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세감면을 확대하였음
 - 수도권 내 복귀기업(과밀억제권역 제외)도 조세감면 적용
 - 부분복귀 시 조세감면 대상 확대(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부분복귀 요건 완화(국내사업장 보유기업도 적용)
 - 관세 감면한도 확대(현행 : 완전복귀 2억원, 부분복귀 1억원 → 변경 :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음(2017.1월)
 - 해외현지 인력 재고용 시 특정 활동 비자(E7) 발급을 확대하였음(2016.12월)
 - 현행 내국인 고용인원의 10%이내, 최대 30인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의 30%이내, 최대 30인으로 변경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수행 여부(이행)
 - 조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세감면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에 국내 사업장 보유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한 것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으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한 것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조치시행 이후, 해당 조치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실제로 국내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은 법 시행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40개에 불과하여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¹⁷⁾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민창	02) 788-4571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	044) 215-2150

17) 이건혁,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 『동아일보』, 2017.7.11일자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저축 지원 관련 조세지출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원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함('17년 2월 완료)
 - 또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종합소득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함('16년 12월 완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여부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 비과세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함(일부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저축여력이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을 줄이고,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함으로써 시정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2개의 저축 지원 관련 과세특례에 대해 비과세·공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한도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불입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규모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금번 과세특례 정비를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의 축소 규모 정도와 과세형평성 개선 여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이 일정 기간 실시된 이후 별도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와 관련하여 일시납의 비과세 한도에 비해 월적립식의 한도가 비교적 높게 설정되었다는 점¹⁸⁾, 총 13개의 저축 지원과 관련된 조세지출 항목¹⁹⁾(일몰 도래로 종료되었으나 경과규정 등에 따라 운용 중에 있는 항목 제외) 중 2개의 과세특례에 대해서만 비과세·공제 한도가 축소되었다는 점 등은 향후 추가적인 제도 정비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2016년말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2개의 저축 지원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종료한 반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한다는 이유로 2016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3. 개선방안

□ 금융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저축 증대, 중산층·서민 및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융업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 목적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음

18) 당초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 및 월적립식 모두 1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월적립식의 경우 월납입액의 한도만 설정하고 총납입액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만약 의무 가입기간 10년간 한도액만큼 불입할 경우 총납입액 1억 8천만원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됨

1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11개 항목(조합 출자금·예탁금 저율과세(7,467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3,484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1,712억원) 등) 및 「소득세법」을 근거로 한 2개 항목(연금계좌 세액공제(1조859억원),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비과세(771억원). (조세지출액은 2017년 전망 기준)



-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그간 제도정비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일몰기한을 수차례 연장함으로써 조세지출이 장기화·영구화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 집중 문제뿐만 아니라,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유사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저해 및 금융시장 왜곡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함²⁰⁾
- 현재 운용 중인 다양한 금융상품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정책목표 달성 여부, 조세지출 규모 대비 효과성,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에 따른 과세형평성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재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 및 심층평가 등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 마련 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02) 788-4578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41

■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음

²⁰⁾ 홍범교,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 자료, 2014. 및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16. 등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미세먼지의 주범인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에 대하여 휘발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유에 대하여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4개 부처 합동(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²¹⁾
 -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경유에 대한 중장기적·단계적 세율 인상 방안 검토

-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연구용역 실시(이행 중)
-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행 준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현행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대가격 체계 및 상대가격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감축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의 최종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

21)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은 2017년 7월 4일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된 바 있음



한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연구용역의 내용은 수송용 에너지 소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는 연료별로 환경과 교통 측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비용 등의 외부효과를 추정·분석하는 것임
- 또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변동효과에 대한 분석은 크게 환경·산업·교통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환경부문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개선 수준을 분석하고, 산업부문은 에너지 수급 및 연료의 생산·소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며, 교통부문은 물류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한편, 공청회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내용이 공개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향후 단계적 인상 가능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최종적인 연구용역 결과 및 정부의 세제 개편안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빈발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사용분에 대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²²⁾에서 세금 인상 효과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영찬	02) 788-4573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 215-4333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참조

국세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조세소송에 대한 송무 능력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조세소송 대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조세소송으로 인한 불복 환급금이 상당한 수준이며, 조세소송 변호사 선임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송무 능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세청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16년 소송패소율 및 패소금액은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세청은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패소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송무 관련 업무협업 체계 강화, 외부 변호사 채용 확대, 교육·인력양성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송무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함으로써 송무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조세소송에 대한 송무 능력 강화

- '15년 송무조직 및 인력 확대, 3인 소송팀제 운용,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송무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내실화함으로써 송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세청은 '15년 점차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송무조직 개편, 송무인력 증원, 3인 팀제 도입, 팀별 전담세목 집중 수행,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송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고액·중요 소송에 대한 전담팀 구성, 외부 전문가 채용 지속 확대¹⁾ 등을 통해 소송 대응체계를 계속하여 내실화하고 있다고 보임
- 연도별로 다소간 등락은 있으나 소송패소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 특히 '16년의 경우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의 패소율 및 패소금액 비율²⁾이 근래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³⁾
- 또한 조세소송의 90% 이상을 국세청 내부에서 자체수행하고 있는데, 자체수행 소송의 패소율이 2014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음('14년 11.9% → '15년 9.6% → '16년 9.1%)

1) 송무분야 변호사 인력 : '14년 20명 → '17년 현재 44명

2) 패소금액 비율 = 패소 소송가액 / 전체 소송가액

3)

구분			종결건수		패소율(%)		패소금액 비율(%)	
2012년	전 체	50억 이상	1,524	52	11.7	30.8	46.0	60.6
2013년	전 체	50억 이상	1,545	57	13.5	45.6	36.2	42.2
2014년	전 체	50억 이상	1,524	55	13.4	27.3	23.6	26.9
2015년	전 체	50억 이상	2,036	66	11.6	39.4	26.4	30.3
2016년	전 체	50억 이상	1,946	111	11.5	27.9	16.4	17.5

자료: 국세청 제공



- 다만, 고액사건 혹은 법리·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송수행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자체수행 소송에 비해 패소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14년 39.5% → '15년 57.3% → '16년 44.2%)
 - 이는 관련 쟁점이 복잡하거나 선례가 없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위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이며, 특히 쟁점이 많은 고액사건의 경우 전부승소가 아닌 쟁점별로 일부 패소한 사례도 패소사건으로 집계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선임에 따른 국가 예산 소요가 상당한 점⁴⁾, 고액·중요 사건 소송 패소에 따른 국세청 과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하여 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국세청 송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송대응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내부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임. 이에 조세송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력 변호사를 확충하고, 내부 변호사들이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확보 및 재직 장기화를 위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근본적으로는 조세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품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 조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또한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한 조세소송 제기 및 패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령 해석 관련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02) 788-4578
관련 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044) 204-3077

4) '15년 41억2백만원, '16년 63억6천만원 집행, '17년도 예산 67억5천만원



공익법인의 탈세에 관한 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고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가산세 부과, 명단공개, 지정취소 요청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또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모금활동 실적 공개 등 신고의무 안내를 강화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익법인 탈세에 관한 대책 마련

-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위해 가산세 부과 지정취소 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2017년 전담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무 불이행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이행 중)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6년말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이행 완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명단 공개, 주무관청에의 지정취소 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2014	2015	2016
가산세 부과(억원)	7	4	7
명단 공개(건)	102	63	58
지정취소 요청(건) ⁵⁾	-	-	76

자료 : 국세청 제공

-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7년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공익법인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충원⁶⁾함으로써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정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엄정한 집행이 요구됨
- 국세청의 사후관리와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2016년말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보완하였음

5) 주무관청에 대한 공익법인 지정취소 요청은 2016년부터 시행함

6) 2016년 4명(본청 2명 포함) → 2017년 19명(본청 5명 포함)



- 기존 세무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세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상증세법 제50조), 소관 주무부처별로 달리 운영되어온 회계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동법 제50조의4),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7%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동법 제78조제5항)

3. 개선방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⁷⁾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각 소관 부처의 추천을 받아 공익성을 검증·인증하고, 사후관리하는 각 부처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등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임에 따라 공익법인의 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02) 788-4578
관련 부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044) 204-3327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044) 215-4312

■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7) 손원익,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및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6. 등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과 관련하여 부모부양 대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유류세 환급 카드사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화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음(’17년 4월 계약체결, 9월 실시 예정)
 - 또한 부모 부양 대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에 계속하여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개선

- 국세청은 ’17년 4월 일정 절차를 거쳐 기존 1개의 카드사업자를 통해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것을 2개의 카드사를 추가 선정하고, 또한 유류구매만 가능하였던 카드 이용범위도 모든 물품이 가능하도록 확대(’17년 9월 실시 예정함)으로써 경차 유류세 환급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음(이행 완료)
- 또한 ’17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10만원의 연간 환급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경차 사용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됨. 다만 부모 부양 대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임에 따라 현재 제도에 대한 평가 및 환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과거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시 일부 세액을 환급⁸⁾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 명

8)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의의 특정 단수의 신용카드 사업자의 지정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해당 카드는 유류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음

- 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환급 방법의 불편함으로 인해 환급받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환급대상(만명) ⁹⁾	-	-	-	65	73
환급인원(만명)	12	12	13	27	32
환급액(억원)	95	92	94	184	233

자료 : 국세청 제공

- 신용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및 유류 환급 신용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됨에 따라 환급 제도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연간 10만원의 환급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환급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이 추가되었음
 - 한도액까지 최대로 환급받는다 가정하였을 때 연간 800ℓ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휘발유 1ℓ당 1,500원 기준), 한도액 상향을 통해 영업용 차량 및 장거리 운행 차량 소유자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개선방안

- 2016년 기준 환급대상자의 44%만이 환급을 받고 있는 등 환급 제도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환급 대상자가 환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짐
- 국세청은 2015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환급 혜택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한 이후 환급인원이 상당 수준 증가한 바 있음. 환급대상자 개별안내 제도 확대를 포함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9) 국세청이 2015년부터 환급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전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현재 환급대상자 기준을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1세대 2경형차를 사용하는 부모부양 대가족의 경우 불가피하게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급대상자 기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환급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른 소요되는 추가 예산 규모 및 불필요한 혜택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 세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02) 788-4578
관련 부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044) 204-3392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 215-4332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현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세수 확보 및 체납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국회의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음
 - 국세행정포럼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 발제 (2015년 10월,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 발제)
- 그 간의 연구·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매출의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빈번한 주점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2017년 3월)
- 앞으로도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 도입 검토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필요성에 대하여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이행 준비)
-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빈번한 주점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이행 준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전(前)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효과 및 조세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금지금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제도를 악용한 자료상·폭탄업체 등에 따른 세금 포탈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소비세제로서 투명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세금계



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통단계별로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계획에서는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기초 하에 '17년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 중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게 되면,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기간차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의 현금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
 - 둘째, 신용카드사의 과면세 대상 및 간이과세자의 구분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신용카드사의 대리징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과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대리징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부수적 보완책 마련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¹⁰⁾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영찬	02) 788-4573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	044) 215-4321

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2015.12.), 4~5쪽 참조



■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 방식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중 체납정리분은 실질적으로 지하경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2, 3년전과 비교하여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 방식을 개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지하경제양성화’는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과 함께 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의 숨은 소득과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것도 해당됨
 - FIU정보 활용, 효율적 체납정리시스템 구축과 체납전담조직 확충 등 확대된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양성화 계획은 2013년 이후 FIU정보 활용, 행정력 강화를 통해 2012년 실적을 기준으로 세입을 추가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지하경제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2012년 실적 보다 더 징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세입확충 계획과 실적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서의 통상증가분을 제외하는 등 세정 노력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과 관련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 하겠으며,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개선 방안 마련 여부

- FIU정보 활용 및 효율적 체납정리시스템 구축과 체납전담조직 확충 등 확대된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납관리를 강화(이행 중)
- 지하경제양성화 계획은 2013년 이후 FIU정보 활용, 행정력 강화를 통해 2012년 실적을 기준으로 세입을 추가 확보(이행 중)
- 향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과 관련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경우 지속적 보완(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FIU정보 활용 및 효율적 체납정리시스템 구축과 체납전담조직 확충 등 확대된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한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소득적출률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한 과태료¹¹⁾를 현재 5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빈번한 업종 및 업소에 대하여는 엄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성실신고확인제도¹²⁾를 통하여 세무사와 국세청이 상호 협조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

11)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12)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치하고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에 대한 사전세무신고와 사후 검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세파라치 제도로 인한 과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포상금의 연간 한도와 건당 한도를 축소하였으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2016년 이후 2~3년 동안 신고건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수준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는 탈세를 방지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적을 제시하기보다 매년 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탈세를 제재하는 방안이 아니므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류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에 대한 통계 그리고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 등을 정리하여 『국세통계연보』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02) 788-4572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044) 204-3002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미미하고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1년 이상¹³⁾이 경과된 체납자로서,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명단공개 전에 대부분 납부하므로 명단공개 이후는 징수율이 낮음
 - 특히, 명단공개 전 6개월 간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이 기간 중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에도 기인함
-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 전담조직을 통해 명단공개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숨긴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 은닉재산 발견 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실적을 제고하겠음
 - 또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 하는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13) 2억원 이상 체납자(체납발생 후 1년 이상 경과) → 사전 안내(6개월) → 명단공개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여부**

- 명단공개 전 6개월 간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납부여력이 있는 채납자는 이 기간 중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에도 기인함(이행)
- 지방국세청 채납자재산추적 전담조직을 통해 명단공개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숨긴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음 (이행 중)
- 고액·상습채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 은닉재산 발견시 시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와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고액·상습채납 명단공개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채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통하여 명단공개자의 생활실태 확인 및 숨긴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액·상습채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등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으로 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임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실적에 의하면 명단 공개 기준이 강화될 때 당해연도의 인원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누적인원과 누적체납액을 살펴보면, 2004년 1,101명에서 2007년 3,046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체납액도 2004년 4조 6,880억원에서 2007년 11조 752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음



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명단공개				현금징수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납부세액	인원	납부세액
2004	1,101	46,880	1,101	46,880	170	397	170	397
2005	1,160	42,669	2,135	92,750	285	566	455	963
2006	704	23,431	2,636	110,752	136	430	591	1,393
2007	661	31,174	3,046	139,743	202	435	793	1,828
2008	800	35,211	-	-	479	427	1,272	2,255
2009	656	25,417	-	-	414	509	1,686	2,764
2010	2,797	56,413	-	-	456	303	2,142	3,067
2011	1,313	32,774	-	-	745	577	2,887	3,644
2012	7,213	110,777	-	-	628	723	3,515	4,367
2013	2,598	47,913	-	-	1,530	899	5,045	5,266
2014	2,398	41,854	-	-	1,324	1,178	6,369	6,444
2015	2,226	37,832	-	-	1,547	1,667	7,916	8,111
2016	16,655	133,018	-	-	-	1,288	-	-

참고: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2016년은 11월까지의 납부액)

자료: 국세청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 공개」, 보도자료, 2016.12.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개선방안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추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체납액 기준을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⁴⁾
-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누계현황이 집계되어 명단공개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징수가 증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음
 -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은 2008년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명단공개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의 증가현황을 살펴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14) 임언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정책과제」,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2.1.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02) 788-4572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	044) 204-3701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및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이나 지급률 상향 등 장려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효 구간¹⁵⁾의 지급률 상향 조정¹⁶⁾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액이 인상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17.3월)
- 아울러, 유동인구 밀집지역(지하철, 공항 등)을 중심으로 정보 전달력이 높은 은닉재산신고 홍보 동영상 활용하는 등 은닉재산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실시하겠음

15) 은닉재산 신고로 인하여 체납액이 현금징수되어 포상금이 빈번하게 지급되는 구간

16) 징수금액에 따른 지급률을 5, 10, 15%에서 5, 15, 20%로 일부 상향 건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마련 여부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효 구간의 지급률 상향 조정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액이 인상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이행 중)
- 유동인구 밀집지역(지하철 공항 등)을 중심으로 정보 전달력이 높은 은닉재산신고 홍보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 홍보 실시(계획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효 구간의 지급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액이 인상되도록 건의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함¹⁷⁾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령 제65조의4)

○ 탈세행위 제보, 은닉재산신고, 거래증빙을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포함), 타인명의 사업자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음¹⁸⁾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은 2010년 4,900만원에서 2015년 8억 5,100만원으로 17.4배 증가함

【표 5】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신고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		
			건수	지급액	건당 지급액
2010	97	191	10	49	5
2011	123	41	7	32	5

17) 포상금은 2003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2014년 20억원으로 증가함

18)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법을 제7008호, 2003.12.30., 일부개정],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구분	신고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		
			건수	지급액	건당 지급액
2012	183	590	7	82	12
2013	316	2,650	5	48	10
2014	259	2,813	15	226	15
2015	344	7,929	23	851	3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 은닉재산 신고 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다양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필요성, 과세당국에 질문조사권 부여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은 이유는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며, 신고건수를 증가시키고 포상금 지급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징수금액의 조절 및 다양한 포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자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¹⁹⁾
 - 이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2003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2014년 2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은닉재산 정보 수집력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²⁰⁾
 - 포상금 지급시기를 유연화함으로써 은닉재산 정보 수집력을 높이기 위해 부분지급 및 조기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²¹⁾

19)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국세청은 344건의 제보를 받아 체납금액 총 79억 2,900만원을 징수했음. 2011년 세금추징액 7억 4,5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5년만에 약 10배 규모로 증가하였고, 제보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2015년 344건으로 약 3배 증가함. 또한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원에서 2015년 3,700만원으로 증가함

20) 추순호, 『국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세무법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6, pp. 99~100

21) 임언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정책과제」,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4호, 국회입법조사처,



- 참고로 타인명의로 은닉된 재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검사(조사)권 또는 필요시 금융거래 추적권을 과세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음²²⁾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02) 788-4572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	044) 204-3701

■ 체납액 위탁 징수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체납액 위탁 징수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체납액 위탁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하고, 민간 역량 활용에 대해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10억원 미만 체납자의 위탁징수율²³⁾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징수가능성이 높은 10억원 미만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위탁하겠음

2017.2.1.

22) 이종걸의원 등 10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1910830, 기획재정위원회, 2014. 11.

23) 위탁 징수율 : (전체 1.08%) 10억원 미만 1.15%, 10억원 이상 0.01%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전담 직원 증원 및 지역본부 증설을 통해 징수활동을 확대하고,
- 징수전담 직원들의 징수노력도 및 성과관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민간 역량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징수위탁사업의 효율성,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체납액 취탁징수 실적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10억원 미만 체납자의 위탁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징수가능성의 높은 10억원 미만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위탁하겠음(이행 중)
- 민간 역량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징수위탁사업의 효율성,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 검토(계획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체납자의 위탁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징수가능성이 높은 10억원 미만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겠다는 등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부가 2013년 3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 함)에 위탁한 국세채권 징수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캠코는 2013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물납재산과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무재산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으며, 2013년 체납징수단 신설 이후 2014년 12월 체납징수실, 2015년 8월 체납징수업무의 전 지역본부 확대 등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조직개편을 했음
 - 체납된 세금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캠코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세금은 183억 6천만원으로, 전체 대상 금액의 0.66%에 불과



했으며, 10억원 이상 고액채납자에 대한 징수는 단 4건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²⁴⁾

- 세금 징수 사례를 채납액에 따라 분류해보면, 1억원 미만이 9천5백여명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고, 10억원이 넘는 고액채납자의 경우 4명에 불과했음
- 캠프코의 징수실적이 낮은 주된 사유 중 하나는 징수 위탁된 국세채권이 무재산 채납자에 부여된 악성채권이라는 점임
 - 민사상 악성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이자와 원금일부를 손해보더라도 향후 급여, 수익에서 손실을 일부 회수할 수 있지만, 국세채권은 국세부와 제척기간인 5년만 지나면, 징수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캠프코는 국세청과 달리 FIU 금융정보 등 은닉재산을 밝힐 별도의 정보채널이 없으며, 국세공무원이 부여받는 법령상 질문권, 수색권을 발동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채권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 업무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캠프코에 위탁사무를 주는 대신 해당 예산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02) 788-4572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044) 204-3002

24) 캠프코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20억원의 인건비가 투입됐지만, 채납징수 수수료 수익은 14억원 수준에 불과했음



EITC의 내실화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EITC의 내실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EITC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중소득·고소득 가구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급금이 저조하고 신청 자격에 20~30대 독신 가구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장려금 제도 심층 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 되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KDI는 6분위 이상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16년)한 바 있으나, 이는 KDI가 EITC 법령상 소득 합산 대상(부부) 이외의 가구원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였고 EITC 법령상 합산소득 이외의 퇴직·양도소득까지 합산하였기 때문이지, 법령상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기 때문은 아님
- 한편, EITC 법령 개정으로 '18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신청요건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개정된 신청요건에 대해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누락되는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음
 - 다만, 20대 청년층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장려금 제도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EITC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장려금 제도 심층 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대안 이행)
- EITC 법령 개정으로 '18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신청요건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개정된 신청요건에 대해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누락되는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음 (이행)
- 20대 청년층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장려금 제도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2018년부터 30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등 집행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17년 4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 14760호)에 의하여 2018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신청요건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됨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2018년부터는 30세 이상의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됨²⁵⁾

3. 개선방안

- 정부는 2017년 4월 18일 법률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20대 청년층의 취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수급요건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25) 1인 가구의 최근 5년간 소득 증가율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증가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1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근로장려금 수급권을 부여할 필요가 증가함



- 다만,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 2018년 30세 이상으로 단기간에 근로 장려금 수급요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²⁶⁾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02) 788-4572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044) 204-3802

■ 모범납세자 제도의 보완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모범납세자 제도의 보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모범납세자에게 공항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26) 20대 이상의 청년층으로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은 첫째,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고용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할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30대 단독가구, 중견·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 청년, 창업한 청년 등과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고, 청년층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형식상 세대분리를 하여 부당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11736)」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14.11.)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출입국 우대카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자²⁷⁾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발급해주고 있으며, 물품 및 용역업체 적격 심사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예규(훈령)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다하는 업체²⁸⁾에게 신인도 부문 가점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우대혜택 제공기관 규정의 취지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적절한 혜택 제공은 필요하나 우대혜택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공기관과 신중히 협의하여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모범납세자 제도 보완 여부

- 모범납세자에게 공항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해주고 있음 (이행 중)
- 우대혜택 제공기관 규정의 취지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적절한 혜택 제공은 필요하나 우대혜택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공기관과 신중히 협의하여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에게 공항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해주고 있으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모범납세자란 ①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②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③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④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⑤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을 말함²⁹⁾

27) 고용창출우수 기업(고용노동부), 종합인증우수 업체(관세청), 모범납세자(국세청) 등

28) 고용창출우수 기업(고용노동부), 장애인 지원기업(중소기업청), 모범납세자(국세청) 등

29)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097호(2015.4.27.); 국세청, 『2016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16.3.



- 모범납세자는 정부에서 타인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내·외부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 모범납세자가 받는 우대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기타 세정상 우대 혜택
 - 사회적 우대 혜택 :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필요하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16년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는 486명인데,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는 510명에게 발급되었고, 공항우대카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청장이 추천한 고액 납세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됨

【표】 연도별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현황

(단위: 명, 개)

연 도	개 인	법 인	총 계
2014	259	443	702
2015	234	464	698
2016	244	449	693
총 계	737	1,356	2,093

자료: 국세청

3. 개선방안

-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현재의 10여 가지에서 더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운영상의 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먼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만큼 유예기간에 탈세를 해서 적발될 경우 더 높은 가산세율을 매기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그 즉시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등 연 1회 이상의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02) 788-4572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	044) 204-3701

■ 상속세·증여세 탈세 방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 탈세 방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서울·중부청)	상속세·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한 점검 및 추징 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서울지방국세청

- 법과 원칙에 따라 변칙적인 상속·증여 탈루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후에는 관련 세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하고, FIU정보 및 탈세정보 등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액자산가 등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 또한, 관련 세액 고지 후 안정적으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을 유도하여 징수하고, 체납 시에는 신속하게 체납정리절차를 개시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중부지방국세청

- 상속·증여세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보험 명의변경 자료와 차명주식 통합시스템 등을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사후관리 점검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인프라 확충 및 탈루혐의 검증 강화를 통해 상속·증여세 탈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상속·증여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10억 이상 고액체납에 대하여는 체납 발생 초기부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공동 관리하여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징수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포상금지급,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축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 및 관리 강화 여부

- 법과 원칙에 따라 변칙적인 상속·증여 탈루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후에는 관련 세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 (이행 중)
- 상속·증여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10억 이상 고액체납에 대하여는 체납 발생 초기부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공동 관리하여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변칙적인 상속·증여 탈루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후 관련 세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FIU³⁰⁾ 정보 및 탈세 정보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축소하는 등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세파라치 제도로 인한 과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포상금의 연간 한도와 건당 한도를 축소하였으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2016년 이후 2~3년 동안 신고건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수준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상속·증여세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요건을 완화(체납금액 및 체납기간 기준 인하)하거나, 체납기록과 신용평점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¹⁾

30)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유출 방지 기구를 말함

31) 임언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2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9.28.



-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는 체납자의 신용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한 징수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³²⁾
 - 특히,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도 일정기간 체납기록이 유지되어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납세자들은 가능한 체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전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
- 다만, 체납자료의 제공 강화로 인해 소액 또는 일시적 체납자가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일정기간 체납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정도가 체납방지의 효과보다 과도할 수 있는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³³⁾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02) 788-4572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	044) 204-3701

32) 추순호, 『국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세무법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6, pp. 100~102

33)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조세연구』, 조세연구포럼, 2003. pp. 140~143

관세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관세청	FIU 정보 활용 및 FTA원산지 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방안 관련
 - FIU 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내부직원·금융기관 대상 FIU 정보분석기법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16.12월, '17.2월, '17.3월)
 - 세액탈루 관련 무역금융범죄 방지를 위해 중점 단속테마 및 우범정보를 FIU에 제공하여 전략분석을 추진함('17.3월)



- 수출입신고 내역 등 관세청 보유자료와 국세청·FIU 자료를 융합·분석하여 고위험 업체를 선별·조사함
- 향후 FIU, 국세청 등 타기관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선별적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우범 대표자 및 농수산물 분야 등 고위험업체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FTA원산지 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방안 관련
 - 원산지 위반 고위험 물품에 대한 체계적·객관적 적발을 위하여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S)을 고도화('16.10월)하고, FTA 부당특혜 단속기법의 공유·발전을 위해 원산지검증 경진대회를 개최함(2회, '16.6월, 12월)
 - 해외명품·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기획검증 및 농산물, 석유제품 등 사회관심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검증을 실시함
 - 향후 전국단위 위험관리 Matrix 조직 편성 및 원산지검증 위험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TA 부당특혜 편취 위험도가 높은 품목·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관세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FIU정보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방안 마련 여부**
 - FIU 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FIU 정보분석기법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이행)
 - 관세청 보유자료와 국세청·FIU 자료의 융합·분석을 통한 고위험업체 선별·조사(이행)
- **FTA원산지 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방안 마련 여부**
 -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 고도화 및 원산지검증 경진대회 개최(이행)
 - 해외명품·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기획검증 및 농산물, 석유제품 등 사회관심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검증 실시(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관세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관세청은 FIU정보에 대한 정보분석기법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FIU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업체를 선별·



조사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FIU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고, 고위험업체에 대한 선별·조사 역시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의 고도화, 해외명품·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기획검증 및 농산물, 석유제품 등 사회관심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검증을 실시하는 등 FTA원산지 조사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다만, 현재까지 관세청의 FIU 정보 활용 및 FTA원산지 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노력은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1 연도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와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FIU정보 등 활용	405	89	851	685	893	466	938	409
FTA원산지 조사	841	455	883	623	925	405	967	515

자료: 관세청

- 이에 따라 FIU정보에 대한 정보분석기법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다 내실화하여 담당자들의 FIU정보 활용역량을 제고하고, FIU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EU, 한-미, 한-중 FTA 발효 등으로 FTA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세액 탈루 위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FTA 부당특혜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중심으로 기획검증을 강화하고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검증방식 개발 및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재환	02) 788-4575
관련 부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	042) 481-7864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투명성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하여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 구성 풀과 위촉 위원 숫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은 국회의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후보군을 확대하는 한편, 특허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
 -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전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서 「관세법」(15.12.15.) 및 같은 법 시행령(16.2.5.)에 상향입법함
 - * 심사위원 선정범위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광 관련 전문가까지 확대함(심사위원 구성 풀 : 1,000명 → 1,300명)



- 특허심사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종전 5개 항목에서 12개 세부항목까지 확대 공개함 ('16.12월 특허심사시)
 - * 특허심사 종료 후 선정된 개별업체의 총점과 세부 평가점수도 공개
- 특허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안매뉴얼」을 제정·운영함
- 특허심사위원 명단의 공개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에 대한 언론의 집중취재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
 - 또한, 심사위원들이 명단공개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특허심사 평가결과의 투명성 확보(이행 완료)
 - * 심사위원 선정범위 및 구성 풀(pool) 확대
 - * 특허심사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종전) 5개 → (개선) 12개 세부항목까지 확대하는 한편, 심사 종료 후 선정된 개별업체의 총점 및 세부 평가점수 공개
-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및 주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명단공개 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범위와 구성 풀(pool)을 확대한 조치는 면세점 특허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면세점 운영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게 설정한다는 면세점 특허제도의 성질을 고려할 때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에 따른 독점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므로, 특허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특허심사평가항목 배점기준을 확대하고, 심사 종료 후 선정된 업체의 총점 및 세부 평가점수까지 공개한 것은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것임
- 다만,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는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명단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장되고 있으므로, 양자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¹⁾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영찬	02) 788-4573
관련 부처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042) 481-7637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336)(2017.3.22. 발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123)(2017.5.31. 발의)



■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하여 면세점 송객수수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시정·처리 요구를 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관세청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은 국회의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송객수수료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일괄적으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 송객수수료는 백화점, 호텔 등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법령제정 등을 통한 하향식 제한을 할 경우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 없이 면세점만을 대상으로 송객수수료 제한을 강제하는 경우 브랜드인지도, 상품구성력 등에서 불리한 신규·중소면세점의 매출액 감소가 우려되며, 타 업계로의 풍선효과가 예상됨
 - 송객수수료가 여행상품의 경쟁력을 부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경쟁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객수수료 지급실태 및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15년 9월 문체부 주관으로 판매점 - 여행사 간 송객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 바 있음(경제관계장관회의)



- 한편, 송객수수료율의 주기적인 공개를 통하여 면세점 업계의 자발적인 송객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
 - 면세점별 송객수수료 지급액 및 매출 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송객수수료 지급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면세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율(최고 - 최저 - 평균)을 주기적으로 공개함
 - '17.2.1. 면세점 송객수수료 현황 보도자료 배포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비

- 주무부처인 문체부 등에서 일괄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미이행)
 - * 면세점만을 대상으로 송객수수료 제한 강제시 신규·중소 면세점 등의 경영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또한 송객수수료는 여행 및 관광 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송객수수료율의 주기적인 공개를 통한 면세점업계의 자발적 인하 유도(대안이행 중)
 - * 면세점별 송객수수료 지급액 및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지급패턴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내면세점의 (최고-최저-평균) 요율 공개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송객수수료와 관련된 쟁점은 여행 및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나,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관광객의 상당수는 시내면세점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면세점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관계부처의 선제적·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완전한 자율경쟁의 송객수수료는 관광·여행산업의 지나친 과열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 관광·여행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면세점 간의 과도한 경쟁 또한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비의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음



- 다만, 지나친 송객수수료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차원의 입법에 대하여는 송객수수료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지 또는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면세점 시장의 성격, 별도 입법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영찬	02) 788-4573
관련 부처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042) 481-7637

■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재검토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하여 병행수입 통관인증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를 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관세청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시행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세청 직접수행 민간 자율 등 업무수행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은 국회의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조치 결과) 통관인증업체 선정시 해외거래처에 대한 정보(신고서)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을 2016년 10월 24일 실시하였으



- 며,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년 11월 ~ '17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평가 및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재검토 필요

- 통관인증업체 선정시 해외거래처에 대한 정보(신고서) 제출 폐지
- 통관인증업체 선정시 신청업체의 범칙이력 및 통관실적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평가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 추진 예정(계획 수립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의 평가·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준비는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업계(유통업체, 일반병행수입업체, 前·現 통관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편, 제도 자체에 대한 진단 및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
 - 현 시점에서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추진되는 제도개선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는 병행수입물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임



-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물품이 적법하게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행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독점수입업체의 과도한 독점이윤 추구 방지 및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제도의 취지로 함
-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로 작동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최근 해외직접구매의 증가 및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병행수입시장이 위축되는 등 수입물품 구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의 하나로 여전히 병행수입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건전화 유도 및 소비자의 물품 구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통관인증제도 유지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수입물품에 대한 독점수입업체의 물품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병행수입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및 보호를 위하여 통관인증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통관인증제도 운영에서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영찬	02) 788-4573
관련 부처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 481-7832

통계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일부 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에 대하여 일부 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의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계청	위탁사업 중 상당수가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정보원에 집중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계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2017.1.24일 수탁기관 선정기준, 위탁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 관리, 사업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통계청 유관기관 위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위탁관리를 엄격히 함
 - 위탁사업관리위원회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위탁사업들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문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 적격성을 엄격히 검토함



-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기별로 위탁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의계약의 사업적격성을 엄격히 선별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통계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위탁사업의 유관기관 집중 및 수의계약 방식의 타당성 재검토와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위탁사업관리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유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문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 적격성을 엄격히 검토함(이행 중)
 - ‘통계청 유관기관 위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위탁관리를 엄격히 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통계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통계청은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을 대상으로 위탁업무가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적격성을 점검·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기존 위탁관리위원회는 통계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계청의 위탁사업 소관 과장(11명), 통계진흥원 경영기획실장, 통계정보원 총무기획팀장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유관기관 담당자를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외부위원을 선임(2016.10.27.)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였음
- ‘통계청 유관기관 위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위탁기관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통계청 소관 업무의 유관기관(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정보원) 위탁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위탁관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효율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위탁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에 대한 모든 위탁사업들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점검·보완하고, 각 사업의 계약방식(수의 또는 경쟁) 적격성 검토, 위탁사업의 당초 일정 및 계획에 따른 진행 여부, 개선사항 등 위탁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통계청은 위탁관리위원회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 담당자를 제외하고 외부위원을 충원하였으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탁관리위원회는 통계청 소속 11명(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의 객관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중을 보다 더 확대함으로써 위탁관리위원회의 객관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탁관리위원회는 통계청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계진흥원과 통계정보원에 위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통계정보국 소관 위탁업무는 해당 국에서 자체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탁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위탁사업 대부분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통계정보국 소관 위탁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위탁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보다는 위탁관리위원회에서 통계정보국 소관 위탁업무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재환	02) 788-4575
관련 부처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	042) 481-2426



■ 지니계수 통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에 대하여 지니계수 통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계청	소득양극화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계동향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교체하고 수정된 신지니계수를 공식 지니계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계청은 지니계수 통계 개선에 대해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통계 및 소득분배자료 정확성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소득관련 행정자료를 입수·분석 등 보완작업을 진행 중임
 - (향후 추진계획) '17년말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신지니계수)를 공표할 계획
 -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선작업을 완료한 후,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등 공식절차를 거쳐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

2.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 통계청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제시한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¹⁾

- 여전히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지표가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라는 입장임
- 통계청이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며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2016년 소득 조사 결과를 2017년 12월 경에 공표할 예정임
 -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확정은 2017년 1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공식소득분배지표로 활용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한 소득분배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최상위 소득자가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통계청이 제시한 2017년 말까지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가 공표되면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자료 보안방안 마련이 '17년 말로 지연되는 등 다소 차질이 있기는 하나,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분배지표 정확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개선방안

- 현재 정부가 공식발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의 산출 근거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나, 이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공동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통계청 보도해명자료, 「'표본만 바꿨는데.. 새 지니계수 올해말 도입'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함」, 2017년 3월 7일자.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금융부문(1만 가구)과 복지부문(1만 가구) 등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므로 가계동향조사보다 표본가구수가 많고, 조사항목이 자산, 소득, 부채, 지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소득분위·직업·연령별로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자산규모, 원리금상환부담 등의 보다 세부적인 자료의 파악과 활용이 가능함
- 정부는 지니계수 등을 주요 소득분배지표로 발표하고 있으나, 지니계수 이외에 소득분배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보조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소득분배 지표 외에 Atkinson²⁾, Theil³⁾ 등의 소득불평등 지표와 중산층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Wolfson⁴⁾ 지수 등을 소득분배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도영	02) 788-4574
관련 부처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	042) 481-2051

■ 고용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 통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에 대하여 고용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 통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2) Atkinson은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과 평균소득과의 차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이란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균소득을 의미함

3) Theil은 각 구성원의 소득을 모집단의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함

4) Wolfson 지수는 중산층의 소멸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정도가 커질수록 중산층 규모도 줄어든다는 가설을 전제로 중위소득과 상·하위계층 간 소득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출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계청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고용 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청-재하청 및 사내 하도급 관련 통계 생산 방안을 검토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계청은 고용 통계 개선과 관련하여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시정 및 처리결과) 통계청은 2014년 11월부터 국제기준(ILO)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작성 중임
 - 청년층 등 연령계층별 고용보조지표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집계·가능하도록 자료 제공 중
 - 또한 복잡·다양한 고용시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구 등 다양한 개별 보조지표를 작성·제공 중임
 - (향후 추진계획) 하청 - 재하청 등 관련 통계생산을 고용노동부에 개선·개발 협조 요청
 - 상반기 통계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의뢰시 관련통계 개선 또는 개발 협조 요청 ('17. 상) 및 권고
 - 『통계수요평가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 등 점검('17. 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통계청은 고용·실업 통계 분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4년 10월 고용동향부터 고용보조지표를 기존 실업률 지표와 함께 공표하고 있는 등 통계와 체감 실업률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ILO는 제19차국제노동통계인총회('13.10월)를 통해 현재 실업자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동저활용 지표 등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용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하청 - 재하청 및 사내하도급 관련 통계 생산의 경우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은 2017년 6월 하청 - 재하청 및 사내하도급 관련 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업무 협조 관련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아직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여 동 통계 생산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용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령 계층을 세분화 하는 등 단계적으로 동 지표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실업자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임
 - 통계청은 2017년 체감청년실업률을 공식 통계로 발표하는 등 통계와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통계청의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제기준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⁵⁾
-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청 - 재하청 및 사내하도급 관련 통계 뿐 아니라 향후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통계청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하여 분산형 통계제도⁶⁾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도영	02) 788-4574
관련 부처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	042) 481-2051

5) 한국일보, 「청년 체감 실업률 34%..공식 집계 4배 웃돌아」, 2016년 6월 14일자

6) 분산형 통계제도는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하여 활용하는 통계제도로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으나 업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정부 행정자료와 민간 자료 등 활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에 대하여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계청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보유 행정자료와 민간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계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통계청에서는 2016년 말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 197종을 입수, 통계청 생산 61종 통계 중 50종 통계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한 DB 구축 및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및 통계작성 기반 강화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점검, 통계집단 연계 등을 추진
 - 신혼부부 부채 DB 구축 및 신혼부부의 소득부채 현황, 주택수, 출생자녀수, 지역별소득분위별 부채 등 분석(2016.12월)
 -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로 빅데이터 활용 신규 통계 생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동향 및 가계소비동향, 맞춤형 복지정책지원 공동연구를 위해 신한카드(2016.11월), 국민연금공단(2016.10월)과 MOU 체결
 - 향후, 행정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자료 입수 확대 및 행정자료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 부채 DB 구축(2017.7월) 및 모바일 자료를 이용한 유동인구관련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2017.8월)임



- 행정자료 수요조사 확대 실시 및 행정자료관리 주요동향 공유(매분기), 대내외 행정자료 공유를 위한 행정자료 통합관리협의회 운영(4월, 11월)
- 개인사업자 부채 정보와 인구가구 정보를 연계하여 가구 특성별 부채신용 정보 제공
- 통신사 위치정보와 인구정보 등을 연계한 인구가구 특성별 삶의 질 현황 등 분석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 등의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이행 중)

- 통계청 생산 61종 통계 중 50종 통계에서 활용 중
- 향후 행정자료 수요조사 확대 실시 및 행정자료 관리 주요동향 공유 등 예정

■ 민간 빅데이터 자료 활용을 위한 방안 조치 여부 (부분 이행 중)

-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신규통계 생산 추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통계청 생산 61종의 통계자료 중 50종의 통계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통계청에서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 통계활용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통계법」은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⁷⁾를 마련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통계생산 시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활용 중에 있음
- 행정자료 수요조사 확대 실시 및 대내외 행정자료 공유를 위한 행정자료 통합관리협의회 운영 등은 행정자료의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통계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통계청 이외의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에는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7)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기 수집한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고 중앙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의 빅데이터 활용은 일부 민간 및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으로 민간 등 빅데이터 자료에 대한 통계활용은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로 현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공표하고 있는 통계는 없는 실정임

3. 개선방안

- 민간 빅데이터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로 생산할 수 있는 통계 종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빅데이터’ 자료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조사 방법(면접 등)으로 생산한 조사통계가 시의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시간으로 생성될 수 있는 빅데이터 통계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 「통계법」에는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와 자료 제공 등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의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법적 정의, 활용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의 세부내용을 「통계법」 등 관련 법령에 보다 상세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민창	02) 788-4571
관련 부처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	-	042) 481-6903

조달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제도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달청	MAS 2단계 경쟁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고 가격제한 하한율이 없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적정수준의 가격하한율 설정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조달청	MAS의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품목을 MAS 계약대상으로 유지하고 있음.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질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할 것
기획재정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조달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조달물자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MAS 계약의 가격인하 제한선을 2017년 3월 조정하였음



- 업계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 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15% → 10%로 조정
- MAS 2단계 경쟁을 통해 일반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과 일괄구매 시 출혈경쟁 방지를 위해 일반제품의 가격제한 하한율을 설정하였음(2017년 4월)
 - (예시) 개인용 컴퓨터(중소기업간 경쟁제품)와 액정 모니터(일반제품) 일괄구매 시 액정 모니터에 가격제한 하한율(계약단가의 50%) 설정
- 향후, MAS 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품명은 차기공고에 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2017년 하반기)
 - MAS 계약 물품별 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품명별 MAS 적합성 판단기준(안) 및 계약품명 정비방안 검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이행)
 - MAS 계약의 가격인하 제한선 상향조정(2017.3월)
 - MAS 2단계 경쟁을 통한 구매 시 일반제품의 가격제한 하한율 설정(2017. 4월)
- 구매실적이 저조한 제품은 MAS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보완 여부 (계획 수립 중)
 - MAS 계약 물품별 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품목별 MAS 적합성 판단기준(안) 및 계약 품명 정비방안 검토 예정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여부 (미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MAS 계약의 가격인하 제한선과 관련하여 업계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 대비 가격인하 비율을 15%에서 10%로 조정하는 것은 조달물자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MAS 2단계 경쟁을 통한 물품 구매 시 일반제품의 가격제한 하한율을 설정한 것은 출혈경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7.8.1.부터 MAS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을 폐지하였는데¹⁾, 이는 물품구매기관이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품질 경쟁을 강화하고 무리한 저가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조달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구매실적이 저조한 제품에 대해 MAS 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품명은 차기공고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다만, MAS 적합성 판단기준 마련 시 납품업체와 조달청간 MAS 계약 이후 실제 구매기관의 구매실적 발생까지는 홍보 등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성 검토 시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다수공급자제도(MAS)는 중요 공공조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²⁾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민창	02) 788-4571
관련 부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물기획과	-	044) 201-6810

1)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물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2017.7.17일자 보도자료

2) 이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3126, 이현재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실효성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에 대하여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달청	다수의 부정당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상당수가 인용되어 공공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가처분신청으로 입찰을 통해 획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및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조달청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업 합병, 면허 양도 등의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조달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검토
 -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강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2016.10월 완료)
 -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및 법적 타당성 검토 중
-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할 예정(법무부 협의)
 - 수 개의 제재가 있는 경우 제재기간 중복으로 제재의 효력이 미치지 않던 부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기재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집행정지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신인도 감점 부여(법적 타당성 검토 후 내부 신인도 평가규정 개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정당업자 제재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부분 이행 중)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 강화(미이행)
 - 제재중복으로 인해 제재의 효력이 미치지 않던 부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미이행)
 - 집행정지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부여(이행 중)
-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업 합병, 면허 양도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효력 승계 방안 조치 수행 여부 (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2016.10월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제고방안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어 관련 조치가 일부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어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업 합병, 면허 양도 등의 경우에 대해 제재효력을 승계하도록 하거나, 수 개의 재재가 있는 경우 제재기간 중복으로 제재의 효력이 미치지 않던 부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 또한 조달청에서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의 협의를 거쳐야 함
- 한편, 집행정지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내부 신인도 평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2017년 7월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달청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민창	02) 788-4571
관련 부처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4056-7511

한국은행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하여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오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은행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주로 기인 한 것으로 한국은행 뿐 만 아니라 국제기구, 주요 중앙은행들도 경제전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기관의 경우 잠재적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충격 및 구조변화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유관부서 및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글로벌 경제 모니터링 및 상시전망시스템(초단



기 전망모형 및 GDP 결합예측 모형 등) 활용 강화

- 세계 경제성장률·교역성장률, 국제유가 등 경제전망 전제치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수시)
- New-BOK DSGE¹⁾, 재정·유가 부가 DSGE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전망 예측력의 지속적 개선 등

○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오차가 크게 축소되었음

(%p)	2014년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 ¹⁾	+0.5	+0.6	+0.2

주: 1) 실적-당해년 1월 전망치

○ 앞으로도 최근의 금융환경 및 경제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이행 중)**

- New-BOK DSGE, 재정·유가 부가 DSGE 모형 개발 등 전망 예측력 개선
- 글로벌 경제 모니터링 및 상시전망시스템 활용 강화
-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수시 개최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은행에서는 연계식 모형 위주로 구축된 기존 단기전망시스템에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모형과 혼합주기(MIDAS) 모형을 추가하여 한국은행 단기전망시스템을 확장하였음²⁾

1) DSGE란 동태확률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말함

2) 세부 내용은 한국은행, “기계학습과 혼합주기 모형을 활용한 단기전망시스템”, 「조사통계월보」2017.5월호 참조



- 한국은행의 단기전망시스템 확장은 경제전망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일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단기전망시스템은 전망모형군(群) 중 전망실적이 좋은 모형들의 전망치를 가중평균하여 당분기 혹은 1분기 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므로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신의 전망기법을 반영하여 전망모형군(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은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함
 - 단기전망시스템의 확장으로 복수 모형에 기반한 경제성장률 전망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 전망기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적 전망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에도 학계의 최신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전망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민창	02) 788-4571
관련 부처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	02) 759-4138

■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도록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은행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은행은 2017년 4월 「201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7년 3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53억달러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확충되고 외채구조가 개선되면서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³⁾이 크게 높아지는 등 단기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음
 - 한편 한국은행은 IMF(2013)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였음
 - 금융위기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유동화 가능 규모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부 국채 비중 확대 등 보유 외환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 아울러 제2선 외환보유액 확보 차원에서 중층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한국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확충되고 단기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제고되어 현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외환보유액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유외환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제2선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이행 중에 있음

3) 2008년말 1.4(배) → 2017.3월말 3.3(배)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한국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6월말 국내 외환보유액은 3,805.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한국은행의 평가와 같이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
 -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중국(3조 536억달러), 일본(1조 2,519억달러), 스위스(7,64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5,002억달러), 대만(4,403억달러) 등에 이어 한국은 2017년 5월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임
 - 다만, 국내 외환보유액이 2011년 3,0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외환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국가 간 통화스왑 확대 등 금융안전망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 2011년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외환보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통일된 이론은 없으나,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충분할수록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분석되고는 있으나, 경제학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보면 외환보유액의 보유에 따른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와 외환보유액 규모 증가에 맞춰 운용자산 및 통화구성의 다양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 부처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	02) 759-5737



■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하여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진작 및 경제성장 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은행은 2017년 4월 「201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 대처하여 최근 수년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왔음
 - 이러한 정책기조는 경제주체들의 금융비용 경감, 심리위축 완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으나, 한편으로는 가계의 차입수요 증대를 통해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저금리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에 유의해 왔음
 -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 「금융안정회의」⁴⁾를 통해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오고 있음

4) 2016년까지는 연 2회 개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연 4회 개최로 확대함



-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 참가하여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음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면서 정부, 감독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한국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 대처하여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금융비용 경감, 심리위축 완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음
 - 다만, 저금리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 「금융안정회의」를 2017년부터 확대 개최(연 2회 → 연 4회)하고, 「가계부채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이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금융안정회의」 확대 개최, 「가계부채 점검반」 구성·운영 등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국은행이 관련 정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재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점검 및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향후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대응도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인 M1 및 M2의 증가율을 보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⁵⁾
 -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본원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를 보였으나, 동 기간 M1의 연평균 증가율은 8.6%, M2의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나타남
 - 이러한 원인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의 하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음
 -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승수는 2007년 24.7배에서 2016년 17.0배로, 같은 기간 통화유통속도는 0.87배에서 0.7배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향후 경제가 회복되어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통화유통속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 부처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	02) 759-4461

5) 조대형, 「주요 통화지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96호, 2017.7.20.

국제원산지정보원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중소기업 FTA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중소기업 FTA활용률 제고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낮으므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방안에 대해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중소기업의 FTA연구결과물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보고서 외 핸드북, 활용지도 및 소책자 등 인쇄배포
 - 한-중, 한-베트남 등 신규 FTA 수출유망품목 중심의 FTA활용 가이드 핸드북 제작 및 배포('16. 12월)



- 2016년 FTA 활용지도를 제작하여 지역별, 산업별, 협정별 FTA 활용률 실태 정보를 작성 및 웹사이트에 정보 제공('17. 2월)
- 중소기업이 원산지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작 완료('16. 10월)
- 수출업체의 품목분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금속 가공생산품 'FTA 품목분류 및 가이드' 웹페이지 구축

2.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 원산지정보원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로 제시한 사안은 확인 결과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원산지정보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FTA PASS¹⁾,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등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제시한 사안을 이행하고 있음
- 원산지정보원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 확인 결과, 원산지정보원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산업별 FTA 활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공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참고로, 관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협정별, 품목별로 제공되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별(중분류 56개)로 공개하고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평가

- 원산지정보원이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제시한 사안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보편적인 FTA 관련 정보제공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 FTA 상대국 및 산업별 현황 및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로 중소기업을 특화하여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1) 원산지정보시스템(<https://www.ftapass.or.kr/>)



- 원산지정보원이 향후 과제로 제시한 산업별 FTA 활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공표하기로 한것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다 세분화된 산업별 자료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함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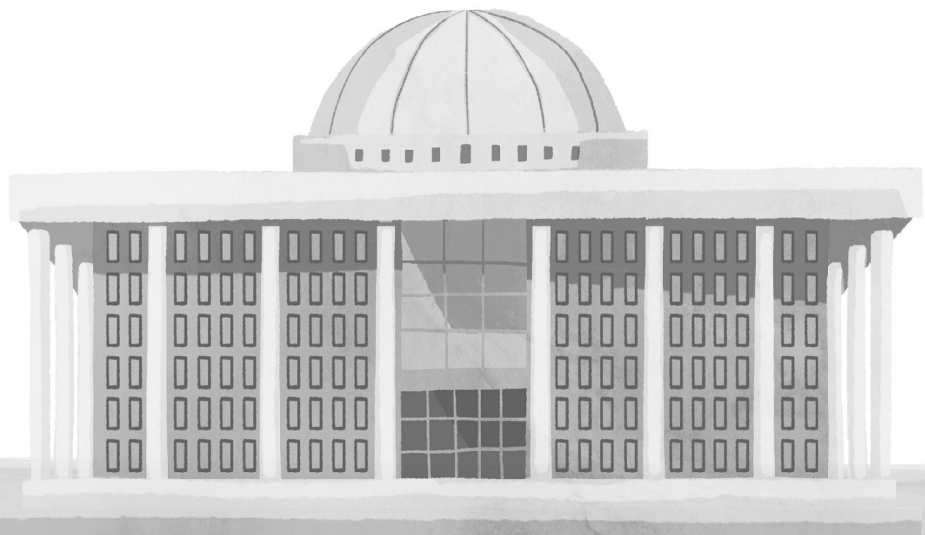
- FTA 활용 지원 기관인 FTA 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정보원과 더불어 통상자원산업부 산하 FTA 종합지원센터에서도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FTA 종합지원센터와 연계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FTA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일방향적 경로를 지양하고, 협회 등 민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FTA 활용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애로사항 등을 FTA 활용률 제고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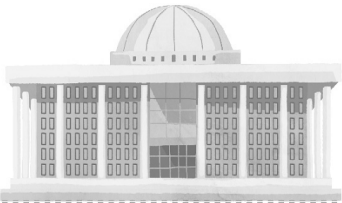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도영	02) 788-4574
관련 부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사업본부	경영지원팀	-	031) 600-0732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정무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공정거래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소비자안전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보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소비자 안전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보강」과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의 인원, 전문성, 설비 등을 보강하여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소비자안전센터를 현행 2국 9팀에서 3국 11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인원을 77명에서 83명으로 보강하였음
 - 소비자안전국을 위해정보국·안전감시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위해정보 분석 및 안전 조사 수행 기능 강화



-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겠음
 -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 전문가 교육과 정보 공유로 협력방안 도모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 활성화
- 국민안전 불안 해소 및 위해·불량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 시험설비 등의 보강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임
 - 신규설비 도입 및 노후설비 교체·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2017년, 13억 원)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소비자안전센터의 인원 보강(이행 중)
 - 77명에서 83명으로 보강
- 소비자안전센터의 전문성 보강(이행 준비 중)
 -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관부처 전문가 교육 등 협력
- 소비자안전센터의 설비 보강(이행 준비 중)
 - 신규설비 도입 및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 편성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소비자안전센터의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77명에서 83명으로 6명이 증원되고, 기존의 2국 9팀을 3국 11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소비자안전센터가 담당하는 소비자 문제는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관련한 것으로 실제로는 1인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한 현실임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보강 계획이 필요함
- 소비자안전센터의 전문성 보강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참여도, 교육제공자의 전문성 등 향후 구체화된 계획을 대상으로 실효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안전센터 설비 보강에 대해서는 최근 식품, 유아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방면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필요한 면이 있음
 - 특히 이러한 전문적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 장비의 취득, 관리, 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신규 도입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3. 개선방안

- 소비자안전센터의 전문성 보강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소비자 불만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충분한 인력의 확충과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소비자안전센터 내부의 전문성 보강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 불만 사항이 사후적으로 교정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 정부 정책 전반에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정배	02) 788-4581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 200-4406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에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분야별 비상임위원이 제한적임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확보하고, 전문분야별 전문위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해 사건처리일수를 단축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제한된 비상임위원 수(48명)로 인한 한계 보완과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위원을 확대하고 및 분야별 적정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42개 분야 114명(2015년)→44개 분야 163명(2016년)→45개 분야 172명(2017년 추진)
 - 2017년 의료분야 7명, 광학분야 2명 신규 위촉

※ 조정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 규정

근거법령	내용
「소비자기본법」	<p>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p> <p>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의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과



근거법령	내용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하여 전문 조정부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임위원(2명 → 5명) 및 비상임위원(48명 → 145명) 증원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기본법」 개정법률안(2016.11.14., 정부제출)이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전문위원 확대 및 분야별 적정 인원 확보 노력(이행 준비 중)**
 - 44개 분야 163명에서(2016년) 45개 분야 172명(2017년)으로 추진 중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하여 전문 조정부 결성 노력 (이행 준비 중)**
 - 상임위원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을 현행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 지원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전문위원 확대 및 분야별 적정 인원 확보에 관하여는 적절한 방안으로 보이나, 전문



위원의 적절한 위촉 및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전문위원의 구성은 45개 분야 171명으로 일반 13개 분야 46명, 의료 32개 분야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 분야는 각 진료과 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 분야는 운송, 보험, 건축 등 광범위한 대상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세분화나 전문위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증원 및 전문 조정부 결성을 위한 조정위원회 확대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예산 수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50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48명)에서 150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145명)으로 300%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조정위원의 적정 규모에 관해서는 일부 증원을 통해 운영한 후에 점차적으로 적정 규모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 소비자원이 담당하는 분쟁조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조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다만, 조정위원의 확대와 전문위원의 전문화, 그리고 현행 소비자원 연구 및 행정 인력의 업무 분담 및 역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근본적인 인적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정배	02) 788-4581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 200-4406



■ 소비자분쟁의 신속처리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의 신속처리」에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일수가 117일로,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간의 약 4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의 빠른 처리를 위해 내부 역량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간이사건보고서 및 간이조정결정서를 도입하여 간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혁신과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고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조정관 역량을 강화하겠음
 - (전문가 자문) 분야별 전문위원 확대를 통해 자문 활성화
 - (직무교육) 관련 법률 및 제도 교육, 조정기법 등 관련 업무 전문화 교육 추진
 - 조정 전 합의권고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비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조정제도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이행 준비 중)
 - 간이사건보고서와 간이조정결정서 도입 등 조정 활성화
 - 사전조정제도 시범 실시
- 조정관 역량 강화 (이행 준비 중)
 - 전문가 자문 및 직무교육 강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통한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는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간이사건보고서와 간이조정결정서 도입 등 간이조정의 활성화는 누적된 조정 접수 건수의 신속한 처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다만, 간이사건과 통상사건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간이사건의 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조정관 역량 강화를 통한 조정강화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정관의 역량은 크게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라는 측면과,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전문성 강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 자문은 전자의 전문성을, 직무교육은 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소비자원이 담당하는 분쟁조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 일수는 법정일수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적체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소비자원이 제시한 간이조정의 활성화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건이 간이조정 대상이 되기보다는 통상사건으로 처리되리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이조정 사건과 통상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조정관의 역량 강화는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의 질적 향상과 직원의 직무교육 강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조정의 분쟁해결적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조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 양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정배	02) 788-4581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 200-4406

■ 소비자단체소송의 적극적 참여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의 적극적 참여 필요」에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소비자단체소송 주체에 포함되었으므로, 소비자원은 다중 소비자피해에 대해 단체소송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소비자단체소송 협의체를 운영하고(2016.10.), 내부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상담 및 피해구제 다발 접수 건을 분석하여 단체소송에 적정한 건을 발굴하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소비자기본법」 중 관련 조문

「소비자기본법」 (개정전)	「소비자기본법」 (2016.3.29.개정)
<p>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p>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p> <p>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p> <p>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p> <p>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p> <p>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p> <p>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p> <p>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p> <p>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p> <p>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p> <p>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p>	<p>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p>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p> <p>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p> <p>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p> <p>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p> <p>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p> <p>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p> <p>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p> <p>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p> <p>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p> <p>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p> <p>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p>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소비자단체소송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이행 준비 중)
 - 소비자단체소송 협의체 운영
 - 소비자단체소송을 위한 내부지침 제정
- 소비자단체소송 적정 건 발굴
 - 상담 및 피해구제 다발 접수 건 중 적절한 건 발굴하여 진행 추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은 적절함
 -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후에도 실제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많지 않아 소비자단체 소송의 입법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였음
 - 2016년 법 개정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상 소비자단체에 비하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단체소송의 수행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담 및 피해구제 다발 분야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적합한 건을 발굴하여 소비자단체 소송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의 제도적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단체소송의 주체로 추가된 것은 기존 소비자단체소송의 제도적 도입 에도 불구하고 그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충분한 실제적 소익이 없음에도 제도 활용을 위한 소위 '소송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양태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사건을 적절하게 선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정배	02) 788-4581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 200-4406
	한국소비자원				

■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보호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7년 1월, 「모바일 게임서비스 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를 수행하였음
 - 동 조사는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시장현황 및 이용실태, 소비자상담 및 피해사례, 모바일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관련법규 등을 분석한 것임
 - 주요 모바일 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2월, 한국소비자원은 동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모바일 게임 관련 현황 조사(이행 완료)**
 -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시장현황 및 이용실태, 소비자상담 및 피해사례, 모바일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관련법규 등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 건의(이행 준비 중)**
 - 동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 건의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모바일 게임 관련한 시장현황, 이용실태, 소비자상담 및 피해사례,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법규 등 분석을 시행한 것은 시의적절함
 -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바일 게임 관련 표준약관의 제정을 건의하였는데 이 역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17년 7월말 현재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2014.9.19.개정) 외에 모바일 게임 관련 표준약관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실제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모바일 게임 업계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고, 모바일은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한 것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건의 이후에 아직 실제로 표준약관이 고시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장배	02) 788-4581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 200-4406
	한국소비자원				

■ 공정위 사건기록의 법원 제출 범위의 명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기록의 법원 제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록을 소송사건 등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현재에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조사기록 등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공정거래법 제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가 제기되니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공정위 조사기록의 공개 여부(이행 중)**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는 심문조서,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이미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평가

- 공정위의 입장은, 현행 법제상으로도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위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적 자료가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정위의 시정처리결과는 관련 법 규정(공정거래법 제56조의2)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담고 있지 않음



- 그런데 담합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원활한 법 위반행위 입증을 위해 피고가 리니언시 제도¹⁾에 따라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법제상으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리니언시 자료의 기준·범위가 모호하고, 리니언시 신청자의 신원 및 제출 자료의 비밀보장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²⁾
 - 공정거래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는,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부당한 공동행위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³⁾(이하 “감면고시”) 제19조상 리니언시 자료의 비밀보장 의무와 상충될 소지가 있으나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리니언시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손해 배상청구소송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감면고시 제19조제1항은 공정위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리니언시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위와 같은 쟁점사항에 대해 개선여부의 필요성 등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시정·처리결과 보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담합 자진신고자의 리니언시 자료를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담합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및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측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담합 피해자 입장에서는 담합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리니언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과징금 부과 등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

1)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담합의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담합 가담자가 관련된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과징금 등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1항)

2) 황태희, 「리니언시와 손해배상: 리니언시 자료의 비밀유지를 중심으로」, 『경쟁과법』 제2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4.4, p.14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1호, 2016.9.30. 개정



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경쟁당국인 공정위 입장에서는 리니언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담합의 형성 및 안정적인 유지를 억제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담합 존속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 리니언시 관련 자료의 전면적인 법원 제출이 허용될 경우, 담합 가담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으로 인해 과징금을 감면받더라도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감소할 것임
- 공정위는 위와 같은 정책적 균형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감면고시 제19조에 따른 리니언시 관련 자료의 제공 여부 및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787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	044) 200-4533

■ 친족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에 대하여 계열분리 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한진-유수홀딩스와 같이 계열회사가 아닌 계열분리 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친족분리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계열분리 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 마련 여부(대안이행 중)**

-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 된 친족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으므로,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거래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 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행위는 현행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음
- 친족회사와 대기업집단 간의 거래내역 등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과태료 부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임
-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공정위가 공시의무 부과뿐 아니라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위반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23조의2의 적용범위 확대 또는 계열분리 승인 시 내부거래 비중 요건의 부활 등 향후 공정위의 제도 개선 추진방향을 언급하지 않고, '종합적인 규제방안'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제대상에 친족회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 및 지분을 요건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와 혈연관계에 있는 혈족 또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인척 중 중 어느 범위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친족회사’로 포섭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
- 또한 공정위의 계열분리 승인 시 심사대상이 되는 ‘독립경영 인정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⁵⁾의 하나로 친족분리 요청회사의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비중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과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계열분리 요청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계열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요건이 삭제되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787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	044) 200-4330

4) 「민법」 제777조는 혈족 8촌 이내, 인척 4촌 이내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는 동법의 규제취지가 「민법」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 이내(인척의 범위는 「민법」과 동일)로 제한하고 있음

5) 공정위는 계열분리를 요청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기업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승인해주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요청회사의 과거 내부거래 비중에 상관없이 계열분리 승인이 가능함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에 대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로펌 관계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시 면담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녹화를 하는 방안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공정위 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⁶⁾(이하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2017.4.14.)하여 위원회 심의 전에 피심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하는 등 위원회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이행 중)

주심위원의 주재 하에 피심인과 공정위 심사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주요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의견청취절차’를 최근 신설하는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2017.4.14. 개정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의견청취절차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기존에 활용이 미미하던 심의준비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라는 이점과 함께, 피심인으로 하여금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선하고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의견청취절차의 도입은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일 뿐이며, 공정위의 조사과정 전반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가령,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현재 재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술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한다거나, 공정위 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 규칙”)⁷⁾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인 참여 허용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법 위반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공정위의 의결은 피심인과 참고인의 의견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됨⁸⁾
 - 그러나 현행 규정상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에서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진술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⁹⁾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심사관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진술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보장 범위 및 그 예외사유는 법률로 보장되어야 할 피심인 방어권 보장의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고시인 조사절차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세무공무원의 조사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경우도 공정거래법에서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변호인의 참여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81조의5)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호, 2016.2.4. 제정

8) 홍대식,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2.10, p.138

9) 공정위는 현장조사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심인이나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을 들을 권한이 있는데(공정거래법 제50조제1항제호 및 제2호), 이러한 의견 청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음(사건절차 규칙 제15조제1항)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787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	044) 200-4121

복합쇼핑몰·아울렛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부 복합쇼핑몰·아울렛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에 다음 사항에 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사이먼 등 일부 아울렛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배제가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이를 재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신세계사이먼은 ‘유통업자(소매업자)’가 아닌 ‘매장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현행법은 연간 소매업 매출이 1천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소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다만, 이와 같이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형식만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부 아울렛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에는 동의함



-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을 ‘소매업자’뿐 아니라 ‘상품판매(소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매장 임대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신세계사이먼 등 일부 아울렛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행)**
 - 현행법은 ‘소비재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소매업자’ 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아울렛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형식은 매장 임대업자이나 실질이 유통업자인 일부 아울렛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행)**
 -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했으나 입주 점포로부터 기본 임대료 외에 매출액과 연동 된 수수료를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공백을 막기 위해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매장 임대업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현행법상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공간을 임대하지만 실질적인 판매행위는 매장 임차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¹⁰⁾에서,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과잉규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장 임대업자가 상품의 판매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관여할 때 ‘실질적인 관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매장 임차인의 판매·유통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임대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다수의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에 대한

10) 다만, 현행법에서는 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인 대규모유통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음¹¹⁾

- 이에 따라, 추후 정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787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 200-4616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과 관련해 공정위에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가맹점주단체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유통 실무상으로는 ‘임대갑(甲)’과 ‘임대을(乙)’의 2가지가 대표적인 매장 임대차 계약 형태임. ‘임대갑’은 매장 임차인이 구매·판매·재고관리를 전담하고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며, ‘임대을’은 판매관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행하고 구매·재고관리 등은 매장 임차인이 수행하면서 임대보증금과 함께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함. 유통거래 현장에서는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변형된 매장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오금석·윤성운·이현규 외,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공정거래팀, 박영사, 2012, pp.34~35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공정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조속한 시일 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와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추진하겠음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곧바로 제재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국내외 유사 입법례에도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성실 협의 의무 불이행 시 제재수단 도입 여부(대안이행 중)
 - 협의요청 거부 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그 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향후 추진하도록 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현행법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가맹사업법 제4조의2제3항)하고 그에 불응할 시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 도입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¹²⁾이 수급사업자를 대표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제2항)
 - 원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 협의에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이 금지됨(하도급법 제16조의2제7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됨(하도급법 제25조의3제1항제6호)
- 하도급법이 사적자치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금조정 협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인 원사업자에 대해 개별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가맹사업법 역시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상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가맹계약이 당사자 간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공정하게 체결·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사적자치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즉, 협의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맹본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사적 자치의 침해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법령이나 고시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성실 협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제정(2014.1.1. 시행)하여, 원사업자의 성실 협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음

12)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주무관청(전국단위 조합은 중소기업청, 그 외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인가제로 운영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는 그 성격에 일부 차이가 있음



- 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조정 권한을 사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인 형태의 협의를 포함)에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④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787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	044) 200-4631

금융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신속하고 적극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의 올바른 역할을 재점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부터 경제부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회의는 차관급협의체인 산업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로 격상시켜 2년동안 운영기로 한 것임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 및 미래비전 제시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7월 기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음
 - 2017년 3월 해운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도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의 역할을 점검함에 있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국한되는 면이 없지 않음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구조 개편 및 미래비전 제시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래비전에 대한 뚜렷한 방향 제시가 미비하다는 평가임
-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산업부와 해수부 등에서 선제적 구조조정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고 있는 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협력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과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금융위원회 및 각 부처별 역할이 명확하게 분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위원회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라 하여도



경제부총리가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작용하는 이상, 기획재정부와의 업무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확실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상황에 따라 개편의 방향과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사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기업구조개선과	-	02) 2100-2920

■ 산업은행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산업은행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점검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왔던 것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위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조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 여신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제3호에서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것에 기인한 것임



- 공공기관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만들어진 산업은행의 내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으로 취급해 관리하였음
- 이후 산업은행은 여신지침을 개정(2016년 4월 22일, 2016년 8월 11일)하여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업체도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후관리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2년 2등급, 2013년 5등급, 2014년 4등급으로 나타났고 감사원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음
-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으로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도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여신이 불가능한 최고위험등급(5등급)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은 2016년 1월 금융감독원이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면서 동년 4월 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면 재구축한 바 있음
- 또한 재구축 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등급이 4~5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론모니터링과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수정하였음
- 그러나 시스템 개선 이후 재무상황을 입력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이상치 등급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모두 3등급을 받아 오히려 상향 조정되기도 하였음
- 산업은행의 여신지침에 따르면 3등급 기업은 '조치대상 외'로 분류되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에 여신지침을 개정하여 과반 지분을 보유한 업체도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후관리 하여도 시스템에서 등급관리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과거 2014년 대출 사기사건이 있었던 모뉴엘도 이 시스템에서는 1등급이 나오고 현



대백화점은 4~5등급이 나오는 등 본 시스템이 분석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틀은 아니라는 점은 산업은행장도 인정한 바 있음¹⁾

3. 개선방안

- 산업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있어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대상에 포함되는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산업은행이 그동안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재무이상치 분석을 수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분석회계²⁾ 자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될 수 없음
- 산업은행의 여신 대상 기업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함께, 해당 기업의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병행하여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기업구조개선과	-	02) 2100-2920

1)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6.6.30.

2)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주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각각 45억원, 16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하였음



■ 가계부채 통계 일관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가계부채 통계 일관성 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규모 통계가 서로 달라 혼동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당국은 적시성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가계대출 속보치를 수집하고 있으며, 속보치인 만큼 한국은행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범위를 일부 보완하였음을 밝혔음
- 이후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하였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가계부채 관련 통계는 통계청이 국가통계로서 기본적으로 산정·작성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금융부문의 가계신용을 집계하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보조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동 통계는 2012년 최초 작성 당시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의 기능을 통계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협조가 정착되었음

- 기관 간 업무 협조는 통계작성 이전 단계인 조사표 작성 등 사전 작업 과정과 통계 작성 이후 단계인 집계 과정의 검증 등에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통계작성의 실무 작업은 통계청이 주도하고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금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를 산정·발표하지 않음
 -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현황 파악으로 통계청 및 한국은행, 기타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활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정기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가계부채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음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조사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집행된 가계부문 대출에 대한 총량을 집계하여 발표함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는 국내 가계부문 전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총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부채 부문에 한정됨
- 국가통계로서의 공인된 가계부채 통계는 통계청의 설문조사 방식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기본임
 - 한국은행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가계부채DB를 구축하였으나 통계청은 한은의 가계부채DB를 공식적인 국가통계로 승인하지 않은 상황임
-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외에도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를 산출하고 있으나, 두 통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하는 것으로 2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차이가 있음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조사는 분기별로 작성되지만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소득별·자산별·가구구성별 통계를 알 수 없어 개인·가구별 빚



상환능력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함

- 반면 통계청은 별도의 금융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2만 가구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정확도에서 한계가 있음
 - 가구특성별로 부채 분포와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표본의 수가 적고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여기에 통계작성 주기가 1년으로 길고, 3월에 조사하더라도 연말에 공표하는 터라 가계부채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움

3. 개선방안

- 통계청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산출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정보 공유 및 업무협조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통계청은 한국은행 및 관련기관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이를 일관되게 발표함으로써, 기관간 통계의 불일치에 대한 혼란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차후 가계부채를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의 일관성과 가계대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각 자료에 대한 통계치와 특성치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존 가계부채 총량뿐만 아니라 차주의 특성 및 대출 목적, 대출규모 등을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 2100-2830



■ 공매도 규제 실효성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매도 규제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매도 공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11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여기에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신설³⁾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자 한 것임
 - 또한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무차입공매도금지,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매도증권 100% 사전납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음⁴⁾
 - 이를 위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무차입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전제재 기준을 강화하였음
 -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하락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3) 2017.3.27. 시행되었음

4) 2017.3.27. 시행되었음



-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을 발생일 기준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이외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제출 기한 단축, 진행단계별 정보제공 확대,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시 기준을 강화하였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임
 -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공매도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체계 확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임
-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과정 등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에 대한 제한 조치들이 마련된 것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며,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즉, 공매도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은 시장에서 발휘되도록 맡기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3. 개선방안

- 실제 공매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매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공매도 세력들의 문제로 대부분 공매도와 연계한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사항으로 간주한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향후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별종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별종목별로 정밀 대응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 2100-2651

■ 금융기관 핀테크 경쟁력 강화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금융기관 핀테크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2월 16개 은행 및 2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은행 및 금융투자 분야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출범하였음
 - 2017년 중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금융권 공동 프로젝트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권 공동 인증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임
- 또한 금융위원회는 업권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블록체인 협의회를 2016년 11월 구성하였음
 - 블록체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 중임
 - 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2017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은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음
 - 단, 해외 송금업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술력과 수준이 글로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협업 또는 직접적인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음
 - 2016. 1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은 물론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성한 'R3CEV' 컨소시엄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한 바 있음
 - 국내 금융권이 R3CEV 진입에 실패한 이유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준비 없이 일단 불안하니 이름만 얹어놓자는 조급함 때문으로 보고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이는 기존의 Active X 기반의 공인인증서에 이들 금융기관이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신기술 도입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내에 활용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은 그 활용 분야가 한정되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음
- 금융권이 R3CEV 진입에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로 R3CEV에 합류하며 은행 간의 모든 거래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R3CEV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권은 적절한 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국내 은행들 가운데 자체 엔지니어를 두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합류할 경우 모든 거래정보가 공개되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국내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스타트업과의 제휴 또는 투자가 시행된 바 있음
 - 그러나 원장이 분산됨에 따라 금융권이 독점하던 정보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전될 것에 대해서 보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안은 다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의 블록체인의 운용으로 오히려 기존에 비해 폐쇄적이고 금융기관 독점적인 원장 보유와 보안의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더욱 커졌음

3. 개선방안

- 블록체인을 통한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공인인증서 위주의 온라인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즉, 블록체인의 규제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때문인지, 금융소비자 보호



- 나 금융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의 규제인지 등 규제의 목적과 방향을 확립하여야 함
- 또한 특정 기술 중심의 규제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신기술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키우고, 전자금융 관련 기능별 규제와 금융업권에 대한 업권별 규제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 2100-2970

■ IC 단말기 교체사업 활성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IC단말기 교체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소멸포인트 1,000억원을 기금으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MS단말기 해킹사건의 대책으로 MS단말기 사용을 2018년 7월로 종료함에 따라,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임
- 2016년 말까지 IC단말기 교체 대상 가맹점 65만개 중 약 6만개를 대상으로만 단말기 교체가 진행되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IC 단말기 교체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신속한 전환 완료를 위해 참여의향이 있는 VAN사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확대(여신금융협회)
 - IC단말기 전환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계의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IC 단말기 교체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참여 대상 확대(이행)
 - 업계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의 수탁자인 여신금융협회는 2015년 6월 IC 단말기 교체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3곳을 선정하였으나, 이외 다른 VAN사업자의 반발이 있어왔고 이들과의 갈등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에 2017년 2월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VAN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기존의 대형 VAN사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단말기 전환사업을 상당수 진행하여 2018년까지 단말기 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존에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의 주요 취지 중 하나가 불합리한 VAN 수수료를 바로잡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자 대상 VAN수수료를 75원으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이 되어 VAN사의 수수료경쟁 유도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있음



- 초기에 신규 3개의 사업자는 각각 수수료를 4~50원대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었음
- 한편, 기존 VAN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단말기 전환을 상당수 추진하면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기금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예산을 추가적으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관련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기준하	02) 788-4584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	02) 2100-2983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제도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지정제도 확대 및 외부감사인 선정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발표('17.1.)
 -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직권지정 확대, 선택



- 지정제 도입), 핵심감사제 확대 등 감사품질 제고, 사전·사후감독 강화 등
-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공청회 개최
 -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17.2.27.)
 -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17.3.7.)
-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발표('17.4.17.)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발표(이행)
 -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발표(이행)
 - 법안 제출(대안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4월 금융위원회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종합대책 안에는 지정사유를 추가하는 직권지정제 확대, 상장회사가 제시하는 3개의 회계법인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종합대책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825)이 이후 5월 1일에 발의되었고, 아직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음
-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여러 공청회를 개최·참여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 점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된 점은 아쉬운 부분임
- 제시된 종합대책 외에 전면지정제나 자유선임 6년 후 지정 3년 등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여타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수 있으므로, 정무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기준하	02) 788-4584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 2100-2693

■ 서민 재무설계 서비스 연계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서민 재무설계 서비스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나 채무자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통합지원센터와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지원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17.1월)
 - 통합지원센터와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상담사례 공유 강화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무(설계)상담 전문기관과 통합지원센터 간 다이렉트 콜 연결을 통해 심층 재무(설계)상담 지원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나 채무자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통합지원센터와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상담사례 공유 강화(이행 중)
 - 재무(설계)상담 전문기관과 통합지원센터 간 다이렉트 콜 연결(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 9월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국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캠코)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대출 상품, 채무 연체, 긴급생활자금, 취업 정보에 대한 상담 및 신용·채무·노후 등의 종합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공식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와 함께 가정재무상담이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연계 지원을 통하여 재무설계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2017년 1월에 마련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기관 간의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다이렉트 콜 연결을 통하여 심층적인 재무 설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해당 방안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이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는 미흡한 상황임
- 정책 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창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서비스 대상자의 혼란을 줄이고, 기능 연계를 통해서 심층적인 상담이나 다양한 대안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기준하	02) 788-4584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	02) 2100-2614

■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모바일앱 청구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금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⁵⁾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17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 보험금 지급절차 진행사항·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행 중)
 -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이행)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회사별 30~100만원 이하 →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 전략 수립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절차 진행사항·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살펴본바 보험금 지급절차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시 담당자 배정이 이루어지고 3일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의 특성상 세부적인 상세내역은 조회가 어려우며 보험금 청구 시 전체적인 지급금액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안내장을 송부하여 안내장에는 입·통원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
 -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청구에서도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 절차가 여전히 요구되어 신속한 청구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신속한

5)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6.12.20.



청구에 대한 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현 시점에서는 미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추후 회원가입절차를 생략하거나 공인인증서 미사용 대책 등이 마련되는 경우 등의 사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살펴본바 전통적으로 실손보험을 판매해 온 손해보험회사 등은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회사별로 일정금액 이하에서만 사본을 인정하는 자체 기준(30~50만원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서류 원본을 팩스 또는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손보사의 경우 보험금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 상향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나 생보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부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보험소비자의 청구서류 구비부담 경감방안이 비교적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실손보험가입자의 경우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절차 간소화는 현실적인 체감이 어려우므로 노년층 가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온라인이나 모바일 청구에 있어서도 여전히 회원가입 절차나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청구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회원가입절차를 생략하거나 공인인증서 미사용 대책)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손보험을 비롯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생·손보 일부회사의 경우 자체 내부기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조사를 통해 100만원 이상으로 청구서류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이 대체적으로 보험사들의 협조 하에 잘 진행되고 있



으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미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지불보증절차와 같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별도 청구절차 없이 병의원과 보험사간의 직접적인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 2100-2965

■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를 통해 비급여 관리 과제⁶⁾ 마련추진
 -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행위정의 등 단계적으로 표준화
 -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 확대

6)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6.12.20.



- 진료비 세부내역 서식에 대한 표준양식 마련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여부
 -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행위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이행 중)
 -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 확대(이행)
 - 진료비 세부내역 서식에 대한 표준양식 마련 추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급여청구와 연계·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 별로 관리코드·명칭·행위정의 등이 제각각임. 금융위원회는 이들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명칭·정의 등을 표준화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16년 100항목, '17년 100항목 등 연도별 확대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준화할 예정임
 - 한편 다빈도·고액 부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건강보험 정책 관련 항목 등을 우선적으로 표준화하고, 매년 변화하는 현장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비급여 자료수집·분석, 표준화 원칙 등의 연구⁷⁾를 추진함
 - 실제 확인결과, '17.4.3일자로 당초 100개 항목에서 7개 늘어난 107개 항목을 표준화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으로 확인되어 최초 계획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양 부처의 TF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연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항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가 완료된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 기준,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17년 상반기내 기준에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는

7)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16.9~'17.4월, 대한의학회)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대상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함
- 동 개선안에 대한 확인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대상 기관 확대 개선안에 따라 '17.4.3일자로 총 3,669개⁸⁾ 병원들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7년 하반기 내로 의료·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식 형태, 필수기재항목⁹⁾ 등을 정한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확산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전산체계 개편 등을 '17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시행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살펴본바 계획안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진료비 세부내역 서식은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표준화하여 표준서식을 작성하였고 '17.7.5일 현재 법제처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작업을 거쳐 '17년 하반기 안에 예정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동 표준화된 서식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중 항목 표준화는 주체가 금융위원회보다 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 역시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역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이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제에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최초 공개대상 기관이 3,739개였으나 병원의 휴·폐업으로 3,669개로 최종 집계됨

9) 필수기재항목이란 항목, 코드, 금액, 급여·비급여 여부 등을 의미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 2100-2965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자기손해사정제 폐지는 손해사정사 선임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손해사정 비용 전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손해사정과 관련한 상법체계 등을 감안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손해사정사회,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손해사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여부**

- 손해사정사회,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손해사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미이행)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안내 강화(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손해사정사회, 보험회사,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공정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손해사정사회나 보험사에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 및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8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보험사에 자회사 위탁관행 등 6대 세부과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금감원 보도자료의 내용은 자회사 위탁관행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의 독립성 확보’, ‘손해사정업의 공정한 발전’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 그러나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오히려 2014년 전체적으로 자회사의 손해사정 물량이 급증했음에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고, 자회사 수입만 늘려주고 있으며 2017년 현재도 변함이 없음
- 현행 「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상 원칙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상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손해사정사의 독립적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됨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자신이 보유한 보험계약 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보



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이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회사에 불공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동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3호의 단서조항¹⁰⁾은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으로 기능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¹¹⁾의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으로 부과하여 2016.10.1일부로 이미 시행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안내강화방안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그 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방안은 가시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와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우선 고용·위탁손해사정사 제도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관련 부분, 그리고 보험회사가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시행령」 제99조제3항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요함
- 특히 고용손해사정사와 관련해 보험회사 내 손해사정 전담인력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의 고용은 허용하되, 이들이 직접 손해사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즉 고용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독립손해사정사 등이 제출한 손해사정 근거자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의 개정을 통해 (현재 손해사정사로만 국한되어 있는) 처벌 범위(자기손해사정 금지대상)를 보험회사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들 법령조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현 손해사정사 제도를 독립손해사정사

10)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 2100-2965

■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지급기준 개선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지급기준(휴업손해, 간병비, 음주운전 동승자감액기준, 형사합의금 등)을 검토한 후 2017년 2월 임시국회에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지급기준(휴업손해, 간병비, 음주운전 동승자감액기준, 형사합의금 등)을 검토한 후 2017년 2월 임시국회에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17.3.1.시행)을 통해 휴업손해, 간병비 현실화 및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신설('17.3.1.시행)을 완료함
 - 또한,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정('17.3.1.시행)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보험금 지급프로세스 개선을 완료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지급기준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여부
 - 휴업손해, 간병비 등 현실화 및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신설(이행)
 -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개정(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9월말)에 이를 만큼,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관심이 지대함
-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여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17.3.1.부터 시행함
 - 확인결과, '17.3.1일부터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개선방안 중 휴업손해, 간병비 현실화 및 음주운전 동승자 감액기준 신설,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요구한 국정감사시정조치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11 |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장 레 비	▷ 3백만원(1인당)	▷ 5백만원(1인당)								
사망 위자료	▷ 19세 이상~60세 미만 : 45백만원 ▷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60세 미만 : 80백만원 ▷ 60세 이상 : 50백만원								
후유장애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19세 이상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table border="1"> <tr> <td>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td> <td>▷ 60세 미만 : 8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 60세 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td> </tr> <tr> <td>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외</td> <td>▷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td> </tr> </table>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 60세 미만 : 8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 60세 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외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 60세 미만 : 8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 60세 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 외	▷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 실률 × 85%									
휴업손해 인정비율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입원간병비	신 설	<p>▷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 (실제 입원기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최대 인정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 ~ 2급</td> <td>60일</td> </tr> <tr> <td>3 ~ 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p>▷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내)</p>	상해등급	최대 인정기간	1 ~ 2급	60일	3 ~ 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최대 인정기간									
1 ~ 2급	60일									
3 ~ 4급	30일									
5급	15일									

- 우선 휴업손해 현실화와 관련하여 그 인정비율을 휴업손해의 80%에서 85%로 5% 상향조정하여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으나, 간병비는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 자체가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 그러나 금번 약관개정으로 인하여 입원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급수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약관 개선안을 신설함
- 음주운전 동승자 감액기준과 관련하여 약관상 동승자 감액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을 신설하여 보험금 산정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 | 금감원 (동승자 감액)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동승자 감액비율	▶ 동승유형 : 4가지(①~④)로 구분 ▶ 운행목적 : 동승 유형별로 운행목적에 따라 4단계로 분류 → (동승유형+운행목적)에 따라 12개 감액 비율이 산출되어 난해	▶ 동승 유형별 감액비율 단순화														
		<table border="1"> <thead> <tr> <th>동승 유형 (6가지)</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td> <td>100%</td> </tr> <tr> <td>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td> <td>30%</td> </tr> <tr> <td>③ 상호 의논합의 동승</td> <td>20%</td> </tr> <tr> <td>④ 운전자의 권유 동승</td> <td>10%</td> </tr> <tr> <td>⑤ 운전자의 강요 동승</td> <td>0%</td> </tr> <tr> <td>⑥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td> <td>40%</td> </tr> </tbody> </table>	동승 유형 (6가지)	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③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④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⑤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⑥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 유형 (6가지)	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③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④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⑤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⑥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개정은 '20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이전인 2016.1.5.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이미 개선했던 내용으로 이미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금융감독원이 '17.3.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보험금 개선작업은 큰 폭의 개선을 이루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 2100-2965



■ 실손보험 독자상품 판매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실손보험 끼워팔기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을 독자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검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끼워팔기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을 독자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실손보험의 끼워팔기 관행 개선을 위해 '18.4.1일부터 실손의료비 보장 단독 상품으로 판매토록 의무화¹²⁾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실손보험 끼워팔기 강력 제재 및 독자상품 개발판매 개선방안 검토 여부
 -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 개선을 위해 '18.4.1일부터 실손의료비 보장 단독 상품으로 판매토록 의무화(이행)

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원료('17.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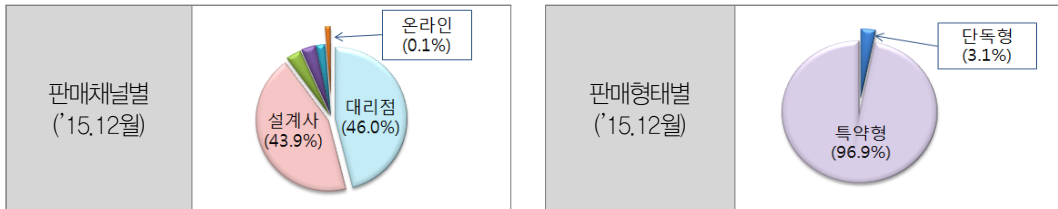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가입절차를 보면 대리점, 설계사 등 대면 채널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비중은 0.1%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임. 보험회사는 손해를 관리를 위해, 설계사 등은 판매수당 증가를 위하여 가입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불필요한 보장을 포함하여 실손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

그림 1 실손보험 판매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6.12.20.

- 업계에서는 이를 일명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이라고 부르는바 끼워팔기는 보험료가 높은 다른 상품(예-사망보장 등)과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12월 기준으로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3.1%에 불과하여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팔는 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실 이렇게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을 끼워팔는 관행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실손보험의 판매수당이 적은 관계로 판매수당이 큰 다른 보험 상품을 실손보험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관행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으며, 보험사 역시 최초 실손보험 판매시 결합형 실손보험 상품만을 출시한 원인도 있음



| 표 3 | 실손보험 판매형태 비교(예시)

구분	단독형 실손보험	패키지 상품
주요 보장	실손의료비	(주계약) 사망/후유장해 (특약) 실손의료비+암·뇌졸중 등 보장
보험료	월 1~3만원	월 10만원 내외 (부가특약에 따라 상이)

자료: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6.12.20.

- 이러한 단독형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주계약과 갱신주기, 보장기간 등 상품구조가 상이하여 가입자의 이해가 어려워 민원을 발생시킴
 - 둘째, 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3만원 수준이지만 패키지형태의 결합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불필요한 상품까지 추가로 가입하게 되므로 월 10만원을 납입하게 되어 보험료 낭비가 발생함
 - 셋째, 결국 패키지 형태의 결합형 실손보험의 월 납입보험료 부담으로 실손보험의 유지율도 5년내 5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 표 4 | 실손보험 유지율

구분	13차월	25차월	37차월	48차월	60차월
유지율	90.5%	78.7%	68.6%	58.6%	48.5%

자료: 김대환, 「민영건강보험의 개편안 검토」, 2012.

- 넷째, 패키지 형태의 결합형 실손보험은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구분하기 어려워 상품간 비교선택이 곤란함
- 다섯째, 패키지 형태의 결합형 상품판매로 손해율 등의 독립적인 실손보험 통계 산출에 어려움이 발생함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통계 집적, 보험금 지급·관리 등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고, 단독형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과 분리하여 판매토록 규정('18.4.1 시행)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함
- 동 개선안에 대한 확인결과, '17.3.22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단독형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모두 단독형 상품을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서



상품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대로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실손보험 독자상품 판매방안은 '18.4.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시 보험회사의 간호사에 의한 방문진단이나 본사의 적부(適否)심사를 받고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 2100-2965

■ 산업은행 임원 임면과정 개선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에 임원 임면과정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산업은행	산업은행 임원 임면결과에 대하여 내부 구성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임면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산업은행은 2017년 4월 「201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임원 임면과정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산업은행은 임원 임면과정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2017년 1월 13일 도입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3인(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선임)으로 구성함
 - 종전 전무이사와 이사 임면 시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던 절차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향후 산업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임원 임면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산업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은행 임원 임면과정 개선방안 마련 여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이행)
 - 임면과정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 예정 (이행 중)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임원선임제도 도입 여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이행)

- 산업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산업은행은 전무이사와 이사를 임면하는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임원선임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이행하였음



- 다만, 향후 임원 임면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이외에 임원 임면결과에 대하여 내부 구성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임면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방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향후 산업은행 임원 임면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과 추가적인 사후조치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향후 산업은행 임원 임면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도입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임원후보추천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은행 회장, 전무이사의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보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업계전문가,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³⁾
 - 이와 함께 산업은행 임원 임면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원 자격요건, 임원후보 평가기준 등 추천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 부처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	기획조정부	-	02) 787-6141

13)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 여신편중 해소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출입은행에 대기업과 특정산업에 편중된 여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수출입은행	여신이 대기업과 특정 산업(해외건설플랜트 및 조선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신편중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수출입은행은 2017년 4월 「201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대기업과 특정산업에 편중된 여신 문제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선박, 플랜트 등에 편중된 여신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및 인프라 부문 등 유망산업 지원비중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 중임
 - 신성장산업 지원비중은 2016년 9.0%에서 2020년 12%로, 인프라산업 지원비중은 2016년 8.9%에서 2020년 14%로 확대할 예정임
 - 거액·취약산업에 대한 신용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별 여신편중 해소를 추진함
 - 신용공여한도 축소, 이행성보증 한도관리 강화를 통한 개별기업 앞 과다 지원을 방지함
 - 조선·건설사에 대한 신용익스포저 정기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취약업종에 대한 편중위험 완화를 유도함
 - 중점관리차주¹⁴⁾에 대한 신용익스포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거액 익스포저를 점진적으로 축소함



- 산업별 리스크한도 설정 등을 통해 산업별 편중위험을 관리함
- 정책자금 수혜 저변 확대를 위해 중개금융기관을 활용하는 해외온렌딩 등 신규상품 도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임
 - 2016년 거래기업 수는 2015년 대비 27.5% 증가, 전체여신 대비 지원비중은 2015년 대비 32.6%에서 34.3%로 증가함
 - 2017년에도 전체 여신의 39%인 26조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수출입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편중된 여신문제 해소방안 마련**
 - 신성장산업 및 인프라산업 지원비중을 확대 (이행 중)
 - 거액·취약산업 신용익스포저 관리 강화 및 산업별 편중 해소 추진 (이행 중)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해외온렌딩 등 신규상품 도입 (이행 중)

□ 수출입은행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수출입은행은 선박, 플랜트 등에 편중된 여신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및 인프라 부문 등 유망산업 지원비중을 확대하는 추진계획을 제출하는 등 국회의 지적 사항을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거래기업 수와 지원규모 확대 계획은 향후 정책자금의 수혜 저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가 현 시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후조치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14) 신용익스포저 과다, 재무구조 취약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기업을 의미함



3. 개선방안

- 향후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국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금융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이 유사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시행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과를 보다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의 부재라기보다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저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국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 관련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체계를 강화하여 미진한 정책금융은 축소·폐지하고, 성과가 우수한 정책금융은 확대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입은행은 포함한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 부처	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	02) 3779-6043



■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7년 4월 「201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검토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¹⁵⁾이며, 동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현행 보호한도의 적정성 및 상향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임
 - IMF는 보호한도에 대해 1인당 GDP 대비 1~2배 수준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1.6배 수준임¹⁶⁾
 -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한도 조정 필요성과 한도 조정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임
 - 향후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임

15) 이와 관련된 법안은 2016년 12월 30일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금융업종별 보호한도를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16) 보호한도(5,000만원) / 1인당 GDP(약 3,174만원, 2016년말 기준)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금융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검토에 대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의 적정성 및 상향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국민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금융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한도의 적정성 및 상향 필요성에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예금자 보호한도의 적정성 및 상향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관련 공청회도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검토와 관련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금융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사후조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보다는 통합예금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통합예금보험제도로 운영되어 오면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제도로 발전해 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예금자 보험한도를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보호한도를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의 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하



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¹⁷⁾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과	-	02) 2100-2903

17) 우리나라와 동일한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예금과 투자상품 등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모집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모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	인터넷을 이용한 모집인의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카드모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예정
 - 사이버 감시반의 미스터리쇼핑 확대, 불법 카드모집 게시물 삭제 관련 온라인포털과 연계강화, 불법 카드모집 관련 안내광고 게시 확대 등 추진
 - 여신금융협회의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강화('17.4월)
 -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 강구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인터넷을 이용한 모집인의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사이버 감시반의 미스터리쇼핑 확대, 불법모집게시물 삭제 관련 온라인포탈과 연계강화, 불법모집 관련 안내광고 게시 확대 등 추진(이행 중)
- 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통한 불법모집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 강구(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검사 실시 및 불법모집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¹⁾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업계는 정도영업 실적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17.4월)하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주의를 환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온라인 불법 카드모집에 대하여 여신금융협회 사이버감시반에서 인터넷 포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모집 안내문을 감시하고 있으나, 개인 간의 쪽지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글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 포탈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
-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놓이면서 모집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불법 모집 시장이 커서 점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최근 카드모집인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신용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조항은 무분별한 카드 남발과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지만, 상당히 오래된 기준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기준 자체에 대하여도 새롭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1) '17.2월 카드모집인 225명, '17.3월 카드모집인 157명 과태료 부과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기준하	02) 788-4584
관련 부처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검사기획팀	-	02) 3145-880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관련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대출 이용 그 자체로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평가 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 1차 회의(2017.1.25.): TF 구성(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조회회사, 금융권, 학계 등)



- 2차 회의(2017.2.10.): Credit Bureau(이하 “CB”)의 투명성 제고방안
- 3차 회의(2017.2.17.): CB의 투명성 제고방안
- 4차 회의(2017.3.8.): CB의 불합리한 평가체계 개선방안
- 5차 회의(2017.3.20.):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의 자율성 강화방안
- 6차 회의(2017.3.30.):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 지원방안
- 상기 TF에서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2017년 하반기)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신용평가 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긍정적·부정적 요소의 세부내용까지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 마련(이행 중)
- 저축은행이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 공적지원제도 이용이 신용등급 관리에 보다 유리함을 안내하도록 지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업권별로 연체율에 차이가 있어 신용등급 하락폭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 이용 시 그 자체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문제는 해소해야 할 것임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였으며, 총 6차 회의를 통해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시정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TF 2차~4차 회의에서 CB의 투명성 제고방안, CB의 불합리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신용조회회사가



-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긍정적·부정적 요소의 세부내용까지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TF 6차 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 공적지원제도 이용이 신용등급 관리에 보다 유리함을 안내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임
 - 다만, T/F 구성 이후 5차례 회의가 이루어졌으나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가시화하여 신용평가체계 적정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첫째,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 이용 시 하위등급보다는 상위등급에 분포된 금융소비자의 등급하락폭이 높으므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저축은행이 이용자들에게 대출시 신용도 하락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 하위등급에 분포한 금융소비자는 기존에 연체정보가 있거나 신용도 하락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위등급에 분포된 금융소비자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됨
- 둘째, CB사는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기준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지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절차와 평가지표의 공정성·합리성 확보를 통해 신용등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것임
- 셋째,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은 4~6등급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등의 납부 정보 반영을 확대해야할 것임
- 마지막으로, 종장기로는 개인신용평가 시 신용등급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등급 점수제가 도입되면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 중 650점, 800점 등



으로 세분화되고 금융회사도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게 됨

- 또한, 점수제로 세분화되면 차주별 리스크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과 대출구조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은 금융기관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신용정보팀	-	02) 2100-2621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신용정보1팀		02) 3145-7834

■ 대부업체 최고금리 이상 대출 관련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이상 대출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자율 상한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이상 대출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환대출(장기대출을 단기대출로 전환), 법정금리 초과대출 감축 등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함(2016년 3월~4월)
 - 2016년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 34.9%→연 27.9%)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최고금리 준수여부 등을 검사함
 - 검사 실시기간: 2016년 3월 21일~2016년 4월 18일
 - 검사 대상기관: 10개 대부업체
 - 검사결과: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지적사항 없음
 - 일부 대형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내로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함¹⁾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TF를 운영하여 논의함
 - 1차 회의(2017.2.21.): TF 구성(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한국금융연구원 등)
 - 2차 회의(2017.3.14.): 금전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방향 논의
 - 3차 회의(2017.3.20.):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개선방향 논의
 - 4차 회의(2017.4.6.): 대부업자 영업행위 감독 개선방안 논의
-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T/F」 논의를 통해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다양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임(2017년 하반기)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여부 (대안이행 중)
 -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T/F」 논의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 건의를 추진할 예정임
- 대환 대출 유도 여부 (대안이행 중)
 - 개인신용 대출 계약기간의 다양화 방안을 논의 중임
- 법정금리 초과 대출 감축 여부 (이행완료)

1)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율인하 실적: 1조 158억원(상위 20개사 기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조치는 현재 대부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T/F」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차선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환 대출 유도 여부의 경우 현재 대부업자의 대출계약기간은 평균 3년~5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신용 대출계약기간의 다양화 방안 추진을 통해 차선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정금리 초과대출 감축 조치의 경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최고금리 이내로 자율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상위 20개사 기준으로 자율인하 실적이 1조를 넘은 것으로 볼 때, 법정금리 초과대출 감축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영세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첫째, 대통령 공약 사항에 따라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법정금리 준수 및 연장 등에 대해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실태 검사 등을 통해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여 계약자가 법정 최고 금리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태조사 시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중점검사항목으로 운영해야할 것임
- 둘째,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의 경우 2017년 4월 개정된 「상호저축은행 표준금융거래약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 표준금융거래약관」 제20조제3항은 여신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해 채무자로 하여금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T/F」의 경우 T/F 구성 이후 4차례 회의가 이루어져있으나 4월 이후에는 진행된 바 없으므로, T/F 회의 정례화 및 T/F 결과 보고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	02) 2100-2612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		02) 3145-6774

카드론 증가에 따른 부실 관련 조치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카드론 실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	카드론 실적 증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잠재적 부실문제, 채무건전성 악영향 및 자산건전성 문제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카드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함(2017년 2월)
 - 2016년말 기준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취급 동향과 건전성 현황, 2건 이상 카드론 이용고객의 카드론 이용현황 등을 분석함



- 카드론 취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매분기에서 일단위로 단축함(2017년 3월 이후)
 - 2017년 3월에 전업카드사(8개사)²⁾ 및 주요 신용카드업 영위 겸영은행(3개사)의 2017년 가계대출(카드론 포함) 운용계획을 징구함
 - 이후 동 사들의 카드론 취급현황을 일단위로 모니터링 하여, 상기 운용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함
- 카드론 등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7개 카드사³⁾ CEO와의 면담을 실시함(2017년 3월 14일~3월 30일)
- 카드론 급증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2017년 3월~6월)
 - 카드대출 잔액이 크고 증가율이 높아 리스크가 높은 카드사 4개사⁴⁾를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
 - 카드사의 카드대출 취급 시 채무상환 능력 심사 절차, 취급 후 사후관리절차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카드론 이용실태 및 건전성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여부**
 - 카드론 취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행 중)
 - 카드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이행 중)
 - 카드론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총당금 적립 기준 강화(이행완료)

2) KB국민 현대, 삼성, 우리, 롯데, 하나, 신한, BC

3) 카드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KB국민 현대, 삼성, 우리, 롯데, 하나, 신한)

4) KB국민·하나: 2017.3.7.~3.15, 롯데: 2017.4.10.~4.21, 신한: 2017.6.1.~6.15.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카드론 취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8개 전업카드사 및 주요 신용카드업 영위 겸업은행의 2017년 카드론 등 가계대출 운용계획 이행 여부를 일단위로 지속 점검하는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시정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카드론 급증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카드대출 잔액이 크고 증가율이 높아 리스크가 높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카드론 취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매분기에서 일단위로 단축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건전성이 의심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임
-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복수 카드론 차주에 대하여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중이어서⁵⁾,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라는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음.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
 - 특히,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을 우려하여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②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연간 적용금리 또는 연환산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5)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6.30.



3. 개선방안

- 첫째,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부실위험이 높은 카드사의 카드론 취급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카드사의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운영 내실화, 저신용·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자제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해야 할 것임
 - 카드론 증가세는 2016년 이후 안정화되었으나⁶⁾, 향후 카드론 취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험요인이 감지되면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카드사가 카드대출 취급관련 세부심사기준과 한도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손비용, 수익성 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카드사가 대출취급 확대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⁷⁾, 이는 정부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조치 이후 카드사가 수익성 다각화 측면에서 카드대출 영업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기적인 카드론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체율을 포함한 건전성 관리, 카드론 확대를 위한 금리할인 마케팅 자제 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2016년 상반기) 5.41% → (2016년 하반기) 4.98% → (2017년 상반기) 3.05%

7) 카드 신용판매수익 및 마케팅 비용률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3
신용판매수익(A)	106,992	114,439	125,499	129,017	131,213
마케팅비용(B)	38,215	39,668	46,514	51,039	52,958
마케팅 비용률(B/A)	35.7	34.7	37.1	39.6	40.4

주: 해당 월 직전 4분기의 수익과 비용(2017.3월의 경우 2016.4~2017.3월의 수익과 비용)

자료: 금융감독원, 「카드 신용판매수익 및 마케팅 비용률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7.7.21.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	02) 2100-2990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총괄팀		02) 3145-7552

■ P2P 대출 관련 부당광고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P2P 대출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 대출 관련 부당광고(확정수익률 제시, 금융기관 상품 판매로의 오인 등)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함(2017년 5월 29일)
 - 가이드라인은 2월 27일에 마련되었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에 시행됨



■ 「P2P 대출 가이드라인」 규정 사항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함⁸⁾

(투자금의 별도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⁹⁾하여 고객 재산 보호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투자광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¹⁰⁾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P2P업체 대상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2017년 8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확정수익률 제시 감시 (이행 중)

- P2P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금융기관 상품 판매로의 위장 감시 (이행 중)

- P2P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상품으로 위장 판매 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확정수익률 제시 감시 조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투자광고 시, “원금보장”, “확정수익”등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시정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금융기관 상품 판매로의 위장 감시 조치의 경우 감독 결과 금융기관 상품으로

8) 일반개인(1천만원), 소독적격 투자자(4천만원), 법인투자자(제한 없음)

9)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10)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조기 상환조건 등



오인할 소지가 있는 투자광고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¹¹⁾,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는 금융기관 상품 판매로의 위장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규율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미국·영국·중국 등은 최고 금리 규제, 투자자 보호 규제, 허가제와 보고의무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중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발달에 따라 P2P 대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¹²⁾
 - 또한,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지만,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	02) 2100-2614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P2P대출감독대응반	-	02) 3145-6780

11) 금융감독원 담당자 구두답변(2017.7.21.)

12) 의안번호 2008120,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2017.7.20.)

국민권익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청탁금지법 법령해석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법령 유권해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해석 기준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권익위는 법무부,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
 - ’16. 10월말부터 2개월간 주 1회 정기적으로 총 7회 개최, ’17년에는 현안 발생 시 수시개최



- 이와 함께, 체계적인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유권해석의 전문성·일관성을 강화해 나가겠음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DB 구축·운영,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 확대 및 활동 강화, 법학교수 중심 청탁금지법 연구회 지원, 질의회신집 제작 및 해석집·매뉴얼 개편 등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TF 운영 여부

- 2016년 총 7회 TF 개최 (이행)
- 2017년에는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최 사실 없음

■ 유권해석의 전문성·일관성 강화 여부

- 청탁금지법 법령 해석 전담부서(청탁금지해석과, 정원 9명) 신설 (이행)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해석기준 마련 관련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33명) 구성 (이행)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DB 및 검색 시스템 구축 (이행 중)
- 청탁금지법 해설집·매뉴얼 현행화 (이행 중)
- 주요 질의사례 등 질의회신집 제작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관행적인 부정청탁 및 항응집대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음
 -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개념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TF’를 운영함
 - 해석기준 TF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안건 관련 부처가 참석함
 - 2016. 10. 28.부터 12. 16.까지 주 1회 총 7차례 해석기준 TF 회의가 개최되었음



- 2017년도에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해석기준 TF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다만, 2017년도에는 개최된 적이 없음
 - 유권해석의 전문성·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원 9명의 청탁금지해석과 신설 및 33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DB 및 검색시스템 구축, 청탁금지법 해설집·매뉴얼 업데이트, 질의회신집 제작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
 -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개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관계기관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볼 때 청탁금지법상 개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는지는 검토 여지가 있음
- 해석기준 TF가 논의한 안건들은 청탁금지법 실행에 있어 민감한 이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 결과가 법령 해석에 논란이 없는 내용이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임
 - 예를 들어, “민간인 간 3만원 초과 식사의 경우, 민간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제1차 해석기준 TF)이라고 하거나,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한 교통·숙박·음식물 등’에 대한 결과(제6차 해석기준 TF)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
 - 해석기준 TF는 개념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경우도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중 비판이 가장 많았던 개념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었음
 -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부모 - 담임교사’ 또는 ‘수강학생 - 강의 담당 교수’ 사이에서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카네이션 또는 캔커피 제공행위도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및 제공행위라고 하여 금지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 그러나 제4차 해석기준 TF에서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없고 “제공한 선물, 음식물 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명목에 불과하여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예외사유 불성립”한다고만 함
 -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목적과 가액에 상관없이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결과로서 그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것과는 거리가 있음
 -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기준, 뇌물죄와의 구별 기준 등의 정리가 필요하고, 나아가 ‘직접적 직무관련성’을 해석기준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이재일	02) 788-4546
관련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	044) 200-7701

■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 보호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신고 활성화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국방·건설 등 파급효과가 크고 내부신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17년에는 4개 집중신고 활성화 분야(사회적 약자, 국방, 건설·교통, 산업·자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을 약 20회 실시할 계획
 - 또한, 신고자 비밀준수 의무자 확대,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마련 등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개정을 추진 중
 - '17. 4월 현재 내부 검토 중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교육 연 20회 실시 (이행 중)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신고자 비밀준수 의무자 확대, 보호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마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충실한 이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17. 7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대하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3. 개선방안

□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와 함께 고려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논의해야 함. 그리고 근거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해당 법률 개정 시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익명에 의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신고납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납발은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꺼리는 경우에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불이익조치로부터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방안

- 불이익조치 추정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를 방해 또는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등은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나, 보통 공익신고 등으로 해고되는 사유는 보안규정 위반, 업무방해, 기업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사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의 책임감면 사유에 해당됨)으로 이를 불이익추정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권익위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미이행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미이행일에 따른 일별 부과로 그 효과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권익위의 원상회복 결정 미이행 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른 시기에 이행을 촉진하기에는 총액부과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음
- 신고에 대한 심사 중에는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직의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누설되면 공익신고자는 해고 등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고, 피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상정보 누설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약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이재일	02) 788-4546
관련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	044) 200-7691

국가보훈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감면진료대상자 ¹⁾ 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현행 75세로 되어 있는 감면진료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감면율을 확대하고,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임
 - 보훈병원 감면율 확대와 감면대상자의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함

1) 감면진료대상자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포함되며,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유·가족은 제외됨



- 75세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감면율 확대: 60% → 80%, 211억 원 요구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기준연령 하향 조정: 75세 → 70세, 60억 원 요구
-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의 확대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기준연령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감면진료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감면율을 60%에서 80% 확대하여 2018년 예산에 211억원을 반영하여 요구함(이행 중)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하향 조정하였는지 여부**
 - 감면대상자의 기준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조정하여 2018년 예산에 60억원을 반영하여 요구함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감면진료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치로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감면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여 2018년 예산에 211억 원을 반영하여 요구한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다른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의 기준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하여 2018년 예산안에 60억 원을 반영하여 요구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감면율을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훈병원은 감면진료대상자에게 지역 및 연령에 관계없이 60%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와 만성 노인성질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보훈병원 감면율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을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75세 이상의 감면진료대상자 전원에게 적용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감면율을 확대조정하기 위해서는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이용현황 및 생활수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령의 감면진료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감면진료대상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의 기준연령을 70세로 하향 조정한 방안에 대해서는 65세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이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 기준연령을 재정립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노인의 기준연령은 65세이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 노인 기준연령의 적용 및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연령의 조정문제와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질환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감면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원외처방 약제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서 노인성질환 등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제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성봉	02) 788-4554
관련 부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	-	044) 202-5640



■ 해외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하여 해외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가보훈처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현충시설은 전 세계 24개국 905개소에 산재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외 현충시설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 관리기관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을 확대함(2016년 12월)
 - 현지관리기관: 20개 기관 136개소 → 25개 기관 170개소
 - 명예관리자: 5명 27개소 → 10명 50개소
 - 정기 실태조사 계획 수립(2017년 1월)
 - 중국 동북 3성 30개소(2017년 5월)
 - 중앙아시아 30개소(2017년 10월 계획 수립예정)
 - 수시 실태조사
 - 국외 사적지 탐방행사와 연계하여 실태를 점검: 중국(임시정부, 동북 3성), 러시아(연해주) 등 13회 실시함
 - 주요사항 발생 시 별도로 수시 점검할 예정: 중국 충칭 및 연변자치주, 카자흐스탄, 미주 동부지역 등



- 「현충시설 건립 및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예정
 - 현충시설에 대한 입법화를 통해 국외 현충시설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 2017년 4월 관계부처 의견 조회
- 중국이나 미국 등 국외 현충시설이 다소 소재하는 국가에 국가보훈처의 전담인력(주재관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해외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 지 여부
 - 현지 관리기관 및 명예관리자 위촉 확대(2016년 12월)
 - ◆ 현지관리기관 : 20개 기관 136개소 → 25개 기관 170개소(이행 중)
 - ◆ 명예관리자 : 5명 27개소 → 10명 50개소(이행 중)
- 해외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는 지 여부
 - 정기 실태조사 계획 수립(2017년 1월)
 - ◆ 중국 동북 3성 3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 5월, 이행)
 - ◆ 중앙아시아 3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2017년 10월 계획 수립예정, 이행 중)
 - 수시 실태조사 실시
 - ◆ 국외 사적지 탐방행사와 연계하여 실태를 점검: 중국 임시정부,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 등 13회 실시(이행 중)
- 「현충시설 건립 및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2017년 4월 관계부처 의견 조회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해외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와 협력하여 현지 관리기관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다만, 외국의 현충시설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해 있고, 외교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재외공관에 전담인력을 두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외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대책 강구 조치는 2017년 1월에 정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5월 중앙아시아 지역 3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중국 동북 3성 3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7년 10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임
 - 수시실태조사의 경우 국외사적지 탐방행사와 연계하거나 주요사항 발생 시 별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중국 및 러시아 등에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임
- 해외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충시설 건립 및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 중인 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의견조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성봉	02) 788-4554
관련 부처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	-	044) 202-5510

■ 군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가보훈처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을 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고음역대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내·외 유사제도의 난청인정기준 및 2016년 상이등급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함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 완화방안 마련: 50dB → 40dB
 - 고음역대(6,000 ~ 8,000Hz)난청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 지장이 없고, 현대의 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청력측정방법²⁾을 유지하기로 함
 - 향후 조치계획으로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을 완화하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2017년 4월 ~ 5월: 관계부처 협의(4. 10 ~ 4. 21), 입법예고(4. 14 ~ 5. 26)
 - 2017년 6월: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 2017년 7월 시행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는 지 여부
 -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을 50dB → 40dB로 완화(이행)
 - 난청인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기준을 50dB에서 40dB로 완화한 조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력손실치와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6분법 : $500 + (2 \times 1,000) + (2 \times 2,000) + 4,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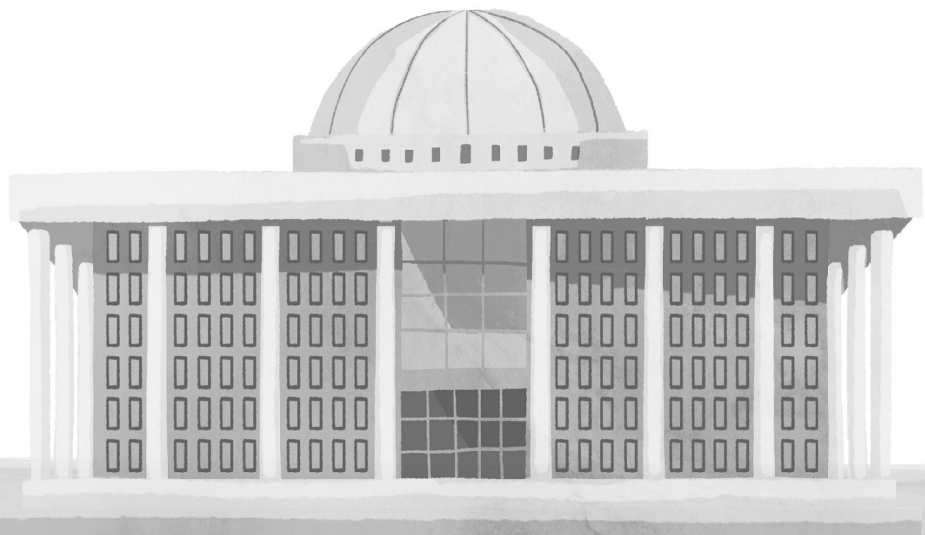
- 난청인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은 이명으로 인한 장애인정기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군 이명질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명의 경우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만 가장 낮은 7급으로 인정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어, 이명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이 난청과 함께 이명발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난청인정기준이 40db이상인 경우는 14급의 신체장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12급을 인정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시 이명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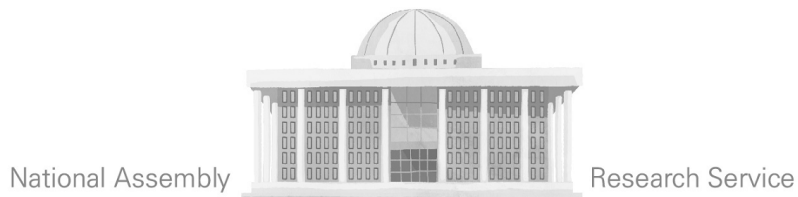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성봉	02) 788-4554
관련 부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	-	044) 202-5921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위원회 소관 원고의 담당부처 연락처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조직개편 이전 연락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의무화 실행 미흡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것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협약 시 수행기관이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제도개선('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영요령 제26조제1항 제8호 및 협약서 양식 개정



- 이는 '17년 협약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협약 시 수행기관이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제도개선('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8호 및 협약서 양식 개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는지 여부

- 협약 시 수행기관이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제도개선 (대안이행)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이하 중략)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영요령 및 협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뿐 동 제도의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제도 도입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
 -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영요령 및 협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 2017년 이후 협약과제의 수행기관은 동 양식에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해당사항 없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함
 - 협약과제 이행기관의 내규를 개정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협약과제 참여 연구원에 한해서라도 직무발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협약서 양식에 기술하여 제출하였다고 함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의무화이므로 현행 협약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과 그 관련 규정의 강제력 미비는 다소 소극적 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전은경	02) 788-4596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	-	044) 203-4516



교육·고용 연계성 강화 관련 산업부의 관여 점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고용연계 교육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현장에 연계성이 강한 산업부에서 고용연계 교육 정책에 보다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시정 및 처리결과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형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해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16.3월)’을 하고, 각 산업분야의 석·박사 고급연구인력양성 및 기술인재의 효율적 활용·공급을 통해 고용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16년에는 석·박사 인력 취업률(73.1%)의 성과를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전 과정에 기업의 실질적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과정에 산업계의 실질적 참여 및 고용연계 강화를 위한 인력사업(기업연계형인력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 정책에 산업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함
- 기업연계형인력양성사업은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대학원 과 참여기업의 공동 연구인력 선발, 시제품 제작·현장실습 확대 등 산학프로젝트 의무화를 통해 산학협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부가 고용연계 교육 정책에 보다 관여하는지 여부**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 인력을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이행 중)
- 미래유망 산업별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고자 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신규 사업의 내용은 ①미래형자동차 R&D전문인력 양성, ②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 ③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 ④글로벌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전문인력 양성, ⑤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양성 등 5개 사업임
- 이 중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석·박사 인력양성 및 현장수요를 반영한 산학프로젝트 공동수행 등을 추진내용으로 하고 있고, ④는 글로벌 선진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선도적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을 추진내용으로, ⑤는 조선산업 고속련 퇴직인력을 대학교원 및 기술자문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내용으로 함
- 신규 사업 내용과 그 추진 내용들은 산업계의 미래 및 현재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고용과 연계된 교육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석·박사 과정 인력 양성 및 산학프로젝트 공동수행 하는 내용의 사업 비중이 5개 과제 중 3개 과제에 해당하여 산업계 종사자 및 퇴직자들의 교육 관련 생산성 제고와 활용보다는 고용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구직자와 산업계의 기술수요 충족 위주라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이 화두인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치중할 필요가 인정되는 측면은 있음
- 그러나 고용시장 신규 진입자의 석·박사 과정에 산업계의 필요를 반영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피고용자들이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며 적절하게 재배치되는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아헨공대는 향후 80만m² 부지에 19개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내 및 다국적 기술 기반 기업 대상 R&D공간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로 꼽힘¹⁾
 - 클러스터는 학교 외 제휴 기관, 기술 기반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주하여, 학생들에게는 산업체 기반 연구·교육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한 공간이 되고 있음
 - 아헨공대 재직 교수의 대부분이 산업체 출신으로 구성되어 학교 교육과정과 실제 기업간 시각차를 좁히는 기제가 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전은경	02) 788-4596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	-	044) 203-4219

1) 이은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인력, 독일은 어떻게 양성하는가 -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사례 분석」, 『Trade Brief』 No.20, 2014년 3월 21일.



창의적 R&D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점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창의적 R&D여건 조성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지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 과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시정 및 처리결과
 - 「성과제고를 위한 '17년 산업 R&D 제도 개선방안」 수립·발표('16.12.1) 및 관련 규정 개정작업 완료('16.12.13)
 - 자유공모형 신규과제의 비중을 ('13) 33% → ('15) 49% → ('17) 60% 으로 확대하고, 정부과제 기획 시, 기획 자문그룹을 공식화하여 개방성 강화하는 등 민간의 주도성을 확대함
 - 또한 경쟁형·신기술탐색형 R&D 활성화, 원천기술 확보 및 수출유망품목 R&D 집중지원 등 도전성·창의성을 강화하고자 함
 - 문제과제 예방 중심 R&D 절차·규정을 보다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R&D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소인 연구자 역량에 대한 체계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자/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연구자/평가자의 책임성을 강화함



○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연차평가폐지, 일괄협약 도입,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DB 구축 등) 실시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을 마련했는가 여부

- 「성과제고를 위한 '17년 산업 R&D 제도 개선방안」 수립·발표('16.12.1) 및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함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제도 개선방안」를 마련, 기존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등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에 따라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을 증가시켰으며 연구자/평가자의 이력관리제를 도입한 후 이러한 이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 점은 R&D 현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특별히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는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R&D 환경 조성을 위해 R&D과제 수행결과 ‘혁신성과’ 창출 시 누적된 성실수행 건수를 말소하여 창의적 도전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했음
-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 평가자의 평가 능력도 제고될 필요가 있는데 평가자의 연구 분야·내용·실적 및 과제평가 참여 등을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산업부는 동 개선방안이 실제 R&D 성과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동 개선방안의 효율적 이행에 힘써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전은경	02) 788-4596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기술개발과	-	044) 203-4520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문제 해결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정감사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시정 및 처리결과

- 원전내 저장시설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16.7.25)과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2016.11.2)에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합당한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저장시설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이행: 2016년 7월)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함 (이행: 2016년 11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소 수조의 포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확보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수단이 아님

3. 개선방안

- 수조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육상에서 중간저장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므로 기술의 보완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유재국	02) 788-4594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자력환경과	-	044) 203-5344

■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 수립**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정감사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규정대로 매년 수립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시정 및 처리결과
 - 2016년도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완료
 - 주요내용: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시행,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도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¹⁾ 수립 및 공고 완료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²⁾에 부합되는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지능형 전력망 기술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해외 수출용 기술이며, 대학이나 섬과 같은 조그만 규모의 전력망 설계 기술(마이크로그리드)임
 -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FR BESS), 전기차 충전기, 초전도케이블 등이 2016년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에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에너지이용효율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력 시스템에서의 역할 파악이 어려움

3. 개선방안

□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과 지능형 전력망 기술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유재국	02) 788-4594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	전력진흥과	-	044) 203-5266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 경인 관제 센터 운영 여부 재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정감사대상기관: 한국전력거래소
- 경인전력관제센터 운영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시정 및 처리결과
 - 관련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중('16.下~'17.下)
 - 정부, 거래소, 전력계통·재난·법률·소비자분야 등 전문가 위원 8명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전력, 재난대응, 소비자 편익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여부를 재검토할 계획

2.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원 수감을 하였으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조치 중임
 - 감사원은 경인급전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경인급전소는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하였음 (불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016년 6월 감사원에서는 경인급전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무용론을 지적한 바 있음
 - 수도권에 대한 전력관제 능력 저하 여부에 대해서는 관제 여부는 거리와는 무관하며, 나주의 EMS(전력계통운법시스템) 및 SCADA(원격감시제어시스템)로 감시가 충분하다고 지적함
 - 전력거래소는 제2의 후비전력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154kV의 선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역할이 중복되므로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함
 - 전력거래소가 내세운 수도권에 건설 필요성도 전력 수요 증가와 업무량 증가의 관계가 급전시설을 신설할만큼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함
 - 전력거래소는 수도권을 분리 관제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감사원은 전력망은 통합관제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함
 - 경인급전소는 이미 가동 중이므로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가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경인급전소를 가동할 경우 연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함

3. 개선방안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및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경인급 전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유재국	02) 788-4594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	전력산업과	-	044) 203-5244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송변전 시설 투자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정감사대상기관: 한국전력공사
-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변전소·선로 등 설비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시정·처리결과
 -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 정부 정책에 따라 무제한 접속 진행 중
 - 2017.6월까지 신재생 수요가 많아 접속 지연되는 8개소에 우선적으로 변압기 증설 완료 예정[고흥 등 전국 8개소 (총 200MW 추가 접속 가능)]
 - 중·대규모 신재생
 - 신안지역 G 플랫폼(변전소) 및 송전선로 신설(2022.10.)
- 향후 추진계획
 -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 향후 접수내역을 반영하여 설비투자 예정
 - 중·대규모 신재생
 - 계통연계 확대 위하여 변전소, 송전선로 용량증대 및 설비신설을 통한 인프라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단기] 변압기 증설, 대용량 전선 교체 시행('17년)
 - [장기] G-플랫폼(변전소) 및 송전선로 신설('22년)



- 한전 설비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용규정 및 관련 기준 개정 병행 추진('17년)
 - 신뢰도 기준, 발전사업 허가기준 등
 - 신재생에 한하여 한전의 공용망 보강 제도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접속 (이행)
- 1MW 이상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전력의 전압과 송전선의 전압이 일치되어야 가능함
 -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향후 망 접속 비용이 커지면서 이의 수준을 무한히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망 접속 한계 용량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유재국	02) 788-4594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	전력산업과	-	044) 203-5244



■ 월성 1호기의 폐로 요구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정감사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설계수명이 지났고 다른 원전보다 지진에 취약한 월성 1호기의 폐로를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시정 및 처리결과
 -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으며 원자력안전위원 주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에 충분한 대응능력 보유 확인('15.2월)
 - 내진성능은 가동년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핵심설비 교체 및 설비보강 여부 등을 종합검토할 필요
 - 가동 중 원전은 18개월마다 계획예방 정비 시 상당수의 기기·부품을 교체하며 10년마다 IAEA 안전기준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경년열화, 물리적 상태 등 점검을 통해 내진성능 평가·보완 실시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여부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부와 경제성, 수용성,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원안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 정부에서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던 날 월성1호기의 폐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음
 - 향후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 문제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월성 1호기 등의 폐쇄에 따른 전력수급에의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월성 1 호기는 2015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2017년 위원회 의결이 아닌 동 위원회의 과장 전결로 운영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절차상의 문제로 수명연장허가 취소를 받은 바 있음
- 위의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유재국	02) 788-4594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자력산업정책과	-	044) 203-5322



■ 폐기물 에너지 비중 축소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원 중 폐기물 에너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9.)에 따라, 장기적으로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고, 태양광·풍력 비중을 확대할 계획
 - 기본계획('14.9)상 원별비중(%, '12→'35) : 폐기물(68.4→29.2), 풍력(2.2→18.2), 태양광(2.7→14.1)
 - 이를 위해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16.11.)을 발표
 - 태양광·풍력비중(%) : ('15) 32.5 → ('25) 72
 - 장기적으로 SRF(Solid Refuse Fuel) 등 비유기성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여부
 - 중장기적 목표 수립(이행)
-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제시 여부
 -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장기과제로 검토 (계획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고, 태양광·풍력 비중 확대를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각 에너지원간 상대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은 폐기물 에너지 비중을 직접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장기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조치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수립된 중장기적 목표의 이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4. 9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와 함께 비재생 폐기물과 폐가스 등을 포함한 폐기물에너지의 비중이 2013년 2.33%, 2014년 2.44%, 2015년 2.8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구분근	02) 788-4598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실	신재생에너지과	-	044) 201-5160

■ 석탄·우드펠릿 혼소(전소)발전 제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발전사의 석탄·우드펠릿 혼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의 석탄·우드펠릿 혼소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드펠릿 혼소 방식을 지양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의무 이행을 확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RPS(공급의무화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우드펠릿을 통한 의무이행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권고 중(30% 이내)
 - 태양광, 풍력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하여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도입,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가중치 우대 등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 발표(11.30.)
 - 우드펠릿 혼소발전 등에 대하여 가중치 적정성 검토 추진
 - 현행 가중치(우드펠릿 전소 1.0, 혼소 1.0)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삼정 KPMG '16.4.~'17.3.)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발전사의 석탄·우드펠릿 혼소 제한 여부

- 석탄·우드펠릿 혼소발전 등에 대하여 가중치 적정성 연구용역 진행 및 혼소 비중을 30% 이내로 권고 중 (이행 중)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의무이행 확대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사의 의무이행을 위한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사의 의무이행 제한 조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방식 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현재 전소·혼소발전을 비롯한 전체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당 초 2017. 3월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진행 중) 진행 중에 있음
 -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조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도 핵심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원 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우드펠릿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3.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핵심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수단 도입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2012년 RPS 시행 이후 바이오부문이 재생에너지 전체 생산량의 2013년 58%, 2014년 72%, 2015년 73%로 급증하였음
 - 이는 발전사들의 우드펠릿을 통한 의무이행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단위 : ktoe)

에너지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p
재생에너지	1,007	430	758	1,079	1,811	2,654	3,920	4,071
수력	547	237	345	316	317	369	237	196
지열	-	-	-	3	33	87	108	117
태양광	-	-	-	1	66	138	220	223
태양열	10	22	42	35	29	28	28	29
해양	-	-	-	-	-	42	42	45
풍력	-	-	1	11	70	99	99	106
도시폐기물(재생)	4	18	109	303	417	347	353	368
바이오	446	153	261	410	879	1,544	2,833	2,987

주) p: 추정치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구본근	02) 788-4598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실	신재생에너지과	-	044) 201-5160

중소벤처기업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청에게 생계형 중소자영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했을 때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적합업종(생계형 포함) 법제화 시 통상규범 위반 여부, 통상마찰 제기 가능성을 낮추면서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방안, 기타 중소기업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함
-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동반성장 투자재원과 관련하여 현재 5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기금사용목적 폐지함



- 연구용역 후 공청회, 부처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2017년 7월에 발표하였는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먼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5년 주기로 해제를 심의하겠다는 것임
 -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중에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등을 생계형 업종의 예로 들고 있음
 -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업 예산을 활용하여 협업화와 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임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 적합업종 관련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대기업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3년 동안(3년 연장 가능) 대기업에게 확장이나 진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임
- 또한 권고 기간(3년 + 3년)이 만료되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합업종 관련 요구를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미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박충렬	02) 788-4591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자원과	-	042) 481-1634

■ 중소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적극 운영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게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201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후 의무고발을 2건 요청하였음
 - 2013년 7월 제도 도입 후 접수된 사건 210건 중 152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고, 2017년 1월 현재 58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는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4건에 대해 심의하고 11건을 고발 요청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현재 진행 중인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반기별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중소기업청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228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81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47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들어서 6월까지 모두 29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되어 있음
 - 법 위반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찰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 2013년 7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중소기업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임
- 중소기업청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라는 것임



-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는 후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접수된 사건 29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건을 고발 요청하였으므로, 요구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접수된 사건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대하여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부처 · 청	실 · 국	관 · 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박종렬	02) 788-4591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거래환경개선과	-	042) 481-3966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음
 - 이 센터를 통해 지원 받은 업체는 매출이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음
 - 지역 소공인들에게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결과보고서에서 2016년 11월에 5개를 추가 설치하여, 모두 36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소공인 밀집지역의 다품종소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2016년 11월 5개 센터가 추가 설치되었으나, 2017년 들어 센터 하나가 운영을 포기하였고, 센터 평가 결과 3곳이 폐쇄되어 7월 현재 32곳이 운영되고 있음
- 센터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2016년 142억 5,000만 원에서 2017년 103억 9,500만 원으로 줄어듦(38억 5,500만 원 감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017년 7월 현재 소공인집적지는 전국적으로 696개가 존재하며, 여기에 8만 1,000개의 소공인이 밀집해 있고, 종사자 수는 24만 4천 명에 달하는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전체의 4.6%에 지나지 않은 32곳에만 설치되어 있음
 - 더구나 30개 이상의 소공인집적지가 존재하는 경남, 경북, 전남 등에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육 및 컨설팅, 기술인력 양성, 신규 인력 유입, 협업,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2017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었음
-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 · 청	실 · 국	관 · 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박충렬	02) 788-4591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혁신과	-	042) 481-163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에서 공단의 직접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직접대출 운용 규모를 2016년 4,650억 원에서 2017년 4,75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직접대출 운영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프라를 보완하여 직접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2017년 규모는 모두 1조 6,250억 원인데, 이 중 4,750억 원이 직접대출로 전체의 29.2%에 지나지 않음
- 직접대출 규모는 2016년에 비해 10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년 신규로 정책자금으로 배정된 수출특별자금 100억 원이 직접대출로 대출되었기 때문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규모가 2017년에 100억 원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신설된 정책자금으로 인한 것이지 대리대출을 직접대출로 전환한 것은 아님



- 직접대출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보완이나 금융전문인력 확대와 같은 조치는 비용 문제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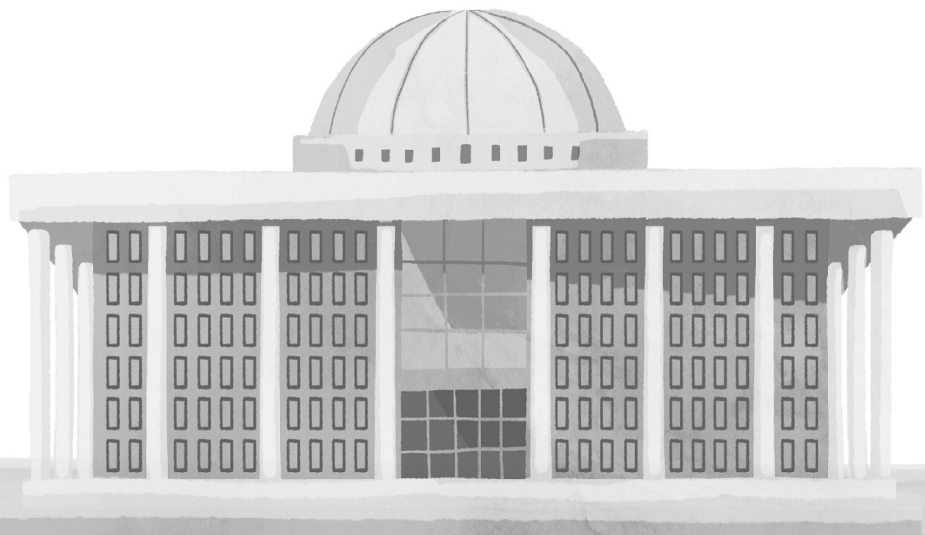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됨
 - 성장기반자금은 소공인특화자금과 성장촉진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수출·고용안정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에서 공단이 직접대출하는 자금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중 시설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 수출·고용안정자금 중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등임
- 대출금리는 직접대출/대리대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따라서 직접대출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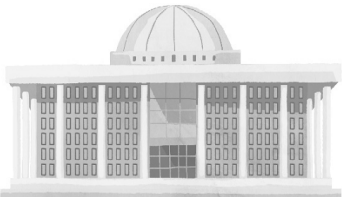
	부처 · 청	실 · 국	관 · 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박충렬	02) 788-4591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	-	042) 481-4408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농림축산식품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보완 및 지원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및 지원강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시정·처리결과

- **종합적·체계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2016.11.)**
 - 수요자 중심의 정보·교육 서비스 제공, 주거·자금 지원 확대,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추진
 - ※ 창업자금 확대 : ('16) 1,500억 원 → ('17) 2,000억 원
 - ※ 주택자금 지원 한도 상향 : ('16) 50백만 원 → ('17) 75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수립 여부**

- 2017년 귀농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17.3.)
 - 정보·교육 지원 체계 정비,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 방안 마련
 - 2017년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세부추진계획 마련·추진('17.1~)
 - ※ 중앙·지자체·전문가·민간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귀농귀촌정책협의회) 구성·운영('17.1~)
 - ※ 귀농귀촌 유형별·계층별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강의 개발, 귀농귀촌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수립 여부(이행)**

-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수립, 발표함

■ **2017년 귀농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부**

- 2017년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행)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구입 자금 한도를 상향('16: 5천만 원 → '17: 7.5천만 원) 지원 하고, 융자금 규모도 당초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추경 반영)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이행)
- 중앙·지자체·전문가·민간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귀농귀촌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이행 중)
- 귀농귀촌 유형별·계층별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강의 개발, 귀농귀촌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 추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 11월에 수립한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2015년에 제정, 공포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3월 “2017년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교육 지원체계 정비,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 귀농귀촌정책협의회 구성, 귀농귀촌 유형별·



- 계층별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강의 개발,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추진계획’을 이행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민관거버넌스 구축: 귀농귀촌종합센터 내 협업통합사무소 및 지자체관 운영, 2017년 8월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지자체 워크숍 개최 예정
- 귀농귀촌정책협의회 구성: 2017년 1월 중앙협의회 구성하고, 8월말 제1차 중앙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 귀농귀촌 유형별, 계층별 교육과정 개발: 2017년 9월까지 교육체계개편 방안 수립하고, 11월까지 후속 지침 및 매뉴얼 개발 예정
- 온라인 강의 개발: 2017년 11월까지 귀농귀촌 온라인 강의 콘텐츠 리뉴얼 및 신규 개발
-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11월까지 개발완료 예정
- 2017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서 농업 창업자금 확대와 주택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농기계 조작, 각종 농작업 등에 대한 실습이 더 중요하다는 귀농자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각종 교육과정에서 실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자 간에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귀농귀촌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귀농귀촌정책이 귀농귀촌의 양적 확대에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자가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농촌사회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배민식	02) 788-4493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044) 201-1519



■ 사료용 쌀 공급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사료용 쌀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묵은쌀(구곡)의 사료용 공급을 확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시정·처리결과

- 2017년 사료용 쌀 공급 확대
 - 배합사료업체 대상 사료용 쌀 수요조사 실시 및 공급 실시(2017.1~)
 - ※ 2016년 9만 톤(쌀 기준) → 2017년 47만 톤

향후 추진계획

- 사료용 공급 물량 확대에 따라 사료용 외 타 용도로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추진(2017.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관련 협회 등이 「사료용 정부관리양곡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사료용 쌀 공급 확대 여부(이행 중)
- 사료용 공급 물량 확대에 따라 사료용 외 타 용도로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추진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쌀 공급을 2017년에 47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2017.2.9.)하였고, 1월부터 12월까지 사료업체의 월별 인수계획에 따라 물량 전량을 공급할 계획이므로 사료용 쌀 공급 확대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료용 쌀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쇄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및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용 쌀 사용업체에 대해 사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사후건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부정유통 사후관리 추진 현황(1분기): 위반 내역 없음
 - 사후관리: 정부(국립농산물관리원)·지자체 분기 1회, 단체 월 1회
 - 관련단체(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46개소 점검
 - 2분기 실적은 현재 취합 중에 있음(농림축산식품부)

3. 개선방안

-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고미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료용 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
 - 수입 사료곡물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수요에 적합한 다수확품종 개발, 생산·가공·소비를 원만하게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공급 확보, 가공설비 재정비, 주식용 쌀로의 둔갑 방지, 축종별 사료급여 기술 개발 등의 해결이 시급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배민식	02) 788-4493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	044) 201-1815



■ 해외농업개발사업 문제점 조사 및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반입량 저조, 용자기업 조기 상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을 검토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식량안보차원에서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반입량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p>〈시정·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기업 선정 시 국내반입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마련(2016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사업을 통한 국내반입량 확대를 위해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국내반입 실적에 따라 3~5점 가점 부여 ■ 해외농업 용자기업 현지조사 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2016.10.11., 정인화, 박완주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4국 8개 기업(2016.10~12월) ※ 2017년: 3국 6개 기업(2017.3~4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2017.12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용자기업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지 물류여건, 국내 곡물반입 가능성 등을 고려한 용자기업 선정 및 용자 규모결정 방안 등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p>〈시정·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물량의 국내반입이 어려운 주요 이유는 아직 진출기업이 영농정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p>착 초기단계라 품질·가격 경쟁력이 낮고, 수출 운송단가를 맞출만큼 생산이 규모화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2015.7), 해외농업개발협회 및 현지 영농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곡물 국내반입 확대를 위한 수입관리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할당관세 수입추천기판에 해외농업개발협회를 포함(2013.1.)하여 해외농업개발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 부여 - 식용콩에 대해 수입권 공매방식을 도입(2013년 3월)하여 해외농업개발 기업과 국내 실수요자의 연계를 강화 - 식약처와 협의하여 해외농업개발 곡물반입이 용이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계규정 개정(2016.2)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개발 곡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물량 및 할당관세 증량 등을 통한 국내반입 확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물량배정 확대(콩 1,500톤 → 5,000톤, 옥수수 5,000톤 → 10,000톤) ▪ 단기간에 국내 곡물반입에 유리한 유통형 해외곡물사업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대상자 선정 시 곡물반입에 대한 가점 및 인센티브 강화 ▪ 러시아 연해주를 중점적으로 우선 육성, 성공모델 창출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기업 선정 시 국내반입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여부(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사업을 통한 국내반입량 확대를 위해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국내반입 실적에 따라 3~5점 가점 부여 ▪ 해외농업 용자기업 현지조사 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여부(이행) ▪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2017.12월 예정) 여부(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용자기업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지 물류여건 국내 곡물반입 가능성 등을 고려한 용자기업 선정 및 용자 규모결정 방안 등 포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2015.7.), 해외농업개발협회 및 현지 영농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강화 여부(이행) ▪ 곡물 국내반입 확대를 위한 수입관리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시행 여부(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할당관세 수입추천기관에 해외농업개발협회를 포함(2013.1.)하여 해외농업개발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 부여 - 식용콩에 대해 수입권 공매방식을 도입(2013년 3월)하여 해외농업개발 기업과 국내 실수요자의 연계를 강화 - 식약처와 협의하여 해외농업개발 곡물반입이 용이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계규정 개정 ▪ 해외농업개발 곡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물량 및 할당관세 증량 등을 통한 국내반입 확대 여부(이행 중) ▪ 단기간에 국내 곡물반입에 유리한 유통형 해외곡물사업 우선지원 여부(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대상자 선정 시 곡물반입에 대한 가점 및 인센티브 강화 ▪ 러시아 연해주를 중점적으로 우선 육성, 성공모델 창출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 여부(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용자기업 선정 시 국내반입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 해외농업개발협회 및 현지 영농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강화, 곡물 국내반입 확대를 위한 수입관리제도를 보완하는 등은 이미 지난 해 국정감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은 2017년 12월 예정으로 작업 중에 있으므로 진행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 곡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물량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한 국내반입을 확대하는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러시아 연해주를 중점지역으로 우선 육성, 성공모델 창출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한·러 연해주농업개발 공동연구가 2016~2017년에 수행 중이므로 요구사항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2009년부터 추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외농업을 개발하여 비상시 콩, 옥수수, 밀과 같은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임
- 그런데 용자를 받은 품목이 국내에 필요한 밀,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보다는 카사바, 오일팜으로 집중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가 감소하고 있으며, 용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제대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을 대두·밀·옥수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해외농산물 개발에 둘 것인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배민식	02) 788-4493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044) 201-2031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해외농업개발부	-	061) 338-6523

고령농 소득보장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고령농의 소득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필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시정·처리결과

■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화 계획 마련

- 농지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2017년 업무보고에 명시
- 농지연금: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 확대 유도(2016년 6,783건 → 2017년 2만 건)
- 국민연금: 고령농 등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연금지원 확대(「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업무계획 이행점검 강화

-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창출에 만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화 계획 마련 여부(이행)

- 농지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2017년 업무보고에 명시

■ 2017년 업무계획 이행점검 강화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농지연금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고령농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고령농은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 전문가이므로 고령농이 지속적으로 농작업을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귀농자들에게 농업기술을 직접 전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배민식	02) 788-4493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044) 201-1519

저소득 빈곤층 양곡 지원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요확대를 위한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을 확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시정·처리결과

- 복지용 쌀 판매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6.11~2017.1)



- 복지용 쌀 수용자별 만족도·개선방안 등 설문조사
- 2017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용 쌀 공급가격 할인(농식품부 20%, 복지부 50~90%)

☑ 향후 추진계획

-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 추진
 - 소포장(5kg) 추가, 포장·배송방식 개선 등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용 쌀 판매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6.11.~2017.1.) 여부(이행)
- 2017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용 쌀 공급가격 할인 여부(이행)
-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 추진 여부(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복지용 쌀 판매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고서가 완료되어 국정감사 요구 사항의 일부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출 보고서명: 『정부관리양곡 판매 확대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2017.1.
[<http://www.prism.go.kr>(온-나라 정책연구)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2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에서 복지용 쌀의 수급권자 대상 공급 가격 할인폭 확대, 소포장(5kg)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의 수요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복지용 쌀의 수급권자 대상 공급 가격 할인폭 확대는 실시 중에 있어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포장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 공급체계 개선 추진은 현재(2017.7.17.) 실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미이행)



3. 개선방안

- 복지용 쌀 자체에 대해 수급대상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복지용 쌀이 일반미와 품질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맛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므로 복지용 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복지용 쌀 공급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배민식	02) 788-4493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	044) 201-1815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제고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지속 추진



- 무허가 축사 추진방안 보고(‘16.10.11.):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추진
- 무허가 축사 관련 중앙부처 TF 운영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실적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중앙부처 TF 및 시·도 영상회의 추진(수시)
 - 중앙단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반 운영: 지자체(시·군) 점검 및 농가 상담(매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 여부
 -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추진 중(이행 중)
 - 중앙부처 TF 운영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실적 점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육규모별 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적법화하는 방안은 축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임¹⁾
- 또한 지자체별 적법화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는데,²⁾ 이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한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7년 5월 31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은 전체 적법화 대상 60,190

1) 1단계(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은 사육규모 소 500㎡이상(7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으로 총 20,384호임. 2단계(2019년 3월 24일까지) 대상은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 2천 수)~1,000㎡미만(2만 수)으로 총 4,312호임. 3단계(2024년 3월 24일) 대상은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 수)의 소규모 농가 35,494호임(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2016.10.16.)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2016.10.16.



호 중 약 4.5%(약 2,700호)만이 적법화가 완료되어 실질적인 적법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까지임을 고려할 때, 적법화 실적은 매우 미진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주요 원인은 이행강제금 및 측량비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축산농가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축사 제한거리 기준 강화,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의 적법화 의지 부족 등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법화 실적이 전국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축협, 축종별 조합, 지역 건축사회 등과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³⁾

3. 개선방안

- 지난 1992년에도 정부는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축사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해 양성화한 사례⁴⁾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의 무허가 축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1992년 양성화 이후 다시 농가의 축사 규모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성화 조치가 무허가 축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이에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무허가 축사 문제는 축산업 허가제 정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둘째, 현재의 축사 건폐율(60%)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⁵⁾
 - 셋째, 이번 대책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행강제금 추가 경감, 측량 수수료 경비 경감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자원화시설을

3) 용인시의 경우 2017년 5월 31일 기준 전체 적법화 대상 축사 409개소 중 약 51.1%인 209개 축사가 적법화가 완료되었음

4) 당시 무허가 축사 현황(1992년 기준)은 약 5만 1,000호로 추정하였고, 추진에 따른 관련 조치사항으로 1) 축사설계비 경감,

2)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등 경감, 3)위 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시 형벌은 최대한 정상 참작하도록 하였다(내무부·농림수산부 등 6개 부처 공동, 『무허가축사 처리지침』, 1992. 9).

5) 현재 축종(畜種)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는데, FTA에 따른 주요대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건폐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확충하여 퇴·액비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분뇨를 자연순환농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유제범	02) 788-4588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	044) 201-23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1년간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훼 등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관계기관·단체 합동 T/F를 구성하여 품목별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품목별 소비 촉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농식품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하였음(‘16.8.2.)
- 「부정청탁금지법」 대비 농축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하였음(‘17.1.10.)
 - 품목별(화훼, 외식, 한우, 과수, 인삼) 특성에 맞는 新수요 창출,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설 명절 기간(‘17.1월) 동안 대형유통업체 등 품목별·가격대별 소비 추이를 분석 중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농축산물 분야 소비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화훼, 과수, 외식산업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17.3월 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농식품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구성(이행)
- 「부정청탁금지법」 대비 농축산물 소비촉진 대책(이행)
- 설 명절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 등 품목별·가격대별 소비 추이를 분석(이행)
-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이행 중)
 - 화훼, 과수, 외식산업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농식품분야의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하여 품목별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청탁금지법」 대비 농축산물 품목별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어 이 2가지 사항은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설 명절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 등 품목별·가격대별 소비 추이 분석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여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소비 추이 분석 결과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17년 설 명절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하였고, 특히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대비 각각 24.4%와 31.0%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추가 보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품목별로 이행 중에 있어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화훼분야는 소비감소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화훼소비 생활화 추진 계획'을 마련함('17.2.)
 - 화훼·과수 분야 발전대책은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여부, 추석 명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임('17년 하반기 발표 예정)
 - 외식분야의 발전대책은 기 수립·시행 중임
-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현황에 대한 향후 1년간 정확한 통계 파악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현재 통계 수집 단계로 추후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현재 국회에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시키자는 것 혹은 농어민들이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 설정 등이 그 주요내용임
- 하지만 발의 개정안들이 현재 계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농식품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 특성들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김태우	02) 788-4597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 201-2215



한-칠레 FTA 재협상 시 과수분야 피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한-칠레 FTA 재협상 시 과수분야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한-칠레 FTA 재협상 시 과수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DDA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 협상 대비 기초 자료 조사·분석을 실시함
 - 대 칠레 수출입 동향, 기체결 FTA 수준, 기존 연구 결과 등을 수집함
 - 관계 부처 협의 시 농업계의 우려와 피해 최소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것임
- 협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품목 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협상 시 농업분야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협상 대비 기초 자료 조사·분석을 실시함(이행 중)
 - 대 칠레 수출입 동향, 기체결 FTA 수준, 기존 연구 결과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협상에 대비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이행 중)
- 협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품목 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이행 중)
 - 현재 한·칠레 FTA 개선 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이행 중)
 - 연구용역 완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임(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한·칠레 FTA 재협상에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품목 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추진 계획은 연구용역 완료 후에 이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임

3. 개선방안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FTA로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재협상 시 최초의 FTA 재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루어질 협상들에 대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재협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김태우	02) 788-4597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	044) 201-2064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사업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마사회	기부금 등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마사회	사회공헌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것

2)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마사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니즈(needs)파악을 통한 지역상생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 기부금 총 156억 원 중 72억 원(약 46%)을 장외발매소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행
 -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의회를 통한 실질적 숙원사업 시행(총 22개 사업)
 - 청소년 학습권 침해 우려의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교육기회	글로벌 아카데미	초, 중학생 500명 대상 온·오프라인 영어 교육지원
	렛츠런 멘토링	멘토(대학원생·대학생) 멘티(중·고생) 매칭 300쌍 활동 지원
교육환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정비: 3개소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도서지원	

- 한국마사회는 사회공헌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한 전담부서(나눔사업단) 신설함('16.11.9.)
 - 주요업무는 업(業) 연계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승마힐링(재활승마+힐링승마) 확산, 대표 사회공헌사업 추가 발굴·시행임
-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시행하기로 함(연중)
- 업(業) 연계성이 높은 승마힐링사업 확대·시행하기로 함: ('16) 4개소 → ('17) 7개소 운영
- 신규 대표 사회공헌사업 추가 발굴·시행('17. 하반기): 사업장 인근지역 및 농어촌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방안 마련 여부
 - 지역주민 니즈(needs)파악을 통한 지역상생형 사회공헌활동 추진함(이행 중)
- 사회공헌 사업 축소 또는 폐지 실태 시정 여부
 - 업(業) 연계성이 높은 승마힐링사업 확대·시행하기로 함(이행 중)
 - 사회공헌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한 전담부서(나눔사업단) 신설함(이행)
 - 기부금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함(이행 중)



2)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사회공헌 사업 전담부서 신설, 지역상생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업(業) 연계성이 높은 사회공헌 사업 확대, 기부금 지원 규모의 지속적 확대 등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한국마사회 자체 사회공헌 사업의 지역친화도 조사 시행 결과, '15년 대비 '16년의 지역친화도는 약 24% 상승함(인근 거주주민 12,000명 대상 조사)
 - 그리고 기부금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업(業) 연관 대표사업 연계성 부족 및 사회공헌 홍보 부족 등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부금 지원실적: 2013년 151억 원 → 2014년 149억 원 → 2015년 156억 원 → 2016년 156억 원
 - 사회공헌 규모는 당기순이익(약 2,356억원 추정) 대비 약 6.6% 수준으로 국내 200대 기업평균 3.76% 2배 수준이며, 제세금 포함 국내 3위(1조 4천억 원): 삼성전자 3조 4천억 원, 포스코 1조 7천억 원

3. 개선방안

- 경마수익 중 제세금로 납입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비중(60% 이상)을 포함할 경우 국내 전체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공헌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수익에 대한 조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한국마사회의 경마수익금 중 다른 기금의 출연 등 사회공헌을 위한 지출 규모의 경우 매출액 대비 그 비중은 국내 다른 사행산업의 경우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¹⁾
-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2015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가 기금 등에 출연하는 총액은 1,847억 원으로 동 연도 총매출액 약 7조 7,322억 원의 약 2.4%로, 이는 복권 45.7%, 체육진흥투표권 31.9%, 카지노업 15.5%, 경정 9.7%, 경륜 3.2%에 비해 낮은 수준임. 순매출액 기준으로도 경마는 8.9%로 복권 93.9%, 체육진흥투표권 80.2%, 카지노업 15.5%, 경륜 11.6%, 경정 9.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²⁾
- 한편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산발전기금 출연비율을 현행 70%에서 상향 조정하여 축산발전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³⁾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유제범	02) 788-4588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	044) 201-2325
	한국마사회	대외협력부	-	-	02) 6006-3612

■ 승마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를 위해 민간 승마시설 운영 개선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

2) 「경륜·경정법」 제8조제1항제3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5호와 같이 「한국마사회법」 제36조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가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의 주요 자원인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그 주요 자원의 하나인 수입축산물의 축산물수입이익납입금을 제외하고는 현재 자원 조성의 약 70%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에 의존하고 있음



2)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마사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경영수지 개선) 승마수요 확대 사업 추진: 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 학생승마체험 38,620명, 유소년 승마단 21개, 승마시설 설치 14개소, 승마시설 개보수 10개소
 - (시설·제도 개선)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 기승능력인증제 도입(6월), 승마전용 보험 상품 개발(12월), 협력 승마시설 지정(12월)
 - 기승능력 인증 285명, 협력승마시설 31개소
 - (승마정보 및 승마교육) 승마시설 정보 제공 확대 및 승마교육 상향 표준화: 위치기반 승마정보 검색 모바일 App 개발·보급(10월), 승마시설 운영·교육 컨설팅 지원, 승마교육 표준 매뉴얼 개발(11월)
 - 운영 컨설팅 63건, 교육 컨설팅 7회
- 한국마사회는 승마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정부의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승마시설 운영 개선 방안 확대 반영 및 추진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및 승마시설 설치 및 운영 모델 개발, 농촌관광 승마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기승능력 인증등급·인증시설 확대, 승마체험자 전원 보험가입 지원 확대 추진
 - 승마시설 경영·교육 컨설팅 확대, 승마홍보·강습 동영상 제작·보급 등 추진
 - ‘승마시설 수지분석 연구용역’을 통한 운영개선 방안 점검·환류(‘17.12. 완료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승마활성화를 위한 민간 승마시설 운영 개선 등 관련 정책 강화 여부

-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승마수요 확대 사업 추진(이행 중)
-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이행 중)
- 승마정보 및 승마교육 확대 및 표준화(이행 중)

2)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한국마사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승마수요 확대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승마체험 지원, 승마시설 정보 제공 및 승마교육 확대 등의 조치를 하였음
 - 2017년 기준 승마시설 수, 승마인구 수 등 말산업 지표에 대한 자료가 없어 2016년 국정감사 이후 승마활성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움
 - 그러나 2015년 대비 2016년의 승마시설수는 457개소에서 479개소로 22개소(약 4.8%)가 증가했으며, 동기간에 승마인구수는 873,380명에서 938,422명으로 65,042명(약 7.8%) 증가하여 국내 승마의 저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승마전용 보험상품 개발, 기승능력인증제, 협력 승마시설 지정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승마인구수 및 승마시설수의 증가와 함께 승마안전사고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⁴⁾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국마사회는 NH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하여 2016년 12월에 승마체험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인 ‘레저상해보험(승마 플랜)’ 개발하였는데, 2017년 4월말 기준 22건의 보험가입이 있었음

3. 개선방안

□ 한국마사회에서는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미비한 점이 있는데, 향후 몇 가지 개선

4)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승마시설 1개소 당 연평균 승마사고 발생건수는 2.11회였음(강기춘, 「승마시설 사고발생 예방 개선방안 및 보험활성화 연구」,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2015.3.18., p.24.). 이를 전체 승마시설수에 대비하면 2013년에 약 698건의 승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마사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말산업 실태 및 통계조사’에 승마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말산업 육성법」상에 승마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점검 실시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하여 ‘승마시설인증제’를 도입하고, 승마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승마활성화와 관련하여 승마시설수, 승마이용자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 여가활동으로서 승마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승마시설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즉 승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국민들의 승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⁵⁾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유제범	02) 788-4588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	044) 201-2325
	한국마사회	대외협력부	-	-	02) 6006-3612

5)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정기승마인구수의 경우 2016년 기준 서울은 25명으로 인근 수도권인 인천 1,207명, 경기 15,431명에 비해 매우 낮고, 경북 7,160명, 경남 5,094명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전체 승마시설수 479개소 중 경기 지역에 119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마에 대한 접근성이 승마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해양수산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외국인 어선원을 포함한 외국인 선원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 이탈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이탈률을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 관련 선불리 송출국가를 확대하는 것보다 외국선원 도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
해양수산부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도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 선원 이탈 방지대책에 대하여 논의함('16.5.)
 - 선주협회·수협 등에 외국인 선원 송출 국가별 이탈률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선원 도입 국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공지 완료함('17.1.)



- 20톤 미만 어선원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감독의 일원화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16.9~'17.2.)하고 이탈률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동시에 실시함
 - 이탈률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어업 경력자 우선 선발, 승선체험 교육 도입, 도입국가 다변화 등을 시행함('17.1.)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선원고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임('17.下 /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사항 및 현황 관리를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 구축 예정임('17.12.)
- 선원 송출국 정부에서 외국인 선원 이탈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예정임('17.12.)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선원 이탈 현황 파악과 이탈률을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여부**
 -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관련 대책을 논의함(이행 중)
 -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 및 선원 송출국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중(이행 중)
 - 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 도입 등 제도개선 시행(이행 중)
- **외국인 선원 이탈 방지를 위한 송출국가 확대 재검토 여부**
 - 선주협회·수협 등 관계기관에 관련 사항 공지 완료(이행)
- **2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을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 마련 여부**
 - 연구용역 실시(이행)
 -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외국인 어선원 이탈률에 대한 공식적인 현황이 없어 정부 대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 수협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 송출국과의 협조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다만 향후 외국인 어선원 이탈률 추세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외국인 어선원 고용 신고 방법에 있어 전자 신고 등이 가능하여 외국인 어선원 근무 및 이탈 현황에 대한 파악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송출국별 어선원의 이탈률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을 제한하거나 송출국별 송출회사에 대한 송출 배정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¹⁾

3. 개선방안

- 외국인 어선원 도입 제도의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직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어선원 이탈률이 외국인선원제에서보다 고용허가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인 어선원 제도의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²⁾
 -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사전 직무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³⁾
- 「선원법」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사업 범위에 20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하여도 현황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어선원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⁴⁾

1) 2016년 12월 총리주제 외국인력심의회에서 외국인 어선원 제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는데, 인력 도입시기 조정, 인력 도입국가 다변화, 이탈률 높은 국가 인원조정, 승선체험 등 교육 추가, 어업 경험자 중심 도입,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음(해양수산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 2017.7.12.)

2) 외국인 어선원 도입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선원제’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 어선원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3년 기준 사업장 이탈률은 ‘외국인선원제’에서는 약 14.5%인데 비해 ‘고용허가제’에서는 약 43.8%에 달함

3)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선원제에 비해 국내 어업 및 승선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고,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한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됨.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생’ 제도로 도입되는 외국인 선원의 이탈률은 약 5%로 국내와 비교해 매우 낮음. 일본의 경우 충분한 사전교육 및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4) 국내 연구해 어선 중 20톤 미만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에서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내 어선원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유제범	02) 788-4588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	044) 200-5466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 200-5743

■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FTA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해양수산부	FTA 피해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어업인이 FTA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비율을 상향함(「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당초) 2021년까지 → (연장) 2025년까지
 - 폐업지원제 시행기간: (당초) 2016년까지 → (연장) 2020년까지
 - 직불금 보전비율 상향: 가격하락분×90% → 가격하락분×95%
 - 2016년도 FTA 피해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8%로 정상 집행함
 - 2016년 (편성예산) 약 68억 2천만 원 / (집행예산) 약 68억 9백만 원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FTA 피해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 여부**

-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직불금 보전비율 상향 조정 등을 실시함(이행)
- 2016년 사업비 집행률 99.8% 달성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협정이행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추가적인 FTA 체결도 고려할 때, 피해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초기에는 관세 감축 폭이 적기 때문에 제도의 발동가능성은 낮고, 관세가 0% 수준으로 철폐되는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개선방안

□ 첫째,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가격기준 90%)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발동요건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하여 품목별로 해당 년도 시장가격이 지난 5개년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발동 기준가격)의 90% 미만이 될 경우, 발동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95%(보전비율)를 직불금으로 지급함
-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치에 따르면, 대부분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율은 10% 미만이고 10% 이상인 품목도 10년차 이상 경과한 경우만 발동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제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은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2014년까지 지원실적



- 이 없었고, 2015년에 처음으로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3개 품목에 대하여 발동됨
- 따라서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인 발동기준을 완화하거나 현행 95%인 보전비율을 WTO 최소허용보조금(1조 4,900억 원)의 한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 둘째, 피해보전직불제 산정에 있어 수입기여도⁶⁾ 반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해보전직불제의 조정계수⁷⁾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직접지불금이 보조총액측정치(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한도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법률에 없음
 - 따라서 정부의 조정계수 산정방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을 동법 제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 것은 모법인 동법 제8조제3항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즉 동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것은 조정계수를 산정 시에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만 위임한 것이지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포함하는 등 그 산정방식을 결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이에 따라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할 것이 아니라 모법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수입기여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현행과 같이 적용할 경우, FTA 체결이라는 정책변화로 발생한 농업인의 피해보전은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현행 ‘피해보전비율(90%)’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업계에서는 기준가격은 90% 또는 100%로, 보전비율은 95% 또는 100%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로 인한 농·수·축산업 부문의 피해대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1년 8월 24일, p.6, p.66)

6)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식에 FTA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월 FTA 이행지원위원회 의결로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나타낸 것임.

7) 산출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조정계수=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8) 「WTO 농업협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보조총액측정치(AMS) 한도는 연간 1조 4,900억 원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	유제범	02) 788-4588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	044) 200-5428

■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항만공사의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의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항만공사를 관리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점검(2016. 11. 7., 장관주재)
 -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⁹⁾(2016. 12. 20. 공포)¹⁰⁾
 - 항만공사별 연간 사채발행 계획 수립 및 해수부 승인(2017. 6.~)
 - 항만공사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사항 등 수시점검

9) 정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

10) 시행일은 2017. 6. 21.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항만공사의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개 항만공사 관리방안 검토 여부
 -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항만공사별 연간 사채발행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승인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항만공사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사항 등 수시점검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항만공사법」을 개정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정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시행 전인 2016년 6월에 이미 제출된 것이므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조치로 보기 어려움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은 2016년 6월 16일로, 2016년도 국정감사 시행 전임
- 또한 ‘항만공사별로 수립한 연간 사채발행 계획에 대한 승인’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항만공사법」 제34조¹¹⁾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해야 할 행정 사항이지, 항만공사의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항만공사 관리방안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움

11) 「항만공사법」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0.>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6. 12. 20.>

④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 항만공사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의 부채 감소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난 2010년 감사원이 구(舊)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항만별로 설립된 항만공사 조직의 통합 방안을 권고한 바 있었는데, 항만공사 조직 통합·재편 등을 통해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봄
 - 각 항만공사별로 공통된 지원업무 조직(인사, 총무, 정보화업무시스템 등)의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강재구	02) 788-4604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 200-5911



■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생태계 악영향에 대비하여 양식장 부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할 것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 오염 발생 원인의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 대책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해양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중임(2016년부터)
 - 어업용 페스티로폼 관리체계구축(2018년 12월 예정) 및 해양미세플라스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임(2020년 예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 개선 대책 등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에게 제공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향후 획득되는 관련 주요자료를 해양수산부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여부**
 - 해양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중임 (이행 중)
 - 어업용 페스티로폼 관리체계구축 및 해양미세플라스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임 (이행 중)
- **미세플라스틱 오염 발생 원인의 철저한 조사 여부**
 -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 개선 대책 등을 해양수산부에게 제공함 (일부 이행)
 - 향후 획득되는 관련 주요자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학술적으로도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으므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연안 오염 문제는 그 발생원에 관련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신규 이슈로서,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정도 및 환경 위해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¹²⁾
- 즉,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여부는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해양수산부가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어업용 페스티로폼 부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³⁾ 시정 및 처리가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사업)을 맡아 2015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임

13) 해양수산부는 2017. 5. 11. 2017년 어업용 페스티로폼 부표 통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입찰공고(재공고)를 실시하였음



- 다만 어업용 페스티로폼 부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난 5월에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고시하여 고시일(5월 19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다만 위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의약외품은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음
- 세안제 등의 화장품이나 치약 등 의약외품 이외에 주방 세정제, 세탁 세제 등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해양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 및 위해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정제 등 미규제 품목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강재구	02) 788-4604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	044) 200-5301



독도 입도지원센터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해양수산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예산이 이월, 불용되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2016~2020) 독도 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 2016년도 독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반영
 - 독도의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도 독도 시행계획¹⁴⁾에 따른 사업으로 반영

2.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독도 입도지원센터 예산이 이월, 불용되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제3차 독도 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 및 2016년도 독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반영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독도의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미이행)
 - 2017년도 독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반영 (이행 중)

14) 정식 명칭은 '2017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제3차 독도 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 및 2016년도 독도 시행계획은 2016년 9~10월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작성된 것이므로(각각 2015년 12월 및 2016년 4월에 작성됨), 해양수산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을 제3차 독도 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 및 2016년도 독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반영한 것을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조치로 보기는 어려움
-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 또한 2017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이 ‘추진과제 2-4 독도입도객 지원’ 내에 ‘세부추진과제 241-1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2016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상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2017년 6월 기준)까지 연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음
- 동 사업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착공계획을 보고하였고, 9월에는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요청하였으나, 11월에 있었던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임
- 2014년도 예산 30억 원 중 29억 9,900만 원과 2015년도 예산 20억 7,500만 원 및 2016년도 예산 20억 5,500만 원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으로 다시 20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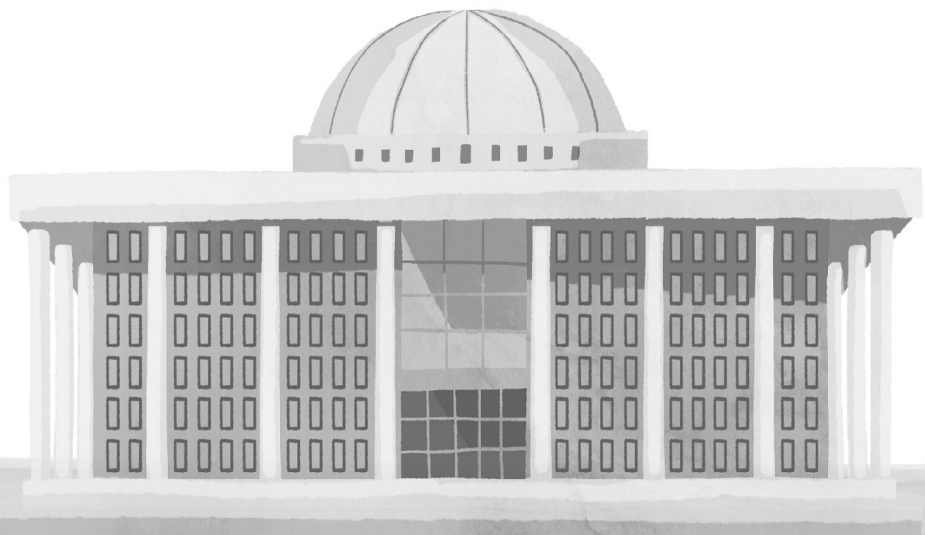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보류된 이유는 2014년 11월 1일에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과정에서 천연보호구역 제336호인 독도의 안전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다만 과거 수년간 문화재 경관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왔고, 국회에서 관련 예산 반영을 통해 해당사업의 추진을 간접적으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사 발주까지 진행된 사업을 중단시키고 관련 예산을 불용시킨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스러움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나, 지난 3년 동안 추가적인 논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으로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 독도 입도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외에도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집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강재구	02) 788-4604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	044) 200-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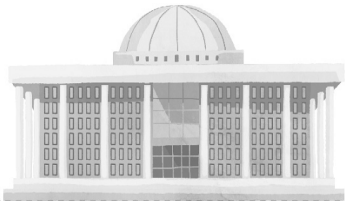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국토교통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토교통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제로에너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정책 추진 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함(2017년 1월)
 -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 등 중장기 전략 추진 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검토 여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대안 이행
 -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연구개발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검토 추진(미이행)
 -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 등 중장기 전략 추진 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방안 검토 추진(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 한 것은 아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차선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과 민간 건축물 이차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절약형 설비 교체 등을 위한 사업기획지원 및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 건축물 이차지원 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성능개선 공사 시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5년간 1~3%의 이자를 지원하며, 에너지성능이 최소 20%이상 개선되어야 함
-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 또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외에도 지원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까지 신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민간 부문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가 이루어질 계획임
- 제로에너지 인증제 확대를 위해서는 외벽, 창호 등의 단열성능 극대화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관련 인증제도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등이 있어 각 인증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예성	02) 788-4605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	044) 201-376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이 어려운 공원 조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마련함
 - 민영공원은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공원임
 - 2017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방안 마련 여부
 - 민영공원 제도 마련(이행)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영공원 제도 도입(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민영공원 제도 마련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충분한지 여부는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도시공원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에서 민영공원제도 도입 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km²이고 이 중 미집행 면적은 516km²로 미집행률은 55.2%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km²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도시·군계획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됨
 - 미집행 도시공원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예산으로는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도시공원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공원 사업 추진자가 5만 m² 이상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할 경우 30% 미만을 비공원시설(주거·상업시설 등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2009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민간공원 조성 완료는 한 건도 없음
 - 미조성 공원부지 또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조성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용권을 획득한 후 공원으로 조성·관리하는 공원인 임차공원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제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도입이 추진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부담이 없고, 공원 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공원임
 - 그러나 민간공원 특례제도 시행 과정에서 비공원시설의 설치에 대해 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을 감안할 때, 공원 내 수익시설의 설치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수익시설 설치로 도시공원의 기능 저해 또는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외에도 공원의 조성 및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 및 조성기금의 설치 등 또한 검토 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예성	02) 788-4605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044) 201-3742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운용 및 임대주택공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
 - 2013~2016년까지 43.1만 호를 공급하였으며, 2017년에는 공급(준공) 물량을 당초 11만호에서 12만 호로 확대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만으로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에 주택도시기금을 더 활용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사업예산보다 여유자금이 2배 이상으로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 단기투자증권 등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많으므로, 이를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여유자금 규모가 40조 원에 달하고 있음
 - 2014년 23.3조 원, 2015년 35.8조 원, 2016년 40.2조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은 2014년 2.44%, 2015년 2.16%, 2016년 2.53% 수준임



연도	여유자금 규모 (단위: 조 원)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단위: 조 원)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물 (수익률)	기타(수익률)
2014	23.3	21.5(2.44%)	2.4(2.52%)	4.1(2.50%)	15.0(2.51%)
2015	35.8	31.9(2.16%)	3.0(2.16%)	4.4(2.43%)	24.5(2.22%)
2016	40.2	40.2(2.53%)	1.1(1.53%)	3.4(2.20%)	35.7(2.54%)

주: 본 표의 여유자금 규모는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여유자금으로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총 규모를 말함

자료: 국토교통부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의 채권만기 도래기간이 짧아, 자금운용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총지출한도 설정으로 인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 즉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이고,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평균 예금 유지기간이 2.5년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요소 중 단기간 내 상환해야 할 자금의 비중이 높다는 것임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복지분야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복지예산의 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산당국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 및 가계에 대한 대출과 원리금회수를 통해 운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여유자금을 운용한 사업자금의 대출의 확대가 곧바로 국가재정 부담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이미 여유자금으로 지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직접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곧바로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는 않음
 - 주택도시기금의 주요재원인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저축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재원인 것이 사실이나, 이 때문에 여유자금 중심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3. 개선방안

- 주택도시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주택도시기금의 2017년 예산은 주택구입자금 9.2조 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대출 5.2조 원, 임대주택 출자 3.4조 원이나 도시부문의 도시재생지원 예산은 650억 원에 불과함
 - 향후, 국민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도시분야 예산과 혁신적인 주거복지 지원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주택도시기금의 중장기적 운용방향을 위한 평가시스템과 기획기능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 상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매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 정부부문의 자금조달, 전담기관 관리감독 등 연간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결과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이를 통해 장기적 기금운용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조직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¹⁾
 - 또한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변동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수입도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 사업모델뿐만 아니라 경기확장기와 경기침체기 등 경제상황에 맞게 기금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장경석	02) 788-4601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044) 201-3339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이고, 기금 전담 운용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기금대출·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재수탁기관은 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임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음
 - 2015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²⁾·사망만인율³⁾(이하 “재해발생률”이라 함)은 건설업 전체 평균에 비해 1.5~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시점검반 운영, 추락위험공사 집중관리, 전문건설업주 교육강화 등 영세현장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 공사 점검체계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임
 -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대상 확대 등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2) 전체 건설업 근로자 대비 재해자 수(%)

3) 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 전체 건설업 근로자 × 10000)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는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재해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1) 재무건전성·기술력이 부족한 영세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있어 공사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고, 2)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단기에 완공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의 취약시기(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만으로는 점검에 한계가 있고 점검대상 파악도 곤란하기 때문으로 파악함
 - 이에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안전비용 지원, 전문건설업주 교육강화 등 영세 현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상시점검반 신설, 추락위험공사 집중관리, 굴착공사 허가절차 보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점검체계를 강화함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영세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함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존에 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시행범위를 확대하여, 2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⁴⁾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기초자치단체 공사감독 공무원이 감독하는 건설현장이 과도하게 많아(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15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공사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⁵⁾,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무원이 직접감독하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전국의 수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임
 - 2016년 기준 2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약 32만 개로 약 315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⁶⁾,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02) 788-4603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 201-3575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5)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6) 2016년 기준 20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약 5천 개이며, 약 147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 저품질 외국철근 등 건설자재품질 관리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저품질 외국철근의 불법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저품질 외국철근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건설자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보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건설자재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 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시험을 차단할 예정임⁷⁾
 - 불량 철강재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의 시정처리 결과는 크게 ‘관리 시스템 개선’과 ‘현장점검 강화’로 구분됨

-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 여부**
 -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중)
 - 불량 철강재 관련 현장점검 실시 (이행 중)

7) 2020년까지 건설안전정보시스템(COSMIS),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기술통합관리시스템(CEMS) 등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건설공사 관련 시스템에서 생성된 각종 건설안전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통합(연계)을 추진할 예정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저품질 건설자재의 유통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자재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량 건설자재의 사용을 예방하는 등의 차선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동절기·우기·해빙기 등 건설현장 점검 과정에서 저품질 건설자재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겠으나, 전국의 33만여 개(2016년 기준)에 이르는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력 및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보임

3. 개선방안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의무화 대상의 공사 규모와 자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⁸⁾
 - 다만 품질관리 대상의 확대는 규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간의 폭넓은 논의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저품질 외국철근의 불법유통 및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 건설자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수입 건설자재는 전국 각지의 항구로 대규모로 수입된 후 국내 건설현장으로 유통되어, 품질 자체가 불량하거나 또는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건설자재의 유통경로 및 사용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수입 건설자재의 품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 품

8)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02) 788-4603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 201-3580

「물관리기본법」 제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물관리기본법」⁹⁾의 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물관리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12월 21일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의견을 제시함¹⁰⁾
 - 2017년 2월 14일 학계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9) 현재 6건의 「물관리기본법안」과 1건의 「물 기본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10) 「물관리기본법」 제정에는 동의하나, 다수의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어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차원의 단일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의 법률제정에 적극 참여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여부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률 제정 논의 중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물관리기본법안」은 이미 15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수자원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 부처 간의 끊임없는 의견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됨¹¹⁾
 - 정부가 「물관리기본법」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물관리기본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물관리일원화¹²⁾ 정책, 하천 상·하류 지역 간의 물 분쟁, 중앙정부(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물 값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물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산·학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더불어,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재해 예방대책 등 국가 물관리 업무의

11) 주로 물 관련 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성 등 물관리 조직의 개편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12) 정부가 2017년 5월 22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수량(수자원)과 환경부의 수질로 나누어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말함



기본방침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관리기본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별 물관리 역할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물 분야의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하천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등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02) 788-4603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 201-3596

4대강 준설골재 관리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4대강 준설로 인해 발생한 재고 골재¹³⁾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4대강 준설로 인한 재고 골재의 판매 촉진으로 관리비 절감과 판매 수익은 장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할 것

13)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제3조(용어 정의) ② 골재라 함은 준설토중에서 준설물량의 60% 이상이 모래로서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준설토를 말한다.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9월 4대강 준설토¹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천관리청에 지시함
 - 준설토 처리수익금은 「4대강 하천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라 적법 사용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조치하고, 골재 판매단가 인하 등을 통해 골재매각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골재판매를 담당하는 여주시에 독려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의 시정처리 결과는 크게 평상시 준설토 관리 강화와 준설토 판매 독려로 구분할 수 있음

- 4대강 준설토 판매 촉진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하천관리청의 4대강 준설토 관리 강화 지시 (대안이행 중)
 - 여주시에 골재판매를 독려함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준설토된 골재 97,604천 m³ 중 약 71.3%인 69,579천 m³는 판매가 완료되었고, 남은 준설토 27,935천 m³의 약 83.3%에 해당하는 23,257천 m³가 여주시에 적치되어 있음¹⁵⁾
- 여주시는 2025년까지 판매를 완료할 계획인데 여주·이천·양평 등 인근 지역의 골재 수요량에 따라 판매량이 결정되고 있어, 골재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14)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제3조(용어 정의) ① 준설토라 함은 골재와 사토(捨土)를 포함한다.

15)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준설토된 골재는 23개 시군에 적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준설토 골재의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시군은 여주시, 구미시, 상주시, 예천군이며, 여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2018년까지 판매를 완료할 계획임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는 운반거리가 길어질수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대부분 현장 인근에서 골재를 수급하는데, 여주시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건설하는 준설골재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 오랜 기간에 걸쳐 준설골재를 판매해야 하는 실정임

3. 개선방안

- 준설골재가 장기간 적치되어 있을 경우 인근 지역의 황사피해 및 토사유출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시에는 강풍에 따른 황사발생을 방지하고, 태풍 및 호우 발생시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준설골재 적치지역과 건설현장 간의 거리 및 수요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골재가격의 인하율을 파악하는 등 골재판매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¹⁶⁾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02) 788-4603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 201-3623

■ 법정계획간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여러 법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16) 현재 준설골재의 판매가격은 생산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법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법정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임('16.12-'18.3, 국토연구원)
 - 더불어 교통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의 차기 수립시 계획간의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방안을 마련함('16.12)
-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20年初 목표)하여 道종합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
 -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립시점에 여러 교통계획의 연계성을 조정 반영토록 할 계획
 - 법정 계획간 연계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사항 등을 병행 검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토종합계획 수립방안 관련**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지침 형태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른 계획평가제도를 통해 국토종합계획과 하위 계획들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임
- **법정계획간의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추진**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은 연구용역 보고서인 「교통분야 법령 및 계획 정비연구」(모창환 등, 한국교통연구원, 2016. 5.)를 통해 교통분야 법정계획들간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국토·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분야별 연계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은 크게 국토계획 분야와 교통계획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분야가 별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토계획 분야에서는 지침 형태의 계획 수립 및 계획평가제도를 활용한 계획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 교통계획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법정계획간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되긴 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나 입법 계획이 제시된 바는 없음
 - 더불어 교통분야 내에서도 법정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의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부서간 협의가 중요한데, TF와 같은 일정한 구심점을 가지고 부서간 협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3. 개선 방안

- 교통계획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계획간 체계를 법률로 분명히 하는 방안이나, 개별 계획 시기를 상위계획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더불어 지역적 연계가 중요한 교통계획의 경우는 특히 공간적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자체간 공동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음
- 이러한 여러 방안에 앞서 근본적으로, 국토·교통 계획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계획 시스템 마련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정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과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02) 788-4602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	044) 201-3650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조정과	-	044) 201-3791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방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대리운전 프로그램 공급업체 중 대형 업체의 횡포 방지 및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접수된 결과를 관계기관별(경찰청·공정위·지자체 등) 정책 수립에 반영·추진 중
 - '16.5~8월 운영을 통해 총 215건 신고접수 → 소관부처별 조사·시정조치 중
 -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을 마련·시행('16.5~)중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대리운전 문제를 지속 개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대리운전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경찰청·공정위·금감원 등) 협업 방안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센터」를 한시 운영('16.5.30~8.31, 3개월)함
- 운영 기간 동안 총 2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주요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카오 불이익) 카카오에 가입하여 콜 수행시 타 업체가 배차제한·등급강등 등 불이익처분, 피크시간대 자사 콜 수행 강요
 - (대리업체 횡포) 배차제한 페널티, 콜 발주 시 목적지 비공개, 대리기사의 콜 취소 요청 거부, 후불금액·보증금 미환급 등
 - (수수료) 과도한 콜 수수료, 출근비·합차비·페널티 등 부당 요구

합 계	카카오 불이익	배차제한 등	수수료	보험료 횡령	기타
215건 (100%)	146건 (67.9%)	32건 (14.9%)	8건 (3.7%)	19건 (8.8%)	10건 (4.7%)

자료: 국토교통부 신고통개발과

- 대리운전업과 관련된 부처간 협업을 위한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추진 과제	주요 내용	담당 부처	일정
① 이용자 보호 및 정보제공	• 소비자에게 대리운전자 정보제공	국토부	~ '16.9.
	• 이용자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국토부	~ '16.12.
	• 대리운전 관련 통계 구축·관리	금감원/경찰청/국토부	~ '16.12.
② 대리운전자 보호 및 편의 향상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가이드라인 제정	고용부	~ '16.12.
	• 대리운전자 쉼터 조성 시범사업	지자체 자율	상시
③ 보험 개선	• 보험료 할증 억제	금감원	~ '16.12.
	•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권익위	~ '16.8.
	• 업체 보험료 횡령 조사	경찰청/금감원	상시
	• 업체 불공정행위, 약관 조사·시정	공정위	상시
④ 기타	• O2O 신사업자를 통한 시장개선	국토부	해당사업자 등장 시

자료: 국토교통부 신고통개발과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는 '16. 8월에 운영이 종료되었고, 이후 신고는 국민신문고 등 일반적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접수되고 있음
 - 이 센터에 신고된 사항들이 얼마나 시정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없어 신고센터의 효과를 파악하거나 신고된 애로사항이 근절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에 따르면 대리운전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음
 - 각 부처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각 내용이 법령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운전 관련 행정처리의 신뢰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02) 788-4602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신교통개발과	-	044) 201-382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을 건설함(333억 원 국비지원)
 - 준공 4개소, 건설 중 17개소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필요 구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2016년 8월~12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검토를 요청하였음(2016년 12월)
 -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비지원율(현 30%) 확대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 설명(2017년 2월), 기획재정부 설명(2017년 2월 및 3월)
 -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2017년 중 18개소(착공 5개 포함)에 대한 건설 진행 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여부
 -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대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을 지원함 (대안 이행)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국비지원율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대안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운수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인 반면,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주유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화물자동차가 적법하게 밤샘주차¹⁷⁾를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대안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주차공간만 필수시설이고 주유소, 휴게실 등은 임의적

17)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참조)



시설이나,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경우 주차장 외에 주유소, 휴게실 등도 필수시설에 해당함

- 다만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항만·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국도 중간에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영차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하므로 도심 진입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소적 차이가 있음
-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가 인근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수사업자의 차고지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적법하게 주차하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비해 주거지 접근성이 낮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
- 즉, 국토교통부의 대안 이행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예방’이란 시정 요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부지 및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적합한 부지와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영차고지 확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도심 진입로나 도심지 부근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인근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밤샘주차 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가 소음 및 매연을 유발하는 문제도 심각한바, 불법 밤샘주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 등 주차공간의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향후 공영차고지가 좀 더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없는 농지나 임야, 폐가 등에 허위로 차고지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 및 점검을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강재구	02) 788-4604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	044) 201-4016

■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및 과적화물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적재불량 신고포상제를 운영함(2016.8. ~2016.10.)
 - 신고건수 : 1,061건
 - 포상금액 : 22,800천 원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적재불량 및 상습 과적운전자에 대하여 벌점 15점을 부과 중임
-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 기획단속 강화(분기 1회 → 월 1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 적재불량 신고포상제를 운영함 (이행)
- **과적화물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 기획단속 강화(분기 1회 → 월 1회)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낙하물로 인해 후방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 탑승자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물 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신고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적재불량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 신고포상제를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2~3달간만 실시하였는바, 위 신고포상제가 적재불량 단속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면 제도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화물자동차가 과적을 하게 되면 차량 중량의 증가로 인해 제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화물 고정장치가 풀려 화물이 낙하할 위험도 증가하며, 차량 하중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 가능성도 커지는바,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과적 화물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수적임



- 그러므로 국토교통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함에 있어 그 주기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1회당 5일)로 강화한 것은 시정 및 처리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월 1회’라는 단속 주기로는 매일 발생할 수 있는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단속 강화 방안 외에 화물자동차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적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4만원(4톤 이하 화물자동차) 또는 5만원(4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불과하여, 적재 제한 규정을 강제하는 규범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음
-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적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고정식 과적검문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강재구	02) 788-4604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	044) 201-4016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장기 미착공된 영구·국민임대주택 해소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장기 미착공된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장기 미착공된 영구·국민임대주택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미착공된 물량은 2014년말 기준 41.3만 호였으나, 2016년말 기준 22.5만 호로 2014년 대비 54.5%를 해소하여 잔여 미착공물량은 18.8만 호로 감소함
 - 잔여 미착공물량을 사업계획 승인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승인 물량 6.5만호, 2015년 승인 물량 9만 호, 2016년 승인 물량 7만 호임



- 향후에도 잔여 미착공물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및 리츠 등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미착공 물량 해소를 추진할 예정임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6년 이상 장기 미착공한 주택물량 83,415호임(2016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포함)
 - 이에 대해 LH는 조기착공 및 사업승인 취소 후 사업계획 재수립(2016년 12월) 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이후 미착공 물량 해소 중(2014년 대비 54.5% 해소)
 - 잔여미착공 물량을 해소하고,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을 사업여건을 통해 행복주택, 리츠 등 공공주택 유형으로 활용하는 방법 모색(대안 모색)
- LH: 조기착공 및 사업승인 취소 후 사업계획 재수립(2016년 12월) 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함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주택건설 경기 변동 등으로 사업성이 충분치 않아 사업 착공이 어려운 경우
 - 임대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미임대가 예상되어 사업 착공이 어려운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토지보상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야 하나, 보상업무에 과도하게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상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정부와 LH는 미착공 물량에 대해서 새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연간 건설형 임대주택공급을 착실히 추진하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함
 - 새정부의 주택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공공임대공급 물량은 연간 13만 호이고, 이 중 신규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건설형 임대주택) 건설물량은 연간 7만 호임



- 7만 호 건설형 임대주택 중 LH가 연간 6만 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미착공물량(18.8만 호)이 3년 내 거의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정부 임대주택공급계획을 충분히 이행할 경우, 미착공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정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을 사업조정을 통해 행복주택, 리츠 등 공공주택 유형으로 활용할 경우, 입주대상계층이 다른 주택유형이 공급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분위 이하 계층,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2~4분위 이하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인데, 행복주택은 소득 2~5분위, 공공임대리츠로 공급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제한이 없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득계층별로 확보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용자를 받게 되는데, 미착공된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기금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시행세칙」에 따라, 4년간 순차적으로 자금이 대출되나, 미착공할 경우 대출된 금액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지 않고, 사업자의 보유금으로 남게 되어 기금운용상 문제가 발생함
 -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규모에 따라 호당 약 3,500~6,600만 원까지 연 1.8% 금리로 30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미착공된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고, 이미 대출된 자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장경석	02) 788-4601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044) 201-4509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기획처	-	055) 922-3847

한국토지주택공사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불법전대 방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임대 또는 불법전대 등 부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임대주택 불법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수립·시행(2016.9.)
 - 거주자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불법 전대자 및 알선자 고발처리 기준을 수립함

3) 현행 불법전대 관련 법률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한편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이를 알선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전대인(轉貸人)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차인(轉借人)에 대해서는 퇴거를 명하고,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자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불법 전대자 및 알선자 고발처리기준 수립

-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전대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기 위해 고발처리기준을 개정함(2017.8.1. 시행)

구분	고발처리기준	
	기존	시행예정
불법 전대자	① 동일인이 불법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②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사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③ 불법전대를 알선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 * 알선자 고발시 불법전대자 함께 고발 불가피 ④ 그 밖에 불법전대 예방 또는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규입주단지, 지속적인 불법전대 행위 적발, 기획부동산 개입 정황 포착 등	① 불법전대로 적발된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구분	고발처리기준	
	기존	시행예정
불법전대 알선자	① 재범 방지 위해 신원 확인시 예외 없이 고발조치	좌동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LH는 2016년에 69명의 조사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수도권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전대로 의심되는 120세대를 적발하고 2건에 대해 고발조치함
 - 다만, 아직은 시범사업 형태로만 추진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는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사업자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는 기존의 불법전대자 고발처리기준에 고발에 대한 예외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됨
 -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에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하도록 내부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향후 불법전대 방지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불법전대를 적발하고 조치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가·지자체 차원에서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司法警察)로 임명하여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결과를 반드시 경찰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¹⁾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인 LH 차원에서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단속업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감축방향과 연계하여, 단속인력의 운용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²⁾
-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수가 100만 호에 육박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관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가구구성, 입주와 퇴거, 연령, 취업상태, 자동차보유여부 등 기본정보는 각 단지별로만 관리되고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못함
 - 이는 임대주택 불법전대 단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부수적으로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할 단지를 선정하는 등에도 활용할 여지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장경석	02) 788-4601
관련 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	주거복지사업처	-	055) 922-337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거주실태조사).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조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음

2) LH는 2016년 수도권권에 대한 시범사업을 위해 계약직 조사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감축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직 조사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한국수자원공사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댐주변지역 지원금 제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정액제 전환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음
- 댐주변지원사업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 및 용수판매 매출액에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 강수 상황에 따라 매년 지원금 규모에 편차가 발생하므로²⁾, 댐주변지역 지원금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요구함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자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2) 연도별 댐주변지역 지원금: (2013년) 724억 원 → (2014년) 737억 원 → (2015년) 771억 원 → (2016년) 666억 원 → (2017년) 614억 원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수자원공사	담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정액제 전환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담주변지역 지원금을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을 위해 현행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정액제 전환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일정해야 하나 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 및 용수매출규모는 매년 변동이 있어 불안정하므로, 출연자의 댐 운영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행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담주변지역 지원금 정액제를 다음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검토함
 - 1) 매년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경우
 - 2) 정액금액에 매년 일정비율을 상향한 금액을 출연하는 경우
 - 3) 몇 년간 출연금의 평균금액을 출연하는 경우
 - 담주변지역 지원금 정액제를 검토한 결과, 지원금 규모 확대에 있어 정액제가 주민에게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고, 재원부담자의 재무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행 출연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함
 - 매년 동일금액 출연할 경우 지원금이 증가 없이 매년 고정되며, 정액금액에 매년 일정비율로 상향한 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도 매년 지원금 규모를 증액해야 함
 - 몇 년간 출연금의 평균 출연 시에는 평균산정 대상기간 중 출연금 규모가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 지원금도 높거나 낮은 상태로 지속 고착될 여지가 있음



- **담주변지역 지원금의 정액제 전환 여부**
- 현행 방식이 적합하므로 이를 유지 (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과 2017년 담주변지역 지원금의 감소는 가뭄에 따른 발전매출 감소에 기인하며 매년 출연금을 고정하거나 상향 시에는 발전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³⁾, 재원부담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담주변지역 지원금을 일정하게 정하기보다는 매출액과 연동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현행 출연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이 타당해 보임
- 다만 담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역지원사업’⁴⁾ ‘주민지원사업’⁵⁾ 및 ‘그 밖의 사업’⁶⁾ 등과 같은 담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지원금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개선방안

- 담주변지역 지원금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담 주변지역의 각 지자체가 받는 지원금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한 실정⁷⁾으로, 담주변지역 지원금을 광역단위로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⁸⁾
 - 지자체별로 매년 소액을 배분하기보다는 순번을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 등의 발전매출액은 전력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발전단가로 정해짐
4) 소득증대사업(농림수산업·축산업·환경농업 관련 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의료환경조성사업, 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 주변 경관 활용사업(휴양·레저 시설 설치 사업)이 있음
5) 주민생활지원사업(건강진단, 교통비·난방비·전기료 보조 등) 및 육영(育英)사업이 해당함
6) 담저수사용료 보조사업(담 주변지역 지자체가 해당 담의 저수를 사용하고 납부하는 담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과 홍보 및 부대사업(전망·홍보·전시시설 등의 설치사업)을 말함
7) 2016년의 경우, 담 주변지역 72개 시·군·구에 배분된 담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평균은 약 7.0억 원임
8)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담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담관리청이나 담수탁관리자는 제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담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 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위해서는, 매년 댐주변지역 지자체 별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격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배분함으로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더불어 댐 주변지역의 규제강도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댐과 대규모 댐의 지역주민이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규모도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⁹⁾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02) 788-4603
관련 부처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경영처	-	042) 629-3586

9) 2016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안동시(안동댐)로 38.2억 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화순군(장흥댐)으로 0.1억 원임

새만금개발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새만금개발청 기업 투자 유치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하여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새만금 개발청	삼성그룹 등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7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2017.2.22.),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함(2017.3.8.)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체계 구축 및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 단순 홍보성 행사를 축소하고 투자 유치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예정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



-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함
- 새만금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의 기준을 완화함
- 향후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MOU 체결 기업의 지속적 접촉, 간담회 및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임
-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수행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새만금개발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여부
 - 2017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 및 새만금투자활성화 방안 수립(이행)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이행)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함(이행 중)
-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 여부
 - 2017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 및 새만금투자활성화 방안 수립(이행)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이행)
 - 위탁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계획 수립(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새만금개발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3년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새만금개발청은 89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회사 사정 및 경기불황 등으로 21개사가 투자를 철회하였음
- 2017년 3월 현재, 68개사와 약 15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이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5개사로 투자규모는 3조 6,000억 원임
- 기업의 투자 철회 배경에 기반시설의 미비, 매립지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이 거론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의 투자확대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은 새만금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장기임대 특례 확대, 유치업종 확대, 도시계획기준 개정, 인센티브 지원 등은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양해각서 체결 기업이 투자협약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할 기업지원 전담직원 매칭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새만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특구와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매립사업인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길며, 조성원가도 높은 편이며,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 중으로 타 경제특구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편임
 - 현재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이 새만금의 투자 유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예성	02) 788-4605
관련 부처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	-	044) 415-1080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의 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하여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조합의 비리 근절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
 - 2016년 11 ~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조합운영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실태점검 결과,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행정 등과 관련하여 1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함¹⁾

1) 적발된 위반행위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임



-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함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의 개정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의무화하도록 함
- 향후에도 실태점검 시 적발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고,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와 서울시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와 서울시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의 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조합의 비리 근절을 위하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조합에 대해 조합장 교체 및 수사의뢰, 개선 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함(이행 중)
 - 실태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분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고 운영개선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고, 적발사례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적정 사례로 적발된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비교적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전국의 조합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서울시 강남지역의 8개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조합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조합의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7월 18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함
- 또한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

3. 개선방안

-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 등이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²⁾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함
 -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자로서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평가를 하고, 동일한 정비구역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할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시공사 간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인숙	(02) 788-4607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	(044) 201-3383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활력과	-	(02) 2133-7231

2)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하는 공공기관은 주택공사 등과 한국감정원임(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경기도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에 대하여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경기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경기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함
 - 경기도는 시·군에게 위반건축물 담당인력 확충을 권고함(2016년 11월 15일)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김현아 국회의원실에 불법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이행강제금 활용 방안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2017년 2월 17일),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징수된 이행강제금을 위반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 구조 안전, 피난 장애 등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위반시설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향후 불법건축물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경기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경기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여부**
 -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추진(이행)
 - 시·군 위반건축물 담당 인력 확충 권고(이행)
- **불법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여부**
 - 불법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이행강제금 활용 방안 제도개선 건의(이행)
 -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자료제공 등 입법 활동 지원(이행 중)

2) 경기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경기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시·군의 위반건축물 담당 인력 확충을 권고한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전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의 28.9%와 징수금액의 42.5%를 차지하고 있음(2011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

	부과건수	부과금액(원)	징수금액(원)	체납금액(원)	위반건축물현황(동)
계	9,963	32,754,281,021	25,857,832,537	6,836,828,734	8,246
경기	2,881	13,607,453,073	11,000,843,938	2,551,470,735	1,821
비율(%)	28.9	41.5	42.5	37.3	22.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위반건축물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시·군의 담당 인력 확충이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행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불법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건축,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방조개기),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등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건축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불법건축물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화재·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
 - 실제적인 제도 개선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현황 자료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예성	02) 788-4605
관련 부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	031) 8030-4140

제주특별자치도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재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재검토 할 것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적용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평창·강릉,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도 파주, 전남 여수경도·화양지구, 부산 해운대 등 8곳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 시설을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가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총 1,474명이며, 이중 중국인은 1,462명임



- 그러나 영주권 취득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도 영주권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체류 기한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23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 향후 부동산영주권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임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시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재검토 여부**
 -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대안 이행 중)
 -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미이행)
 - 법무부에 제도개선 건의(미이행)

2)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타 지역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타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음



- 또한 제도 개선 필요시 법무부에 개선사항을 건의할 예정으로 향후 부동산투자자인민 제도 정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단, 영주권 취득 이후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유지되는 등 영주권 발급 이후의 무체류 기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3. 개선방안

- 부동산투자자인민제도의 운영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자인민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 지역에 비해 제주 특별자치도가 높은 실적을 얻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부동산투자자인민제가 도입된 이후 총 1,860건, 1조 2,78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음
 - 2016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동산투자자인민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주권 취득 이후 투자 철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 난개발, 자연경관훼손 등 부동산투자자인민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예성	02) 788-4605
관련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	064) 710-3371

집필자 명단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팀 장	심정희	4540
	입법조사관	조규범	454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팀 장	심정희	4540
	입법조사관	조규범	4541
	입법조사관	백상준	4544
	입법조사관	박지영	4547
	입법조사관	박혜림	4542
	입법조사관보	이재일	4546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외교부 통일부	팀 장	유웅조	4550
	입법조사관	이승현	4555
	입법조사관	이승열	4557
	입법조사관	김예경	4551
〈국방위원회 소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팀 장	유웅조	4550
	입법조사관	형혁규	4553
	입법조사관	김도희	455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팀 장	이상팔	4560
	입법조사관	박영원	4561
	입법조사관	김현정	4566
	입법조사관	하혜영	4562
	입법조사관	노성준	4564
	입법조사관	배재현	4563
	입법조사관	류영아	4565
	입법조사관	김종갑	4534
	입법조사관보	정재환	4567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팀 장	정지은	4570
	입법조사관	김민창	4571
	입법조사관	김재환	4575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국제원산지정보원	입법조사관	정도영	4574
	입법조사관	임언선	4572
	입법조사관	김영찬	4573
	입법조사관	조대형	4585
	입법조사관보	박인환	4578
〈정무위원회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팀 장	임동춘	4580
	입법조사관	최정배	4581
	입법조사관	원종현	4583
	입법조사관	기준하	4584
	입법조사관	김창호	4582
	입법조사관	강지원	4587
	입법조사관	조대형	4585
	입법조사관	김성봉	4554
	입법조사관보	김애진	4586
	입법조사관보	이재일	45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마사회	팀 장	김봉주	4590
	입법조사관	배민식	4593
	입법조사관	유제범	4588
	입법조사관	강재구	4604
	입법조사관보	김태우	459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팀 장	김봉주	4590
	입법조사관	전은경	4596
	입법조사관	유재국	4594
	입법조사관	구본근	4598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팀 장	유인규	4600
	입법조사관	김예성	4605
	입법조사관	장경석	4601
	입법조사관	김진수	4603
	입법조사관	박준환	4602
	입법조사관	강재구	4604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조사관보	박인숙	46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팀 장	유의정	4700
	입법조사관	이덕난	4702
	입법조사관	정환규	4701
	입법조사관	정태희	4703
	입법조사관	조인식	4705
	입법조사관	임주현	4707
	입법조사관	김휘정	4704
	입법조사관보	유지연	470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애인개발원	팀 장	이만우	4720
	입법조사관	서창식	4726
	입법조사관	조속희	4727
	입법조사관	김주경	4725
	입법조사관	최병근	4721
	입법조사관	서선영	4722
	입법조사관	박선권	4724
	입법조사관보	김대명	4728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가족부	팀 장	이만우	4720
	입법조사관	조주은	4723
〈환경노동위원회소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팀장 직무대리	최준영	4731
	입법조사관	김경민	4732
	입법조사관	전형진	4734
	입법조사관	한인상	4733
	입법조사관	이혜경	4737
	입법조사관보	이동영	4736
편집	팀장	박규찬	4530
	입법조사관보	김유정	4537
	행정실무원	김안나	4530
	입법조사원	방우리	4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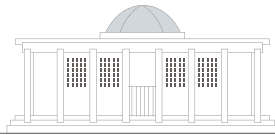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I

발 간 일 | 2017년 8월 31일
발 행 | 이 내 영
편 집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발 행 처 |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8·4524
인 쇄 |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집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485-14

©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